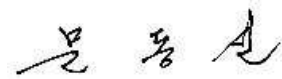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3년 6월 3일

군산시 조례 제 1074호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다.
4. “보수”란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제

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소유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 시 종사자들의 안정적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지원 기준마련에 관한 계획
5.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인권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시장, 관계공무원,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사회복지기관관계 인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278호
----------	--------

발의연월일 : 2013년 5월 9일
발의의원 : 김성곤, 박정희의원(2인)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업, 보수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조례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안 제3조)
-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과 보수 수준의 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 바.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사업,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8조)
- 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0조)
- 아.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 예산수반 여부 : 여
- 합 의 : 주민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기획예산과 법무계 협의

4. 붙임

- 제정 조례안 1부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3년 6월 3일

군산시 조례 제 1075호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을 “ 「공직자윤리법」 ” 으로,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로,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 를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을 “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 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을 “각 호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로, 같은 항 제1호 중 “3인” 을 “3명” 으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2인” 을 “2명” 으로, “군산시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을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의원 1명과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규정에 의거” 를 “각 호에 따라” 로, 같은 항 제1호 중 “3인중” 을 “3명

중” 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2인중” 을 “2명 중”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의회의원” 을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 으로, “당해 시 의회” 를 “시의회”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나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3조제2항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장 및” 을 “위원장과” 로, “1차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산시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을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으로, “위촉 또는” 을 “위촉이나” 로, “제1항의 규정에” 를 “제1항에도” 로, “의회의원” 을 “시의회 의원” 으로, “소속 공무원” 을 “시 소속 공무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으로, “전임자의 잔임기간” 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 를 “총괄한다.” 로,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 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으로 한다.

제6조 조제목 “위원회의 회의등” 을 “회의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의하고” 를 “회의를 시작하고” 로, 단서 중 “각호” 를 “각 호” 로, “재적 위원” 을 “출석위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제6조제3항 중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의” 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로, 같은 항 제2호 중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를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3항에 따라” 로,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을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로 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조제목 “위원회의 간사 등” 을 “간사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를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군산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를 “감사담당관이 되며, 사무직원은 간사가 지명한다.” 로 한다.

제8조 중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 의회 2차 정례회에” 를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로,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를 “그 밖에 위원회의” 로 한다.

제9조 중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로,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0조 조제목 “위원회의 운영규정” 을 “운영규정” 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으로 “등록기관” 은 “군산시” 또는 “군산시의회” 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는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직자윤리법</u>」 <u>제9조와 제21조에 따라</u> 군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u></p>	<p>제2조(구성) ① <u>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u></p>
<p>1. <u>3인</u>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u>풍부한자</u> 중에서 위촉한다.</p> <p>2. <u>2인</u>의 위원은 <u>군산시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u>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u>3명</u>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u>있는 사람</u> 중에서 위촉한다.</p> <p>2. <u>2명</u>의 위원은 <u>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u>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p>② <u>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u></p>	<p>② <u>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u> 선임한다.</p>
<p>1. <u>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중에서</u> 선임하여야 한다.</p> <p>2. <u>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u> 선임하여야 한다.</p>	<p>1. <u>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u>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2. <u>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u>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u>군산시</u>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u>당해 시의회</u>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u> 2. <u>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u> 3. <u>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u> 4. <u>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u> <p>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군산시</u>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u>군산시 의회</u>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p>③ <u>제1항제2호에 따라</u>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u>시의회</u>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u> 2. <u>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u> 3. <u>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u> 4. <u>그 밖에 이 조례나 관계법령에 따라</u>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p>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u>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u>시의회</u>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②군산시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u>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u></p> <p>③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잔임기간</u>으로 한다.</p> <p>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p> <p>②위원장이 <u>사고가 있을 때에는</u>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u>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u></p> <p>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u>위원장과</u>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 차례만</u> 연임할 수 있다.</p> <p>② <u>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u> 중에서 <u>위촉이나</u>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u>제1항에도</u> 불구하고 <u>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u></p> <p>③ <u>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u>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u>으로 한다.</p> <p>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u>총괄</u>한다.</p> <p>② 위원장이 <u>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u>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하고</u>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u>재적위원</u>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u> 2. <u>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u> 3. <u>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u> 4. <u>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u> <p>③위원은 <u>다음 사항에 관하여는</u>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u> 	<p>제6조(<u>회의 등</u>)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회의를 시작</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u>출석위원</u>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법 제8조제7항에 따른</u> 조사의뢰 및 <u>같은 조 제12항에 따른</u> 조사의뢰 승인 2. <u>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u> 3. <u>법 제22조에 따른</u>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u>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u> <p>③ 위원은 <u>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u>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u> 관계있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p>3. (생 략)</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p> <p><신 설></p> <p>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u>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u></p> <p>②간사는 <u>군산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u></p> <p>제8조(의회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u>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④ <u>제3항에 따라</u>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u>재적 위원 수 계산에서</u> 제외한다.</p> <p>⑤ <u>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u></p> <p>제7조(<u>간사 등</u>)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u>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u> 간사와 사무직원을 <u>둔다.</u></p> <p>② 간사는 <u>감사담당관이 되며, 사무직원은 간사가 지명한다.</u></p> <p>제8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u>위원회는</u> 매년 <u>시의회</u>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u>그 밖에</u> <u>위원회의</u>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수당등) <u>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u>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수당 등) <u>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u>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p>	<p>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등록기관”은 “군산시” 또는 “군산시의회”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p>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13. 4. .
 제출자 군 산 시 장
 제안설명자 감사담당관

1.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확대 (안 제3조)
 - ▶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 심사기준 신설 (안 제3조의2)
 - ▶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하도록 함
-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신설 (안 제11조)
 - ▶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준용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띄어쓰기 수정
 - ▶ 기타 → 그 밖에
 - ▶ 1차에 한하여 → 한 차례만

- ▶ 각호의 규정에 의거 → 각 호에 따라 ▶ 잔임기간 → 임기의 남은 기간

3.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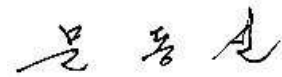
-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입법예고 : 2013. 4. 1 ~ 4. 21(21일간) / 의견접수 사항 없음

4. 붙임

-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3년 6월 3일

군산시 조례 제 1076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전임 전문직공무원인 의사”를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로 하며, 같은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6] 의 지급구분표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14”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7] 과 같다.

[별표 1] 의 제목 “일반직의사의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를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로 한다.

[별표 2] 의 제목 “전임전문직공무원의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를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로 한다.

[별표 6]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3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6]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 (도서지역의 경우 월350,000원)

비고 : 지급대상에는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하며, 의료법제2조제2항 및 약사법제2조제2항에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7]

직급보조비(가산금)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비고 : 설치기구의 소재지가 군산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의안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13. 4. .
제 출 자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자 총 무 과 장

1. 개정이유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설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4)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개정에 따라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수당 신설 (안 제2조제4호)
 - ▶ 지급대상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입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 지급금액 : 월 250,000원(도서지역의 경우 월350,000원)
-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에 대한 지급구분표 신설(안 제5조)
 - ▶ 지급대상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군산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 ▶ 지급금액 : 월 300,000원

3. 참고내용

가.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나. 예산조치 : 자체예산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입법 예고기간 : 2013. 4. 1 ~ 4. 22 / 의견 접수사항 없음

붙 임 :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료업무수당)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2. <u>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u> : [별표 2]의 지급구분표</p> <p>4. <신설></p> <p><u>제5조 <신설></u></p>	<p>제2조(의료업무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u>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u> : ----- -----</p> <p>4. <u>보건진료직렬 공무원</u> : [별표6]의 <u>지급구분표</u></p> <p><u>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14</u> <u>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u> <u>조체제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하</u> <u>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u> <u>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u> <u>[별표7]과 같다.</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 일반직의사의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p> <p>(표생략)</p> <p>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p>	<p>[별표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p> <p>(현행과 같음)</p> <p>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p>				
<p>[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의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p> <p>(표생략)</p>	<p>[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p> <p>(현행과 같음)</p>				
<p>[신설]</p>	<p>[별표6]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지 급 대 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건진료직렬 공무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250,000원 (도서지역의 경우 월350,000원)</td> </tr> </tbody> </table> <p>비고 : 지급대상에는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하며, 의료법제2조제2항 및 약사법제2조제2항에 규정한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다.</p>	지 급 대 상	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250,000원 (도서지역의 경우 월350,000원)
지 급 대 상	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250,000원 (도서지역의 경우 월350,000원)				
<p>[신설]</p>	<p>[별표7] 직급보조비(가산금) 지급구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지 급 대 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300,000원</td> </tr> </tbody> </table> <p>비고 : 설치기구의 소재지가 군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p>	지 급 대 상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지 급 대 상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3년 6월 3일

군산시 조례 제 1077호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u>과세특례</u> 대상지역의 고시) ① ~ ② (생략)	제14조(<u>도시지역분</u> 대상지역의 고시)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u>과세특례</u>)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u>과세특례</u> 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5조(<u>도시지역분</u>) ----- ----- <u>도시지역분의</u> ----- -----.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u>5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납기)----- ----- ----- <u>10만원</u> ----- ----- -----.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717호, 2013. 1. 1. 공포·시행)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해당 연도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률 개정 관련 조문을 정비

2. 주요내용

- 「지방세법」 법률 용어 개정에 따라 재산세 관련 조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 개정(안 제14조, 제15조)
- 7월납기 주택분재산세 일괄부과 기준 세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여 제도 취지에 맞추어 현실화(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15조

나. 예산 수반여부 : 부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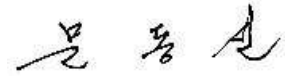
마. 기 타.

1)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결과 : 2013. 4. 1. ~ 4. 22(22일간)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3년 6월 3일

군산시 조례 제 1078호

군산시 청소년 참여위원회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산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등
2.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의 발굴·제안(여성가족부 및 전라북도)
3. 타 사군 및 도내 사군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4.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사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산시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위원은 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은 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최대 2명을 넘을 수 없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4.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산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시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시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조례

의안번호	제	호
------	---	---

제출년월일 : 2013. 4. .

제 출 자 : 주민복지국장

제안설명자 : 여성아동복지과장

1. 제안이유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의 제도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정의” (안 제2조) : “청소년” 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함
- “기능” (안 제3조) : 청소년 정책 및 사업추진·평가과정에 의견제안 등
- “구성” (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권리와 의무” (안 제5조) :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산시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위촉” (안 제6조) : ① 위원은 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함. 다만, 재학 중인 학생은 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봄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단, 연임위원은 최대 2명을 넘을 수 없음

- “회의개최” (안 제9조) :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함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수당 등” (안 제11조) :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보상” (안 제12조) :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산시의 명예를 드
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
국제교류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음
- “위탁” (안 제13조) : 시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시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나. 예산조치 : “위원 참석수당 등” : 12명×4회×20,000원 = 960,000원
“청소년정책 건의 및 청소년 활동지원비” = 3,000,000원

계 3,960,000원/년 정도 소요

※ 2013년 본예산 기편성(3,5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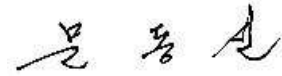
다. 기타사항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 : 2013. 3. 8 ~ 3. 27 (20일간) : “의견접수 없음”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3년 6월 3일

군산시 조례 제 1079호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
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 및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제2항
에 따른 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등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
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를 군산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제6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용보증재단에서 제한하는 재보증제한업종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중소기업청 또는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년 4%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한하고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시장은 관내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교실, 경영개선교육, 경영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및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2. 국가 및 전라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은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4.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소상공인 관련업무 기관·단체 대표,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4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제16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특례보증

제3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이차보전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 운영경비

제17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특례보증 : 신용보증기관과의 일정기간 협약을 통한 출연
- 이차보전 :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2천만원 이내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년 4% 초과하는 이자율에 한하여 이차보전

○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

- 위 원 수 : 10인 이내
- 지급대상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실비 보상
- 지급기준
 - 회의참석수당: 「군산시 예산편성을 위한 자율화경비 집행기준」 준용
 - 여비실비보상: 「군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준용

나. 비용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696,500	13,500	152,000	177,000	177,000	177,000
출연금	400,000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이차보전금	287,500	12,500	50,000	75,000	75,000	75,000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9,000	1,000	2,000	2,000	2,000	2,0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출 연 금 : 연 100,000천원 (5개년간 계획)
- 이차보전금
 - 1차년도 : 전체보증금액 1,000,000천원×2.5%×6월=12,500천원
 - 2차년도부터 : 업체당 평균 20,000천원×2.5%×50개업체=25,000천원
- 위원수당(공무원 제외)
 - 1차년도 : 1회×10명×100천원=1,000천원/년
 - 2차년도 : 2회×10명×100천원=2,000천원/년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696,500	13,500	152,000	177,000	177,000	177,000
<input type="checkbox"/> 국 비						
<input type="checkbox"/> 지방비	696,500	13,500	152,000	177,000	177,000	177,000
- 도 비						
- 시 비	696,500	13,500	152,000	177,000	177,000	177,000
<input type="checkbox"/> 기 타						

3. 작성자

○ 경제건설전문위원실 (☎ 450-5862)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의안번호	제1276호
------	--------

발의년월일 : 2013년 05월 06일

발 의 의 원 : 최인정(1인)

찬 성 의 원 : 엄문정 · 김경구·서동완·
이 복최동진 (5인)

1. 제안 이유

-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특례보증 지원 (안 제3조)

-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음
-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로 함

나. 특례보증 재원 (안 제4조)

-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음

다. 이차보전 지원 (안 제7조)

- 이차보전은 년 4%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한하고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름

라.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안 제8조)

- 시장은 관내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을 위

한 창업교실, 경영개선교육, 경영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및 위탁할 수 있음

마. 심의위원회 설치 등 (안 제10조 ~ 제15조)

-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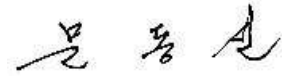
나. 합 의 : 지역경제과 상정계, 기획예산과 법무계 협의

다. 기 타

(1) 제정안 : 별첨

군산시 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3년 6월 3일

군산시 조례 제 1080호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들의 체위향상과 보건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 2."어린이놀이터"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과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 3."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같은법 제 19조 제1항의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의 규정,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를 말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3.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계획
4.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점검 계획(모래에 대한 잔류세균 검사 등)
5. 모래시설의 정비 계획(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계획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관리계획(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8.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애완동물동반 등 행위금지 및 단속계획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시장(「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를 말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티브(CCTV) 등 안전시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를 말한다.)은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

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소란·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출입
단,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처리용기를 구비한 경우 제외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수목훼손 및 굴착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공원내에서의 상행위
7. 그 밖에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되, 주택건설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장 이외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공원 등의 관리)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또는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군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제1266호
------	--------

발의년월일 : 2013년 05월 03일

발의의원 : 김종숙(1인)

찬성의원 : 김영일·유선우·설경만·진희완
김우민·서동완·김경구 (7인)

1. 제안 이유

-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는 즐겁고 유익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하고 어린이들의 체위향상과 보건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가. 적용범위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및 그 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군산시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함 (안 제3조)
- 나.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4조)
- 다.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또는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합 의 : 항만경제국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국 주택과
기획예산과 법무계 협의

다. 기 타

(1) 제정안 : 별첨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3년 6월 3일

군산시 조례 제 1081호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 12호의 규정에 의한자를 말한다.
2.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2조 7호의 규정에 의한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4.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4호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5. “공사감리”란 「주택법」 제24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전분주택”이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는 전분용 집을 말한다.
7.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 15호 규정에 의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

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검수단 구성) ① 검수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공동주택관련 시민단체, 관련기관,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검수단 회의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현장 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검수반은 분야별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검수대상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그 수를 증감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 2를 준용한다.

제5조(검수단 기능) 검수단은 시장의 요청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도서 및 시공 상태 등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 건의
3. 그 밖에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시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10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공동주택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제7조(검수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여건에 맞게 구성된 검수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문서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 및 건축주와 입주민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검수단의 검수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을 같이 실시하는 것이 사업주체 및 건축주 등에 불편해소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각각의 검수와 점검을 하게할 수 있다.

④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2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검수결과 등) ①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수결과 보고서 등은 「주택법」 · 「건축법」 · 「건축사법」 및 관련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9조(검수단 구성원 임기) 검수단 구성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 검수위원의 임기는 전임 검수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검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검수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입원, 검수단 활동 장기불참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검수단 등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제11조(검수단 회의) ① 시장은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건축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할 수 있다.
② 검수단 및 검수반의 회의는 소속된 각각의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계장이 된다.

제13조(검수결과 조치 등) ① 검수결과의 효력은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검수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②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회의 등을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요구 등) ① 시장은 검수단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검수단 활동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 등에서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검수단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서동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77호
------	--------

발의년월일 : 2013년 05월 06일
 발 의 의 원 : 서동완·최인정 (2인)
 찬 성 의 원 : 엄문정·김경구·채경석
 김영일·이복 (5인)

1. 제안 이유

-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등 (안 제3조 ~ 제5조)

- 군산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 건축주 등과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조정하여,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함

나. 검수범위 (안 제6조)

-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1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공동주택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다. 검수시기 및 방법 등 (안 제7조 ~ 제9조)

-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2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됨

-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검수결과 보고서 등은 「주택법」·「건축법」·「건축사법」 및 관련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

라. 검수단 회의 및 결과조치 등 (안 제11조 ~ 제13조)

- 검수단 및 검수반의 회의는 소속된 각각의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결함.
- 검수결과의 효력은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검수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효력이 발생됨.

마. 검수단 회의 및 결과조치 등 (안 제14조)

- 시장은 검수단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검수단 활동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등에서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합 의 : 건축과 공동주택계, 기획예산과 법무계 협의

다. 기 타

(1) 제정안 : 별첨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3년 6월 3일

군산시 조례 제 1082호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건축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과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 2 장 지방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군산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건축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전라북도 건축조례」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미관지구내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및 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관한 사항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법 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나. 25m 이상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미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 다.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심의 신청서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별표 1의 세부심의기준·도면 등을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공무원 이나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과 건축계획, 토목, 구조, 설비, 방재, 환경, 경관, 조경,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 및 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타 지방 자치단체에 2개 이하, 타위원회에 5개 이하로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건축관 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으로 위 촉이나 임명되는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 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명·위촉기준)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 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거쳐 위촉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 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②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④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한다.

⑤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⑥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기타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의사항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심의사항의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너비 25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2층 이하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의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의결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같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제12조, 제13조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심의 제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위원회 및 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적용의 완화

제20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과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영과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시장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제도 등과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 제6조제1항제1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21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 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 4 장 건축물의 건축

제2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주관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 한다. 다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서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개최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 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 체결한 건축물
3.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대상 건축물
4.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
5. 학교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02.16>

③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03.02>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2세대 이하의 다세대주택
2. 우체국,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제2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법 제14조·법 제16조·법 제19조·법 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 (용도변경 완화)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따라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39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시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하일 것.
4.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이라 함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 외부 지하주차장 차로 및 지하 계단실 상부에 설치하는 경량철골 형태의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가설건축물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2.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건축

제29조(설계도서의 작성완화)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3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허가변경 포함)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위한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

2. 선정 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추첨으로 지정한다. 다만, 지정을 받은 대행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재 추첨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받고 현장조사·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한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를 통하여 해당연도 6월과 12월에 지급한다.

제31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법 제35조 및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
5. 1호부터 4호에 해당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부터 1년마다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중복될 때에는 수시점검을 면제한다.)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3. 수시점검의 면제는 법 제23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건축 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7. 그 밖의 건축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시장이 임명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보수·수당

·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및 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대지 안의 조경 등

제33조(조경면적)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 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 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와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2.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3.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및 창고

4.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시내버스공영차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6.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미관지구 안의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주·정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의 교목 또는 수관폭 1.5미터 이상으로서 둥근형 반송 등 교목을 길이 5미터 간격을 유지하여 식재하고 교목 주변에 관목을 심고 의자·파고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목 수목당 8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견고한 수목구 및 삼각지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식수가 부적당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해서는 식수를 대신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을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지 안의 식재기준 등)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제35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농로
3. 공원 안의 도로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2. 지정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현황
3. 지정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관련 증명서류

제36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제 6 장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

제3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경관지구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전체 대지에 대하여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경관지구가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경관지구에 걸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 기준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제3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이상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이상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이상

제39조(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5와 같다.

② 별표 5 제1호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보행로, 조경, 예술장식품, 조명, 벤취 등 가로변 미관증진과 시민휴게공간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선 후퇴부분의 도심가로변 미관향상을 위하여 상품전시공간,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대지와 건축물과 맞벽 으로 건축할 수 있다.

1.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2.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제41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적용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의 너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접한 부분에 따라 각각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 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 제86조제5항의 공원의 경우에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 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2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는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61조제4항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3.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⑤ 영 제8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⑥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⑦ 영 제86조제2항제2호 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제 7 장 공개공지 등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2. 공개공지 등의 면적 :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의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퍼센트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퍼센트

다.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

3.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무대, 전시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1 + \{ \text{공개공지 등 면적} - (\text{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text{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div \text{대지면적}] \times \text{군산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1 + \{ \text{공개공지 등 면적} - (\text{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text{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div \text{대지면적}] \times \text{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을 위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 산정에 있어 옥내의 공개공지 등(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하고, 조경면적은 제외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관측 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 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위반건축물 란 중 제15호에 따라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4회 이내로 한다.

제45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믹서, 아스콘 제조시설, 석유 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사일로, 건조시설, 위험물저장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경우에만 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공탑, 물탱크, 변전실, 화물인양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 제17호의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제1항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7호 내지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46조(건축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상은 금·은·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③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47조(부설주차장 및 미술장식품 설치 등) 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및 「군산시 주차장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 등에 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별표 1]

지방건축위원회 세부심의기준 등 (제4조제3항 관련)

1. 제4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세부심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용도지역·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적정성
- 나. 도시기반시설과의 관계
- 다.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통영향 심의결과에 의한다)
- 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 마.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 바.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 및 형태의 적정성
- 사. 조경·공개공지 등 도시환경과의 적정성
- 아. 건축구조의 적정성
- 자. 건축설비의 합리성 및 안전성
- 차. 재해예방계획의 합리성
- 카. 토지굴착계획의 적정성

2. 제4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의 심의도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건축계획서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 및 색채계획 등)
- 나. 투시도 및 조감도
- 다. 위치도 및 계획대지 주변현황
 - 위치도
 - 주변 가로경관사진, 주변건물의 높이·규모·배치·벽면선 및 입면전개도
 - 주변건물의 보행 및 차량진입동선
- 라. 배치도
- 마. 교통처리 및 주차계획도
- 바. 조경계획도
- 사. 평면도
- 아. 입면도
- 자. 주단면도
- 차. 구조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주요 구조전환부분 상세도 등)
- 카. 방재계획서 (개략도면 제출)
 - 소방시설 설계도
 - 피난시설 설계도

- 방·배연구획 및 배연계통도 등
- 타.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계획서(깊이10미터 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계획
 - 주위시설물 현황도 (주위건물, 도로, 구조물 등) 및 영향검토서
 - 지하매설물 현황도 (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의 매설물)
 - 흙막이도면 (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주요부분 상세도 등)
 - 시방서 및 계측계획서
 - 흙막이 구조계산서
 - 지반조사서
- 파. 공개공지 등 설치계획서 (해당건축물에 한함)
- 하. 관련 협의부서 검토의견

3.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의 심의기준은 제1호가목 내지 사목을 적용 하며, 심의도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건축계획서 (건물 배치, 형태, 색채계획 등 포함)
- 나. 투시도 및 조감도
- 다. 위치도 및 계획대지 주변 현황
 - 위치도
 - 주변 가로경관사진, 주변건물의 높이·규모·배치·벽면선 및 입면전개도
 - 주변건물의 보행 및 차량진입동선
- 라. 배치도 (건축선 후퇴부분 시설물 및 입간판, 담장 등 부대시설 설치 상세계획 포함)
- 마. 교통처리 및 주차계획도
- 바. 조경계획도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 권장)
- 사. 입면도
 - 건축물의 외벽 색채는 먼셀표색계 기준으로 표기
 - 건축물의 지붕은 가급적 경사지붕 또는 곡선형으로 계획

[별표2]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25조 관련)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타 9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5만4천원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제곱미터 미만	41만원
100,000제곱미터 이상 300,000제곱미터 미만	81만원
300,000제곱미터 이상	162만원

[별표3] 가설건축물(제27조제3항 관련)

대상 건축물	구 조	면 적	비 고
1. 관리사무소 (주차장,체육시설)	경량철골조· 목조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 1층에 한함 · 옥상 설치 불가 · 미관지구 안에 설치 불가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을 것
2. 화원	경량철골조· 목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3. 제품 야적장	경량철골조· 목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4. 기계 보호시설	경량철골조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5. 차양시설·비가리 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시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준 재래시장의 공지에 설치하는 것
6.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공장부지 안에 설치 하는 것에 한함.
7.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별표 4]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제30조제4항 관련)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다음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소요 시간에 당해연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의한 “기술사”의 시간당 노임 단가(1일 8시간)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천원미만 버림)

업무대행 건축물 연면적	건축허가 현장조사	사용승인시 검사대행 소요시간
495㎡이하	50천원	2시간
495㎡초과 1,000㎡미만		3시간
1,000㎡이상 3,000㎡미만		4시간
3,000㎡이상 5,000㎡미만		6시간
5,000㎡이상 10,000㎡미만		8시간
10,000㎡이상		10시간

[별표 5]

대지안의 공지(제3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및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및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아파트 : 4미터 이상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의2에 따라 건축하는 상가건물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1)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 (2)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를 접하고 있는 경우	·1.5미터 이상 ·2미터 이상
바. 그 밖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미터 이상
(2) 다중주택, 다가구주택(10가구 초과)	·1미터 이상
(3)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4)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5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p>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의2에 따라 건축하는 상가건물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p>	<p>•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p> <p>• 1미터 이상</p>
<p>사. 그 밖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다중주택, 다가구주택(10가구 초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p> <p>(2)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p>	<p>•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p> <p>•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p> <p>•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p> <p>• 5미터 이상</p>

[별지 제1호 서식] 건축심의 신청서(제4조제3항 관련)

건축심의신청서						
연 번		심의신청내용				
건축위치						
건축주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용도지역 및 지구						
계획내용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건폐율(%)		주 용 도	
	구조		용적율(%)		부속용도	
	건축종별		설계변경인 경우 변경내용			
	최고높이		주거용인 경우	동 세대		
설계자	주소			성명		
	사무소명			연락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						
<p>건축법 제4조 및 군산시 건축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붙임 건축심의 도면</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주소</p> <p style="text-align: right;">성명</p> <p>군 산 시 장 귀하</p>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13. 4. .
 제출자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자 건축과장

1.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령개정 등】

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 1)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범위 및 조문정비(안 제4조)
- 2)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인원과 선임 자격기준 변경 및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반영(안 제5조)
- 3) 임기는 3년 이내로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에 대한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 7, 8조)
- 4) 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에 대하여 신설함(안 제9조)
- 5) 건축위원회 심의절차에 회의개최, 심의처리기간, 과반수 찬성의결 등 세부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
- 6) 건축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회의록 공개규정 신설(안 제16조)

나. 공동주택의 용적을 산정시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주민 공동시설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가산 적용하도록 공동주택의 용적율 완화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

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상 신설(안 31조)

- 다중이용업종 지역여건과 민원인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정기점검 대상 지정
- 정기점검 대상 중 수시점검 대상 지정 및 관련사항 규정

라.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높이제한 기준을 개선하여 건축물의 외부형태 개선 및 위법건축물양산 방지에 기여(안 42조)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정북 방향으로 이격하는 규정을 높이 9미터 이하에서는 인접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이격하도록 개정함.

【조례운영상 미비점 개선】

마.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완화 (안 제26조)

- 2006.5.9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단서규정 신설

바. 자연재해예방차원 지하주차장 가설건축물 적용완화 (안 제27조)

- 건축물 외부 지하주차장 차로 및 지하계단실 상부 등에 설치하는 차양 시설 등 가설건축물 적용배제로 자유로운 설치 단서규정 신설

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범위, 사용승인조사비 보완 (안 제30조)

- 건축허가 및 허가변경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범위와 사용승인조사비 등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아. 다가구주택 등 대지안의 공지기준 개정(안 39조)

- 다가구 주택 등의 증가로 건축시 인근주민과의 분쟁 및 통풍, 개방감 저하,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대지안의 공지 등을 확보하여 주거환경개선
- 기피시설 등에 대한 충분한 이격 거리 확보로 개방감 확보

자.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세부내용 보완(안 41조)

-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한 도로 완화에 대한 세부 적용규정 명시
- 도시공원에 인정되는 공원에 대한 일조권 확보 차원의 개선

【기타사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 기타 그 밖의 일부 미비한 점 보완·정비

3. 참고내용

- 가. 관계법령 : 건축법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 (1) 전부 건축조례(안) “별첨”
 - (2) 입법예고 : 2. 1 ~ 2. 21(21일간)
 - 의견제출 9건(반영 7, 부분반영2)

의견제출 내용 및 결과	비 고
1. 25미터이상 간선도로변 일정규모이상 삼입요구 - 바닥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범위 완화	• 반 영
2. 대지안의 공지규정 용도변경 적용 완화요구 - 2006.5.9이전에 용도변경 가능 단서삼입 완화	• 반 영
3. 가설건축물의 설치 적용배제요구 - 외부 지하주차장 상부 차양시설 등 완화 단서삼입	• 반 영
5. 사용승인조사비만 지급되므로 허가조사비 지급요구 - 사용승인조사비를 변경하여 허가조사비 조정	• 반 영
6. 대지안의 공지 소규모주택 가구수 제한(11가구)완화 - 다가구 5가구에서 10가구초과로 제한 변경	• 부분반영
7. 대지안의 공지 상업지역의 제외요구 완화 - 단서규정에 삼입정리	• 반 영
8. 대지안의 공지 다중이용건축물의 보완요구(삼입정리)	• 반 영
9. 대지안의 공지 전체 주차장 설치완화요구 - 문구수정하여 15m미만도로에 가능하도록 조정	• 부분반영

- (3)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4. 18(조건부 심의)
 - 조례(안)39조(별표5)대지안의 공지 : 이격거리 조정

법령 구분	변경전	심의결과(조정)
군산시 건축조례(안) 제39조(별표5) 2. 인접대지경계선 거리 사. (1) 다중주택, 다가구주택(10가구 초과)	• 1미터 이상	• 처마선 0.5미터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 (4) 조례규칙심의회 : 5월
- (5) 시의회 상정 : 2013. 5월중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중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3년 6월 3일

군산시 조례 제 1083호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산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군산시립도서관, 분관(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임피채만식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군산시립도서관(임피채만식도서관을 포함한다.”를 “군산시립도서관(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임피채만식도서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군산시 수송동 798-1번지”를 “군산시 축동로 72”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414번지”를 “군산시 임피면 임피향교길 39”로 하며, 같은조 제3호, 제4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 3. 늘푸른도서관 : 군산시 하나운로 17
- 4. 설림도서관 : 군산시 설림길 25

제5조제1호 중 “정신이상자”를 “만취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수입장서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를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자 및 자료의 복사, 인쇄 등을 하는 자”를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자, 도서관 자료의 복사, 인쇄 등을 하는 자”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군산시 구암동 397-8번지”를 “군산시 구암3.1로 245”로, 같은조 제2호 중 “군산시 산북동 3801-1번지”를 “군산시 동아로 31”로, 같은조 제3호 중 “군산시 월명동 18-15번지”를 “군산시 구영7길 6”으로, 같은조 제4호 중 “군산시 미룡동 900-1번지”를 “군산시 미룡로 42”로, 같은조 제5호 중 “군산시 장재동 212번지”를 “군산시 풍문2길 35”로 하며, 같은조 제6호 내지 제8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6. 나포작은도서관 : 군산시 나포면 교동2길 5
7. 조촌작은도서관 : 군산시 양인로 133
8. 나운작은도서관 : 군산시 대학로 3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열람·대출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u>군산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u>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u>군산시립도서관, 분관</u> <u>(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u> <u>임피채만식도서관)</u> 및 <u>작은도서관</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u>군산시립도서관(임피채만식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u>과 작은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군산시립도서관(늘푸른도서관,</u> <u>설림도서관, 임피채만식도서관을</u> <u>포함한다.)</u>----- -----.</p>
<p>3~6 (생략)</p> <p>제3조(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군산시립도서관 : 군산시 수송동 798-1</u></p> <p>2. <u>임피채만식도서관 :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414번지</u></p> <p>3, 4 (신설)</p>	<p>3~6 (현행과 같음)</p> <p>제3조(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 -----.</p> <p>1. ----- : <u>군산시 축동로 72</u></p> <p>2. ----- : <u>군산시 임피면 임피향교길 39</u></p> <p>3. <u>늘푸른도서관 : 군산시 하나운로 17</u></p> <p>4. <u>설림도서관 : 군산시 설림길 25</u></p>
<p>제5조(입관의 제한) 1. <u>정신이상자</u></p>	<p>제5조(입관의 제한) 1. <u>만취자</u> --</p>

및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생략)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수입 장서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은 그러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부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13조(사용료·수수료)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자 및 자료의 복사, 인쇄 등을 하는 자와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한 자의 사용료와 수수료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25조(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암작은도서관: 군산시 구암동 307-8번지
2. 마성작은도서관: 군산시 신북동 3801-1번지

 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

 -----.

제12조(사용허가) ① 시립도서관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료·수수료)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자, 도서관 자료의 복사, 인쇄 등을 하는 자 --

 -----.

제25조(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

1. ----- : 군산시 구암3.1로 245
2. ----- : 군산시 동아로 31

3. 월명작은도서관 : 군산시 월명동 18-15번지
 4. 미룡작은도서관 : 군산시 미룡동 900-1번지
 5. 홍남작은도서관 : 군산시 장재동 212번지
 6~8 (신설)

3. ----- : 군산시 구영7길 6
 4. ----- : 군산시 미룡로 42
 5. ----- : 군산시 풍문2길 35
 6. 나포작은도서관 : 군산시 나포면 교동2길5
 7. 조촌작은도서관 : 군산시 양인로 133
 8. 나운작은도서관 : 군산시 대학로 330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13. 4. .
 제출자 군 산 시 장
 제안설명자 시립도서관장

1. 제안이유

- 시립도서관 및 분관(늘푸른·설림), 작은도서관(8개소) 운영에 따라 자료를 수집·보존·열람·대출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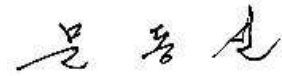
- 자료폐기(제적) 범위 : 3/100 ⇨ 7/100(안제8조)
- 분관 2개소(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개관에 따른 주소지 추가
- 작은도서관 8개소 운영에 따른 주소지 추가

3.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 입법예고 : 2013. 3. 13 ~ 4. 2(21일간) : 의견접수 사항 없음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중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3년 6월 3일

군산시 규칙 제 532호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를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군산시립도서관”을 “군산시립도서관(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임피채만식도서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립도서관”을 “도서관”으로, 같은조 같은항 제1호 중 “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국경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로 하고, 같은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늘푸른도서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휴관한다.

5. 설림도서관 :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선거일(임시공휴일)로 한다. 다만, 자료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휴관한다.

제5조제2항 단서 “단,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비서류 중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를 “단,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조같은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진1매”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 용 시 간(제2조 관련)

구 분		이 용 시 간			
		월요일	화요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시 립 도서관	아동·유아자료실 일반자료실	휴 관	09:00 ~ 18:00	09:00 ~ 17:00	
	디지털자료실	휴 관	09:00 ~ 12:00 13:00 ~ 18:00	09:00 ~ 12:00 13:00 ~ 17:00	
	열람실	07:00 ~ 22:00			
	대회의실 교양문화실	09:00 ~ 21:00			
늘푸른도서관		09:00 ~ 18:00		09:00~17: 00	휴관
설 립 도서관	아동·유아·일반자료 실	09:00 ~ 18:00		09:00~17: 00	휴관
	열람실	07:00 ~ 22:00			
임피채만식도서관			09:00 ~ 18:00		휴관
작 은 도서관	구암·월명·미성 미룡·홍남·나포 나운		09:00 ~ 18:00		휴관
	조촌	휴관	09:00 ~ 18:00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 회원증

(전 면)

통합도서회원증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회원번호: 성 명 :

(후 면)

<p>통합도서회원증 이용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도서서비스 참여도서관 이용시 반드시 회원증을 휴대하여 주십시오. ·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회원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거나,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관 전화번호 : 063)450-6575(6577,4456,6276) ※ 발급기관 홈페이지 : http://lib.gunsan.go.kr ※ 통합도서 홈페이지 : http://book.nl.go.kr <p style="text-align: center;">군산시립도서관</p>
--

□ 공공도서관 통합도서관서비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하나의 회원증으로 참여하는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통합도서관서비스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개인 식별,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 핸드폰)
- 나. 선택항목 : 사용자 ID, 비밀번호, 가족 ID, E-Mail, 메일수신여부, 휴대폰번호, SMS수신여부, 근무지 주소, 근무지 전화, 근무처, 부서명, 학교명, 학년, 반, 번호
- 다. 사용 중 생성 항목 : 대출자번호, 성별, 관리구분, 소속코드, 직급코드, 통합회원여부, 실명인증코드, 회원구분, 가입자료실, 우편발송지역, 회원상태, 등록일자, 수정일자, 제적일자, 대출정지일, 대출정지회원사유, 회원증분실여부, 회원증발급횟수, 현재대출책수, 현재연체책수, 총연체료, 누적연체횟수, 누적연체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나. 보존기간 : 탈퇴 의사 후 즉시 파기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통합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공공도서관 통합도서관서비스 개인정보의 3자 【타도서관】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가. 통합도서관회원 가입시 가입도서관에 개인정보 수집 후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참여도서관 중 이용하지 않는 도서관을 최초 이용하는 시점에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 나. 참여도서관 및 개인정보 제공 현황은 통합도서관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book.nl.go.kr>)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하나의 회원증으로 참여하는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통합도서관서비스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개인 식별,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휴대폰, E-Mail, 생일, 자택우편번호, 자택주소, 자택전화, 근무지우편번호, 근무지주소, 근무지전화, 근무처, 부서명, 학교명, 학년, 반, 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나. 보존기간 : 탈퇴 의사 후 즉시

5.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통합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공도서관 통합도서관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정보공유(타공공도서관)에 동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만 14 미만 법정대리인 : (인)

군산시립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기 증 증 서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우리 도서관에 기증한 등
점의 자료는 시민의 문화예술발전과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군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군산시립 도서관 운영 조례</u>」 ----- ----- ----- -----.</p>
<p>제2조(입·퇴관 및 열람시간) <u>군산시립도서관</u>(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작은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p>	<p>제2조(입·퇴관 및 열람시간) <u>군산시립도서관(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임피채만식도서관)</u>을 포함한다. ----- ----- -----.</p>
<p>제3조(휴관) ① <u>시립도서관</u>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3조(휴관) ① <u>도서관</u>의 ----- -----.</p>
<p>1. <u>도서관</u> :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선거일(임시공휴일)로 한다. 다만, 자료실은 <u>월요일과 국경일</u>에 휴관한다.</p>	<p>1. <u>시립도서관</u> : ----- ----- ----- <u>「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u>-----.</p>
<p>2. (생략)</p>	<p>2.(현행과 같음)</p>
<p>3. (생략)</p>	<p>3.(현행과 같음)</p>
<p>4. (신설)</p>	<p>4. <u>늘푸른도서관</u>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휴관한다.</p>
<p>5. (신설)</p>	<p>5. <u>설림도서관</u> :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선거일(임시공휴일)로 한다. 다만, 자료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휴관한다.</p>

② (생략)

③ (생략)

제5조(회원가입) ① (생략)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비서류 중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 1. 성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 1매
- 2. 중·고등학생(신분증미발급자) - 학생증(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1매
- 3. 유아·아동 - 보호자동반, 의료보험증, 사진 1매
- 4. 군산시 소재 직장이나 학교 재직(학)자 - 신분증,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학생증, 사진1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회원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단,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 <삭제>
- 2. -----

----- <삭제>
- 3. -----
----- <삭제>
- 4. -----

----- <삭제>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13. 4. .
 제출자 군 산 시 장
 제안설명자 시립도서관과장

1. 제안이유

- 시립도서관 및 분관(늘푸른·설림), 작은도서관(8개소) 운영에 따라 자료를 수집·보존·열람·대출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분관 2개소(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개관에 따른 휴관일 및 운영사항 추가
 - 자료실 휴관일 : 군산시립도서관(월), 늘푸른도서관(일), 설림도서관(일), 임피채만식도서관(일)
 - 운영시간 : 자료실 09:00~18:00(토·일 09:00~17:00), 열람실 07:00~22:00
- 작은도서관 8개소 운영에 따른 휴관일 및 운영시간 등 추가
 - 휴관일 : 구암·미성·월명·미룡·홍남·나포·나운작은도서관(일), 조촌작은도서관(월)
 - 운영시간 : 09:00~18:00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및 개인정보 수집 절차 강화
 -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2011.3.29)

3.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 입법예고 : 2013. 3. 13 ~ 4. 2(21일간) : 의견접수 사항 없음

군산시 공고 제2013 - 1017호

「군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3일

군 산 시 장

군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군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로 제정하여 간접흡연피해방지의 금연구역 지정과 이곳에서 흡연 할 경우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는 근거 및 금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직·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와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금연구역 지정(안 제5조)

가 금연구역 지정 대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 「관광진흥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관광지 또는 유원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나.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 절차
 -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지정 및 해제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2) 금연구역의 표시(안 제7조)

-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

(3)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안 9조)

- 금연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과태료(안 제10조)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2. 의견제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6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건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370 군산시 수송동로 58)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전화 460-3263, 팩스 460-4763)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팩스,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계
(전화 460-3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모든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군산시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을 실천하는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2. 「관광진흥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관광지 또는 유원지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설 설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서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흡연실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별표 2를 준용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사업장, 군부대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라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3-1062호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 6. 3.

군 산 시 장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우리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읍면동 회계관직 중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변경 지정 (안 제3조)

나. 예산집행품의 전결 집행대상 중 읍면동장 제외 (안 제21조)

3. 의견제출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6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회계과(전화 063-454-2364, 팩스 063-452-8161, 전자우편 : ttlha@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회계과 경리계(전화 063-454-2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지출원 ---읍·면·동 “경리업무계장”, 수입금출납원 - - -

읍·면·동 “재무업무계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읍·면·동 “경리업무담당자”로 변경한다.

제21조제1항 중 “또는 읍·면·동장에게”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p> <p>5. (생략)</p>	<p>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 ----- -----.</p> <p>5. <u>읍·면·동</u> <u>지출원</u> --- <u>읍·면·동 경리업무계장</u> <u>수입금출납원</u> --- <u>읍·면·동 재무업무계장</u> <u>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u> --- <u>읍·면·동 경리업무담당자</u></p>
<p>제21조(예산집행품의)</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부시장, 국장, 관·과·소장 또는 <u>읍·면·동장</u>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21조(예산집행품의)</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부시장, 국장, 관·과·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p>

군산시 공고 제2013-1068호

공 고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3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13년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의거 신설, 폐지부서의 직제 조정 및 국소관 사무분장 변경

2. 주요내용

○ 2013년 조직개편에 의거 조례 변경사항 반영

- ▶ 제7조(주민복지국에 두는과) 제1항
 - 명칭변경 : 문화체육과 ⇒ 문화예술과
 - 신 설 : 체육진흥과
- ▶ 제7조(주민복지국에 두는과) 제2항
 - 주민복지국(과 소관사무) : 체육진흥과 사무분장
- ▶ 제20조(사업소 소관사무)
 - 시설관리사업소 : 체육시설관리과(폐지) 사무삭제
 -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세무계신설 사무분장

- ▶ 별표1(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보건소 : 대야분소 삭제(대야진료계 폐지)
 - 보건지소 : 대야면 보건지소 삼입
- ▶ 별표2(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 체육시설관리과 삭제
 - 예술의 전당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 주소변경(도로명)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6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 063-450-4233, FAX:450-638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 063-454-225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예술, 체육진흥”을 “예술”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체육진흥, 공공체육시설의 유지관리
7. 환경보전 및 위생업소 관리
8. 일반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매립

제20조제2호 가목을 예술의전당 관리 및 운영으로 하고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세무민원창구운영 업무

[별표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중 1호,2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 ②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 ③군산시 채만식문학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 ④군산시시립국악원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 ⑤군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 ⑥군산시채만식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 ⑦군산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호중 “체육시설관리과”를 “체육진흥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제3항 관련)

1. 보건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군산시 보건소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시 일원

2. 보건지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옥구읍 보건지소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21	옥구읍 일원
옥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옥산면 여로2길 30	옥산면 일원
회현면 보건지소	군산시 회현면 광지산길 8	회현면 일원
임피면 보건지소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1	임피면 일원
서수면 보건지소	군산시 서수면 탐천로 596-3	서수면 일원
대야면 보건지소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	대야면 일원
개정면 보건지소	군산시 개정면 신발산길 10	개정면 일원
성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0	성산면 일원
나포면 보건지소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13	나포면 일원
개야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6길 22	옥도면 개야도리 일원
어청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98	옥도면 어청도리 일원
선유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68	옥도면 선유도리 인근 일원
옥서면 통합보건지소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3길 10	옥서면, 미성동 일원
군장산업단지 보건지소	군산시 자유로 482	오식도 및 비응도 공단 및 새만금 지역 일원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8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수도사업소	수 도 과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하 수 과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군산시 백토로 203(지곡동)
	시립도서관관리과	군산시 축동로 72 (수송동)
	철새생태관리과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차량등록사업소		군산시 구영2길 39 (영화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주민복지국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u>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 위생과, 자원순환과</u>로 한다.</p> <p>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생 략)</p> <p>4. 지방문화, <u>예술, 체육진흥,</u> 삶의질 향상, 근대문화시설 사업에 관한 업무</p> <p>5.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6. <u>환경보전 및 위생업소 관리</u></p> <p>7. <u>일반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매립</u></p> <p>제20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시설관리사업소</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예술의전당관리 및 문화예술의보급</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공공체육시설의 유지관리</u></p> <p>다.·라. (생 략)</p> <p>3. 차량등록사업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바.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7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 ----- ----<u>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u> <u>체육진흥과</u>-----.</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예술</u>----- ----- -----</p> <p>5. (현행과 같음)</p> <p>6. <u>체육진흥, 공공체육시설의 유지관리</u></p> <p>7. <u>환경보전 및 위생업소 관리</u></p> <p>8. <u>일반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매립</u></p> <p>제20조(소관사무)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예술의전당 관리 운영</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다.·라. (현행과 같음)</p> <p>3.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바.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사. 세무민원창구운영 업무</u></p>

현 행	개 정 안																																																																																																						
<p>[별표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제3항 관련)</p> <p>1. 보 건 소</p> <table border="1"> <thead> <tr> <th>명 칭</th> <th>위 치</th> <th>관 할 구 역</th> </tr> </thead> <tbody> <tr> <td>군산시 보건소</td> <td>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td> <td>군산시 일원</td> </tr> <tr> <td>대 야 분 소</td> <td>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td> <td>군산시 일원</td> </tr> </tbody> </table> <p>2. 보건지소</p> <table border="1"> <thead> <tr> <th>명 칭</th> <th>위 치</th> <th>관 할 구 역</th> </tr> </thead> <tbody> <tr> <td>옥구읍 보건지소</td> <td>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21</td> <td>옥구읍 일원</td> </tr> <tr> <td>옥산면 보건지소</td> <td>군산시 옥산면 여로2길 30</td> <td>옥산면 일원</td> </tr> <tr> <td>회현면 보건지소</td> <td>군산시 회현면 광지산길 8</td> <td>회현면 일원</td> </tr> <tr> <td>임피면 보건지소</td> <td>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1</td> <td>임피면 일원</td> </tr> <tr> <td>서수면보건지소</td> <td>군산시 서수면 탑천로 596-3</td> <td>서수면 일원</td> </tr> <tr> <td>개정면 보건지소</td> <td>군산시 개정면 신발산길 10</td> <td>개정면 일원</td> </tr> <tr> <td>성산면 보건지소</td> <td>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0</td> <td>성산면 일원</td> </tr> <tr> <td>나포면 보건지소</td> <td>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13</td> <td>나포면 일원</td> </tr> <tr> <td>개야도 보건지소</td> <td>군산시 옥도면 개야도6길 22</td> <td>옥도면 개야도리 일원</td> </tr> <tr> <td>어청도 보건지소</td> <td>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98</td> <td>옥도면 어청도리 일원</td> </tr> <tr> <td>선유도 보건지소</td> <td>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68</td> <td>옥도면 선유도리 일원</td> </tr> <tr> <td>옥서면 통합보건지소</td> <td>군산시 옥서면 옥봉들길 10</td> <td>옥서면 미성동 일원</td> </tr> <tr> <td>군장산업단지 보건지소</td> <td>군산시 자유로 482</td> <td>옥도및비응도 공단및새마을지역일원</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군산시 보건소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시 일원	대 야 분 소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	군산시 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옥구읍 보건지소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21	옥구읍 일원	옥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옥산면 여로2길 30	옥산면 일원	회현면 보건지소	군산시 회현면 광지산길 8	회현면 일원	임피면 보건지소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1	임피면 일원	서수면보건지소	군산시 서수면 탑천로 596-3	서수면 일원	개정면 보건지소	군산시 개정면 신발산길 10	개정면 일원	성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0	성산면 일원	나포면 보건지소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13	나포면 일원	개야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6길 22	옥도면 개야도리 일원	어청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98	옥도면 어청도리 일원	선유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68	옥도면 선유도리 일원	옥서면 통합보건지소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길 10	옥서면 미성동 일원	군장산업단지 보건지소	군산시 자유로 482	옥도및비응도 공단및새마을지역일원	<p>[별표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제3항 관련)</p> <p>1. 보 건 소</p> <table border="1"> <thead> <tr> <th>명 칭</th> <th>위 치</th> <th>관 할 구 역</th> </tr> </thead> <tbody> <tr> <td>군산시 보건소</td> <td>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td> <td>군산시 일원</td> </tr> </tbody> </table> <p>2. 보건지소</p> <table border="1"> <thead> <tr> <th>명 칭</th> <th>위 치</th> <th>관 할 구 역</th> </tr> </thead> <tbody> <tr> <td>옥구읍 보건지소</td> <td>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21</td> <td>옥구읍 일원</td> </tr> <tr> <td>옥산면 보건지소</td> <td>군산시 옥산면 여로2길 30</td> <td>옥산면 일원</td> </tr> <tr> <td>회현면 보건지소</td> <td>군산시 회현면 광지산길 8</td> <td>회현면 일원</td> </tr> <tr> <td>임피면 보건지소</td> <td>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1</td> <td>임피면 일원</td> </tr> <tr> <td>서수면보건지소</td> <td>군산시 서수면 탑천로 596-3</td> <td>서수면 일원</td> </tr> <tr> <td>대야면보건지소</td> <td>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td> <td>대야면 일원</td> </tr> <tr> <td>개정면 보건지소</td> <td>군산시 개정면 신발산길 10</td> <td>개정면 일원</td> </tr> <tr> <td>성산면 보건지소</td> <td>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0</td> <td>성산면 일원</td> </tr> <tr> <td>나포면 보건지소</td> <td>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13</td> <td>나포면 일원</td> </tr> <tr> <td>개야도 보건지소</td> <td>군산시 옥도면 개야도6길 22</td> <td>옥도면 개야도리 일원</td> </tr> <tr> <td>어청도 보건지소</td> <td>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98</td> <td>옥도면 어청도리 일원</td> </tr> <tr> <td>선유도 보건지소</td> <td>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68</td> <td>옥도면 선유도리 일원</td> </tr> <tr> <td>옥서면 통합보건지소</td> <td>군산시 옥서면 옥봉들길 10</td> <td>옥서면 미성동 일원</td> </tr> <tr> <td>군장산업단지 보건지소</td> <td>군산시 자유로 482</td> <td>옥도및비응도 공단및새마을지역일원</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군산시 보건소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시 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옥구읍 보건지소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21	옥구읍 일원	옥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옥산면 여로2길 30	옥산면 일원	회현면 보건지소	군산시 회현면 광지산길 8	회현면 일원	임피면 보건지소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1	임피면 일원	서수면보건지소	군산시 서수면 탑천로 596-3	서수면 일원	대야면보건지소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	대야면 일원	개정면 보건지소	군산시 개정면 신발산길 10	개정면 일원	성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0	성산면 일원	나포면 보건지소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13	나포면 일원	개야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6길 22	옥도면 개야도리 일원	어청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98	옥도면 어청도리 일원	선유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68	옥도면 선유도리 일원	옥서면 통합보건지소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길 10	옥서면 미성동 일원	군장산업단지 보건지소	군산시 자유로 482	옥도및비응도 공단및새마을지역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군산시 보건소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시 일원																																																																																																					
대 야 분 소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	군산시 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옥구읍 보건지소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21	옥구읍 일원																																																																																																					
옥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옥산면 여로2길 30	옥산면 일원																																																																																																					
회현면 보건지소	군산시 회현면 광지산길 8	회현면 일원																																																																																																					
임피면 보건지소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1	임피면 일원																																																																																																					
서수면보건지소	군산시 서수면 탑천로 596-3	서수면 일원																																																																																																					
개정면 보건지소	군산시 개정면 신발산길 10	개정면 일원																																																																																																					
성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0	성산면 일원																																																																																																					
나포면 보건지소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13	나포면 일원																																																																																																					
개야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6길 22	옥도면 개야도리 일원																																																																																																					
어청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98	옥도면 어청도리 일원																																																																																																					
선유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68	옥도면 선유도리 일원																																																																																																					
옥서면 통합보건지소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길 10	옥서면 미성동 일원																																																																																																					
군장산업단지 보건지소	군산시 자유로 482	옥도및비응도 공단및새마을지역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군산시 보건소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시 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옥구읍 보건지소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21	옥구읍 일원																																																																																																					
옥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옥산면 여로2길 30	옥산면 일원																																																																																																					
회현면 보건지소	군산시 회현면 광지산길 8	회현면 일원																																																																																																					
임피면 보건지소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1	임피면 일원																																																																																																					
서수면보건지소	군산시 서수면 탑천로 596-3	서수면 일원																																																																																																					
대야면보건지소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	대야면 일원																																																																																																					
개정면 보건지소	군산시 개정면 신발산길 10	개정면 일원																																																																																																					
성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0	성산면 일원																																																																																																					
나포면 보건지소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13	나포면 일원																																																																																																					
개야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6길 22	옥도면 개야도리 일원																																																																																																					
어청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98	옥도면 어청도리 일원																																																																																																					
선유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68	옥도면 선유도리 일원																																																																																																					
옥서면 통합보건지소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길 10	옥서면 미성동 일원																																																																																																					
군장산업단지 보건지소	군산시 자유로 482	옥도및비응도 공단및새마을지역일원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8조제2항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사 업 소 명</th> <th>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수 도 사업소</td> <td>수 도 과</td> <td>군산시 시청로 17</td> </tr> <tr> <td>하 수 과</td> <td>(조촌동)</td> </tr> <tr> <td rowspan="4">시설관리 사업소</td> <td>예술의전당 관리과</td> <td>군산시 지곡동 286-9</td> </tr> <tr> <td>체육시설 관리과</td> <td>군산시 번영로 281 (사정동)</td> </tr> <tr> <td>시립도서관 관리과</td> <td>군산시 축동로 72 (수송동)</td> </tr> <tr> <td>철새생태 관리과</td> <td>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td> </tr> <tr> <td colspan="2">차량등록사업소</td> <td>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td> </tr> </tbody> </table>		사 업 소 명		위 치	수 도 사업소	수 도 과	군산시 시청로 17	하 수 과	(조촌동)	시설관리 사업소	예술의전당 관리과	군산시 지곡동 286-9	체육시설 관리과	군산시 번영로 281 (사정동)	시립도서관 관리과	군산시 축동로 72 (수송동)	철새생태 관리과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차량등록사업소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사 업 소 명</th> <th>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수 도 사업소</td> <td>수 도 과</td> <td>군산시 시청로 17</td> </tr> <tr> <td>하 수 과</td> <td>(조촌동)</td> </tr> <tr> <td rowspan="3">시설관리 사업소</td> <td>예술의전당 관리과</td> <td><u>군산시 백토로203 (지곡동)</u></td> </tr> <tr> <td>시립도서관 관리과</td> <td>군산시 축동로 72 (수송동)</td> </tr> <tr> <td>철새생태 관리과</td> <td>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td> </tr> <tr> <td colspan="2">차량등록사업소</td> <td><u>군산시 구영2길 39 (영화동)</u></td> </tr> </tbody> </table>	사 업 소 명		위 치	수 도 사업소	수 도 과	군산시 시청로 17	하 수 과	(조촌동)	시설관리 사업소	예술의전당 관리과	<u>군산시 백토로203 (지곡동)</u>	시립도서관 관리과	군산시 축동로 72 (수송동)	철새생태 관리과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차량등록사업소		<u>군산시 구영2길 39 (영화동)</u>
사 업 소 명		위 치																																						
수 도 사업소	수 도 과	군산시 시청로 17																																						
	하 수 과	(조촌동)																																						
시설관리 사업소	예술의전당 관리과	군산시 지곡동 286-9																																						
	체육시설 관리과	군산시 번영로 281 (사정동)																																						
	시립도서관 관리과	군산시 축동로 72 (수송동)																																						
	철새생태 관리과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차량등록사업소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사 업 소 명		위 치																																						
수 도 사업소	수 도 과	군산시 시청로 17																																						
	하 수 과	(조촌동)																																						
시설관리 사업소	예술의전당 관리과	<u>군산시 백토로203 (지곡동)</u>																																						
	시립도서관 관리과	군산시 축동로 72 (수송동)																																						
	철새생태 관리과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차량등록사업소		<u>군산시 구영2길 39 (영화동)</u>																																						

군산시 공고 제2013-1070호

공 고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3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 2013년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의거 신설, 폐지부서의 직제 조정 및 사무분장 변경

2. 주요내용

○ 2013년 조직개편에 의거 규칙 변경사항 반영

- ▶ 제9조(주민복지국) : 소속과장 및 직렬부여
 - 변경 : 문화체육과장(행정사무관) ⇒ 문화예술과장(행정사무관)
 - 신규 : 체육진흥과장(행정사무관)
- ▶ 제17조(소장의 직급) : 사업소에 두는 과장의 직급(별표3)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과(행정사무관) : 삭제

○ 분장사무 조정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신설,폐지,소속변경)

- 체육진흥과(체육진흥계,운영계,시설계,국민체육센터계) 업무신설
- 체육시설관리과 업무 폐지 / 문화예술과(명칭변경) 업무조정
- 정보통신담당관실(정보보안계) 업무 신설
- 차량등록사업소(차량세무계) 업무신설
- 시립도서관관리과(늘푸른도서관계) 업무 신설
- 보건사업과/건강관리과 업무조정(소속 및 명칭변경)
- 건강관리과(정신건강계) 업무 신설
- 건강관리과(대야진료계) 업무 폐지

▶ 과간 업무분장 조정

- 친환경농산물(부식)학교급식지원
인재양성과(인재양성계) ⇒ 농수산물유통과(농산물유통계) 이관
- 염제조 허가업무
투자지원과(기업지원계) ⇒ 농수산물유통과(수산물유통계) 이관
- 광업권협의 및 관리업무
산림녹지과(산림계) ⇒ 지역경제과(에너지계) 이관
- 비상사태하의 주민통제, 소산 및 수송 계획업무
재난관리과(민방위계) ⇒ 총무과(시정계) 이관
- (공공)도로변 절개지 위험해소를 위한 총괄계획
재난관리과(방재계) ⇒ 건설과(도로관리계)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6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 063-450-4233, FAX:450-638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 063-454-225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전단삭제>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으로”를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
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

[별표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8.12.30, 2009.06.23, 2009.12.29, 2010.02.18, 2010.07.15, 2012.7.26>

분 장 사 무 표(제3조 관련)

[시본청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공 보 담 당 관	홍보업무 분 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 시정소식지(열린시정) 발행 ○ 국·도·시정 주요시책 홍보 ○ 전광판 이용 및 사진전시, 광고 등을 활용한 시정 홍보 ○ 영상물 및 홍보물 제작 홍보 ○ 유선방송을 활용한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정 홍보에 관한 업무 전반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감 사 담 당 관	심사평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정기 심사분석 ○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 확인 평가 ○ 시정 평가단 운영 ○ 이월사업에 대한 심사 ○ 주요행사의 추진상황 확인 및 평가 ○ 직소민원 처리 ○ 기타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확인에 관한 업무 전반 ○ 목표관리제 업무추진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정보통신 담 당 관	정보기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관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군산시 정보화 사업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 군산시 정보화 조례 및 위원회 운영 관리 ○ 신규 정보화 사업 정보화위원회 사전 심의 ○ 유비쿼터스 업무 수행 및 정보화 평가분석 ○ 군산시 정보화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사업 ○ 군산시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관리 ○ 금강생태관광종합정보시스템 장비 유지 관리 ○ 군산시 DNS 시스템 운영 관리 ○ 산학연관 공동연계 정보화 사업 추진 ○ 사회단체 보조 사업 추진 ○ 정보화 교육 계획 수립 시행 및 교육장 관리 ○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시행 ○ 행정 업무용 범용 소프트웨어 보급 ○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 및 활용

3(월) 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부서 정보화 사업 지원 및 협의 조정 ○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리 ○ 예산·회계·감사·급여·수당·물품관리등 일반사무 ○ 청원 정보 활용 능력 평가 시행 ○ 정보통신 연찬회 ○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정보개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 인사, 재정, 세정, 건축, 재난 시스템 운영관리 ○ 전자문서시스템 사업추진 및 운영 ○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운영 ○ 타부서 운영 정보시스템 서버 운영관리 ○ 행정전자서명 등록 및 인증관리 ○ 정보화사업 협의조정시스템 운영관리 ○ 새울행정시스템 운영관리 ○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 및 활용 ○ 시정 온라인 통합홍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 경제산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정보보안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총괄 ○ 군산시 개인정보 보호업무 총괄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관리 ○ 행정정보유출방지(USB보안)시스템운영 ○ 서버보안 및 DB보안시스템운영 ○ 행정업무용 범용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통신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전화망 통신시설 운영 관리 ○ 각종 전산통신망(LAN, WAN, 화상) 시설 운영 관리 ○ 정보통신(통신목적 전자계산조직, FAX, 전화) 시설 도입보급 ○ 정보 통신관리 예산 운영 ○ 본청 및 산하 기관 정보통신시설 계획수립 시행 ○ 각종 통신예산 통합 광통신화 추진 및 이동통신망 관리 ○ 각종 통신회선 및 일반전화 사용료등 공공요금 관리 운영 ○ 통신망 및 그에 따른 S/W등 운영 보급 교육 ○ 통신 보안관리 ○ 민방공 경보 통신 지원 ○ 기타 통신에 관한 지원 및 보급 ○ 정보통신설비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설 및 전산실 관리 운영 ○ 자가통신망 신증설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 ip 텔레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 e-지키미 시스템 운영 관리 ○ 의회방송동영상 송출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 민원안내전화교환실 운영관리

3(월)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총무과장	시 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행정 시책의 추진 ○ 읍·면·동 행정 지도감독 및 복무 단속 ○ 시 행정 구역에 관한 사항 ○ 읍·면·동장의 청원서 처리 ○ 주요 시정행사 ○ 읍·면·동 관계회의 조정 통제 ○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 ○ 행정동향 및 여론행정 관리 ○ 시민의 장 및 모범시민상 표창 ○ 선거 및 국민투표 ○ 각종 위원회 조정 총괄 ○ 평통 및 바르게살기운동 업무 지원 협조 ○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민간단체 관리 ○ 새마을금고 지도 및 육성 ○ 북한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 ○ 과거사정리 업무추진 ○ 시 읍면동간 사무의 조정 ○ 기타 기능전환과 관련된 사무 전반 ○ 반상회 운영 ○ 통 리 반 설치 운영 ○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업무 ○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업무 ○ 비상사태하의 주민통제, 소산 및 수송 계획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기획예산 과 장	기 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방침과 시정 목표의 책정 ○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중장기 계획의 수립 조정 ○ 주요업무계획 및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 대통령·총리·장관·지사·시장 지시사항 처리 ○ 공약사항(대통령·지사·시장) 관리 ○ 시정 조정위원회 운영 ○ 행정규제개혁 업무 ○ 군산시 상징물 관리 ○ 시민제안제도 운영 ○ 시정계획 및 시정연설 작성 ○ 시책개발 업무추진 ○ 국가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추진 총괄 ○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서울사무소 운영 총괄업무 ○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월)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회계과장	재산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유재산(일반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 ○ 국(기획재정부 소관), 공유재산(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및 등기 ○ 시유재산(일반재산)의 사용 허가 ○ 은닉 공유재산(일반재산)의 조사 및 환수 ○ 국(기획재정부 소관), 공유재산(일반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과징 ○ 재산 수입에 관한 사항(일반재산)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민원봉사 과 장	산단민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인감증명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120생활민원 이송 ○ 유기민원(복합민원) 이송 ○ 법인인감 발급기 운영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인재양성 과 장	인재양성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체험학습시설 건립 ○ 원어민교사 배치 ○ 교육발전진흥재단 운영 ○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 전북외고 지원 ○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 ○ 학교급식지원(친환경농산물 부식제외) ○ 생활과학교실 운영 ○ 소외계층 영재발굴 ○ 교육복지 우선투자 ○ 지역인적자원개발 ○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 지역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 초.중.고 학습지원 ○ 교육관련 보조사업 지원 ○ 전북인재육성재단 운영에 관한 지원 ○ 지식기반사회 구현 및 지역교육 균형발전 지원 ○ 교육 기반시설 확충 및 교육입지 선정, 학교교육환경 개선지원 ○ 100주년기념 및 기타 장학업무추진 및 유능한 인재 육성, 우수학생 지원

3(월)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관련협의회 운영·지원 등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제반업무 지원 ○ 기타 사회교육에 관련된 사항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지역경제 과 장	에 너 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 수급대책 및 조정 ○ 석유류에 대한 업무 전반 ○ 에너지 절약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 ○ 연탄 품질관리 지도 ○ 연탄 수송업자 및 판매소 지도 관리 ○ 고지대 및 도서지역 영세민 연료 업무 ○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 가스업체 안전점검 사후관리 ○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 허가 및 변경 허가 ○ 액화 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업 허가 ○ 도시가스 시설 공사계획 승인 ○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 ○ 도시가스 시설 자금융자 관련 업무 ○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 액화 석유가스 사용 신고 ○ LPG 사용 시설 체적판매제 시행 추진 ○ 가스안전관리 계도 홍보 ○ 기타 가스 안전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 명령 ○ 전기공사업체 면허신청 등에 관한 업무 ○ 도서 전화사업 계획수립 및 도서발전소 운영 관리 ○ 기타 전기관계 업무 ○ 광업권 협의 및 관리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투자지원 과 장	기업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지원 및 유지관리 ○ 산업단지관련 민원 처리 ○ 수출동향분석 및 지표관리 작성 ○ 산업단지 홍보 및 안내 ○ 산업단지 기업유치 지원 협조 ○ 기타 공업진흥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육성시책 종합기획 조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업무 ○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업무 ○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 업무 ○ 상공단체 육성지원 및 지도 감독 ○ 수출동향 분석 및 지표관리 작성 ○ 중소벤처기업 지원업무

3(월)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농정과장	원 예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업시책 및 성장성 특용작물 종합계획 수립 ○ 잠업류에 대한 업무 전반 ○ 특용작물 주산단지 조성 및 재배지도 ○ 원예작물 및 과수 증산계획 수립 추진 ○ 종묘상 관리 ○ 채소 및 양념류 생산계획 수립 추진 ○ 과수원에 주산단지 조성 및 생산지도 ○ 과수원에 종묘업 허가 및 불량 종묘 단속 ○ 화훼산업 육성 및 종묘상 관리 ○ 농촌 일손 돕기 ○ 원예작물 유통 구조개선 (물류표준화, 저온저장)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해양수산 과 장	수산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수산시책 및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추진 ○ 수산사업 통합 추진 및 평가 ○ 수산업에 관한 금융 통계 조사 ○ 수산단체 업무지도 및 어민후계자 육성관리 ○ 어가 자녀학자금 지원 및 부채 대책 추진 ○ 어민 취업확대 대책 계획수립 추진 ○ 해양수산분야 충무실시계획 수립. 시행 ○ 어업허가관련 과태료 부과 처분 ○ 여객선에 관한 업무 전반 ○ 낚시어선업 신고 및 관리 ○ 한·중·일 어업협정 관련업무 ○ 어업신고수리 ○ 어촌체험마을 운영 및 관리 ○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연안환경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등록 및 어선건조(개조) 허가 ○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및 어로시설 사업 ○ 어획물 운반업 허가 ○ 태(폭)풍 피해어선 복구 사업 ○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 해양오염 방지 종합대책 수립 ○ 해양시설 지도 점검 ○ 해양오염 방제장비 및 기기 관리 ○ 오·폐수 해양유입 감시 및 감독 ○ 오염원 무단방류 및 투기행위 단속 ○ 해양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 ○ 해양오염 피해 보상업무 추진 ○ 어선손실보상 및 분쟁 조정 ○ 어선원부 관리 및 발급 ○ 항포구 폐선처리 ○ 어선관리시스템 운영- 조정 ○ 어업허가처분

3(월)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양식산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장 관리선 지정 및 승인 ○ 천해 및 내수면 양식어장 개발 ○ 수산자원 조성 사업 ○ 보호(육성, 자원관리)수면 지정 관리 ○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 천해, 내수면 어업권 사후 관리 ○ 내수면 어업계 및 낚시터 운영 ○ 천해 및 내수면 어업면허·허가·신고 ○ 수산증식 사업 추진 ○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 김양식 진흥지도 및 관리 ○ 어장정화사업 및 어장 청소 ○ 어업권 원부 및 어장도 발급 ○ 자율관리어업 육성 ○ 바다목장화사업
	어촌어항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지역 개발 종합계획 기획 조정 ○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 ○ 도서지역 한해 급수 대책(식수) ○ 도서지역 주민 숙원사업 추진 ○ 제2종 및 소규모 어항 유지 관리 ○ 어항 시설 사업 허가·신고수리 ○ 제2종 어항시설사용(점용) 허가·신고 ○ 어항내 폐유저장시설 및 관리 ○ 제2종 및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추진 ○ 어항관련 손실보상 추진, 과태료 부과·징수 ○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징수 ○ 어촌체험 마을조성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산림녹지 과 장	녹지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조림 기본계획 수립 ○ 임업단체 지도 감독 ○ 임업 자금 융자 ○ 산림 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통계 ○ 애림 계몽 홍보 ○ 임업기술 개량 보급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 ○ 비밀문서 관리 및 충무계획 수립 ○ 조림사업 및 풀베기 ○ 공유임야 관리 ○ 임목등기 ○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임목벌채 허가(신고) 및 의무조림 등 사후관리
	보호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보호 부정 임산물 단속 ○ 산림 병충해 방제 및 대책본부 운영

3(월) 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 예방 및 진화 ○ 임산물 반출 통제 ○ 산림관계법 위반자 법적처리 및 사법 업무 ○ 산지 정화 ○ 보안림 지정·시업허가 및 관리 ○ 육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지도 ○ 임산부산물 증산 ○ 산지이용 구분조사 및 관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관리 ○ 산지전용 허가(신고·협의) 및 사후관리 ○ 산림감시 공익요원 관리 ○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사후관리 ○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관리 ○ 만경강 생태숲 조성 및 사후관리 ○ 임산물 굴·채취허가 및 종자채취 지도 ○ 개간 및 초지조성 협의
	도심녹화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 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식재관리 ○ 가로변 공한지 화단조성 및 관리 ○ 조경수·관상수 화단조성 및 관리 ○ 꽃(초화류) 생산 및 식재 ○ 수벽조성 및 차례 조경 ○ 꽃길조성 ○ 녹지기금 관리 및 운용 ○ 녹지조경 설계 및 실행 ○ 녹지조경 설계 및 실행 ○ 보호수 관리 ○ 도시숲(1마을 1소공원)조성계획수립 및 추진 ○ 시민 현수 목·금 식재 및 관리 ○ 완충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 ○ 시영 양묘장 관리 ○ 아파트·공장·기관등 조경입지 승인
	산 림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석허가 및 관련민원 관리 ○ 토사채취 허가·신고·협의 ○ 채석단지 지정 및 관리 ○ 채석(토사채취)허가지 복구승인 및 지도 ○ 임도사업(신설·보수·구조개량)추진 및 관리 ○ 사방사업 및 산사태 위험지 관리 ○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업무처리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관련업무 처리 ○ 도시지역내 채석(토사채취)협의 ○ 광산개발시 산지일시사용 및 토석채취허가 ○ 숲길 조성 ○ 등산로 정비

3(월)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농수산물 유통과장	농산물유통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 철새도래지쌀 홍보 및 관촉업무 ○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및 사후관리 ○ 농특산물 지적재산권 및 공동상표 관리 ○ 농산물 유통기금 관리 ○ 농특산물 지리적표시제 업무 ○ 농산물 출하지도 및 관촉지원 ○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및 유통 지도단속 ○ 농산물 안전성 조사 ○ 농특산물 유통 및 브랜드 사업 ○ 농특산물 영업소 신고, 허가관리 ○ 부정 농특산물 유통단속 ○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 및 저장시설 지도와 기술교육 ○ 협동출하반 조직 육성관리 ○ 농산물 집하장 시설관리 및 저장시설 지도 ○ 친환경농산물(부식)학교급식 지원
	수산물유통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 계획수립 추진 ○ 수산물 특산품, 관광상품 개발, 육성관리 ○ 수산물종합센터 시설 및 운영관리 총괄 ○ 수산물종합센터 사용료 부과 및 징수 ○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확충 ○ 수산물 가공업 신고·등록 및 행정처분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수산물 안정성 조사 및 지정해역 관리 ○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추진 ○ 영어조합법인 설립등록 ○ 수산물 위판장 설치 및 관리 ○ 염제조 허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복지지원 과 장	기초생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일반서무, 예산, 회계, 경리, 재산관리 등 ○ 기초수급자 보장결정 및 통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생계, 주거, 해산장제, 교육)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및 관리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 기초수급자 심의 ○ 의사 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 부당이득금(구상금)부과 및 체납관리 ○ 의료급여 진료비 정산 및 환수 ○ 의료급여 중복·이중청구 관리 ○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 의료급여 사후관리(의료급여보상금, 환급금, 향암면역

3(월) 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p>초과자 및 사망 후 관리, 중복투약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및 부정수급자관리 ○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 ○ 저소득층장학금지원사업 ○ 의료급여대상자 자격 관리 ○ 의료급여 특별회계 업무 ○ 의료보호 대불금 지원 및 관리업무 ○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 ○ 나운영구입대아파트 신청 및 민원처리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관리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보장구지원 관리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 기타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자활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 추진 ○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 관리 ○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추진 ○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 ○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관리 ○ 위탁자활근로사업 추진 ○ 자활공동체 지원 ○ 자활소득공제사업 지원 ○ 자활기금 융자 및 상환 관리 ○ 생업자금 융자 추천 ○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관리 ○ 내일키움통장 사업 대상자 관리 ○ 차상위 자활보장결정 및 통지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무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재활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 ○ 장애인등록 및 관리 ○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 장애인 복지시설 입·퇴소 관리 ○ 장애인 복지관련 법인 설립 ○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 장애연금 지원사업 추진 ○ 장애인 의료비 및 등록진단비 지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사업

3(월) 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 ○ 장애인단체 사무실 개보수 추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약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추진 ○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비 지원 ○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지원 ○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 장애인 고속도로할인카드 교부 및 관리 ○ 장애인주차표지 교부 및 관리 ○ 장애인 복지카드 교부 및 관리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서비스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점검 및 관리 ○ 장애연금, 장애수당 보장결정 및 통지
	경로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복지 업무기획 및 업무전반 ○ 기초노령연금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추진 ○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운영 추진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및 결연사업 ○ 경로식당 운영 및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 추진 ○ 노인건강진단 사업 ○ 노인회운영 관리지원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 노인대학 신고 및 운영지원 ○ 노인복지기금관리 및 운영 ○ 어버이날 행사 및 경로효친 업무 추진 ○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추진 ○ 경로복지 관련 법인설립 추진 ○ 가출노인관리 운영 ○ 경로당 운영 지원 ○ 독거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 ○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실버타운조성 사업추진 ○ 노인취업알선 지원 ○ 경로우대시책 추진 ○ 기초노령연금대상자 보장결정 및 통지 ○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복지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시설업무 기획 및 업무 총괄 ○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 ○ 노인재가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 ○ 노인복지시설 입·퇴소 운영관리 ○ 경로당 설치신고

3(월)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다기능시설 신축 운영지원 ○ 노인조건부시설 관리업무 ○ 경로당 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사업 추진 ○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 노인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 노인복지설치관련 사회복지법인 설립추진 ○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 매·화장 및 묘지에 관한 업무 ○ 공·사설 공원묘지에 관한 사무 ○ 새마을회관, 모정관리 ○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관리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여성아동 복지과장	여성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시설물 유지 관리 ○ 일반 서무, 예산, 회계, 경리, 재산관리 등 ○ 여성 복지 업무 기획 조정 ○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 및 선도 사업 ○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관리 및 지원 보호 ○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취업 및 상담 ○ 모자·부자가정 건강진단 사업 및 생활, 기술교육 ○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 ○ 여성권리 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 ○ 여성 정책 개발 종합 기획 ○ 여성 정책 시행개선 및 평가 분석 ○ 여성 사회 활동 대상 발굴 ○ 건전 가정 육성 및 여성관련 각종 행사 ○ 여성단체 지도 육성 ○ 여성 성차별 의식개선정책에 관한 사항 ○ 여성발전기금 관리 ○ 군산시 성희롱 관련 지도 감독 ○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관리 ○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 아이돌봄 지원대상 결정통지 ○ 여성아동복지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육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정책 수립 ○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관리 ○ 보육시설 수급계획 수립 ○ 보육시설 인가 및 변경인가 ○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 ○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 위탁 취소

3(월) 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평가인증 ○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회의 소집 ○ 보육시설 예산·결산 승인 ○ 보육시설 정기(수시) 지도점검 ○ 보육시설 시정 및 변경 명령 ○ 보육시설의 행정처분(운영정지·폐쇄) ○ 보육시설의 장 업무정지 ○ 보육교사 자격정지·자격취소 ○ 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 청문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보육시설 행정쟁송 ○ 보육시설 현황 분기보고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자격대상 변동관리 ○ 보육료 자격대상 변동관리 ○ 유아학비 자격대상 변동관리
	아동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관련업무 기획 및 운영전반 ○ 아동학대 예방사업 ○ 결식우려아동 급식(방학중, 학기중 공휴일) ○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실종아동 보호 ○ 요보호아동 복지시설 입소 ○ 입양가정 지원 (일반, 장애아)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관리 및 지원 ○ 요보호아동 결연 ○ 퇴소아동 자립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CDA) 지원 ○ 아동생활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설치 운영지원 및 지도 감독 ○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아동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관리 ○ 아동복지 교사관리(채용,계약,급여,아동등록등 관리)
	드림스타트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스타트 운영 총괄 ○ 드림스타트센터 청사 관리 ○ 통합사례관리 ○ 전문인력 채용 및 관리 ○ 센터지원체계 구성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 ○ 인지/언어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 정서/행동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 건강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 시소와 그네(보육지원통합서비스) 운영지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관리 ○ 아동복지 교사관리(배정·노무, 사업 및 DB관리)
	다문화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3(월)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관련 축제 및 행사 지원 ○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개발 ○ 결혼이주여성 방문교육사업 ○ 국내거주 외국인 지원 및 관리 ○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현황 통계 구축 조사 ○ 그밖에 다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 ○ 출산 업무 총괄 및 기획 조정 ○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 출산장려 중·장기 계획수립 운영 ○ 출산장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출산장려 홍보, 대외협력 및 민간활동 지원 ○ 출산장려 T/F팀 구성 및 운영 ○ 출산장려 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 출산 대책관련 시책 개발추진 및 홍보 ○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구성 운영 및 관리 ○ 국내·국제 결혼 중개업소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 ○ 그 밖에 타과에 속하지 않는 출산 정책에 대한 사항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문화예술 과 장	문화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 행정 종합 기획 조정 ○ 지방문화의 진흥 ○ 문화재 분야 기획업무 ○ 지방문화단체의 지원 및 문화 행사 지원 ○ 지방문화원 지원 및 지도감독 ○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 ○ 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 문화재 정비보수 및 보수공사 ○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유지 관리 ○ 향교 일요학교 운영 및 지원 ○ 향토 춘추계 석전대제 및 유도회 ○ 향토 유적관리 및 발굴조사 ○ 시사편찬 ○ 군산시 역사자료 ○ 천연기념물 관련업무 ○ 문화복지 증진 시설물 ○ 문화복지 증진 시설물 건립추진 ○ 문화산업 지원 및 육성(신설) ○ 문학관자료의 수집 전시 및 관람업무 ○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 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 ○ 채만식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 기타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채만식문학상 업무 추진 ○ 전통사찰 관리 ○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월)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p>예술진흥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예술의 진흥 ○ 지방예술 진흥업무 기획 ○ 지방 예술단체의 지원 ○ 각종 예술행사 지원 ○ 시립예술단 운영 전반 ○ 예술업무 전반 ○ 예총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 ○ 진포예술제 추진 ○ 미술장식품 업무 ○ 예술관람 시설물 건립 추진 ○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사업 ○ 문화예술의 거리(시민예술촌)조성사업 ○ 지역특성화예술 교육지원사업 ○ 각종 예술제 및 사회단체 지원 ○ 미즈카페, 장미갤러리, 장미공연장 운영
	<p>삶의질정책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향상 종합 계획수립 및 총괄운영 ○ 삶의 질 향상 기획·평가 및 시책 발굴 추진 ○ 삶의 질 정책 TF팀 구성 운영 ○ 조례 제정 및 거버넌스 구축 ○ 주민밀착형 소규모 문화시설 확충 ○ 문화복지 주요시책 발굴 ○ 슬로시티 관련 기획·조정·평가 ○ 슬로시티 중장기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 슬로산업 관련 자원화 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슬로시티 연맹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운영지표 개발 ○ 슬로시티 체험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 슬로시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주민참여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슬로시티 지정 지역브랜드화 작업 및 인증시험사업 ○ 문화 영상업무 ○ 출판사 및 인쇄소 신고, 지도감독 ○ 공연 및 공연장 지도감독
	<p>근대문화시설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산업유산활용 예술창작벨트화 사업 ○ 근대문화중심도시 사업추진 관리 ○ 근대역사 건축물 정비지구사업 ○ 근대문화중심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 ○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 추진 ○ 1930 근대군산 시간여행 국가공모사업 추진 ○ 근대건축물 복원 및 시설활용 계획 수립 ○ 근대건축물 임대 및 시설관리 ○ 근대건축물 관련 홍보 및 지원 ○ 복원 근대건축물 시설관리 및 지원 ○ 장애인체육관 건립 ○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p>박물관관리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 추진 ○ 전시물 구입에 관한 사항 ○ 박물관 전시 기획에 관한 사항 ○ 구)조선은행 운영

3(월)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일본 제18은행 운영 ○ 기타 박물관 운영에 속하는 사항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체육진흥 과 장	체육진흥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수립 발굴 추진 ○ 전국(국제)대회유치 및 체육행사 지원 ○ 군산시민체육회 지원 및 지도감독 ○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 공공체육시설의 지도감독 ○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공원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 장애인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에 관한사항 ○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기타체육시설등에 관한 사항
	운 영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경기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야구장 관리 및 운영 ○ 체육행사 및 경기관리, 경기용품 관리 ○ 입장권 관리 ○ 입장권 검인 관리 ○ 입장료, 사용료등 제반 수입 업무 ○ 체육시설물의 사용 허가 ○ 벚꽃맞이 행사 지원 ○ 월명체육관, 관리 및 운영 ○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내외 주변 청소 ○ 궁도장 관리업무 ○ 공원내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일정규모 : 정식인정 대회경기 가능한 표준시설을 갖춘 경기장) ○ 금강수송생말공원 축구장 관리 및 운영
	시 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 공공 체육시설 비품 및 재산 관리 ○ 체육시설 설비 ○ 각 체육시설물의 유지 관리 보수 ○ 전기 기계설비 분야 보수 ○ 행사 및 경기진행 관리 협조 ○ 부지내 녹화 및 조경관리
	국민체육센터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주요사업입안 및 일반서무 ○ 이용객 보건 및 안전관리 ○ 수영장 운영 및 관리 ○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라커룸 관리 및 운영

3(월)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환경위생 과 장	환경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 ○ 환경보존사업 종합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 및 타법 검토(협의)업무 전반 ○ 환경보전 홍보교육 및 행사관련 업무 ○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 자연보호 제반 업무 ○ 천연가스 보급 사업 ○ 생태공원(학습장) 조성업무 추진 ○ 습지보전사업 추진(GEF공동) ○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및 환경행정협의회 지원 ○ 직도사격장 환경영향 조사 ○ 야생 조수보호와 수렵 면허발급 및 단속 ○ 생태탐방로 및 둘레길 조성사업 ○ 푸른군산21 추진협의회 운영 ○ 저탄소녹색성장 총괄업무 ○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자원순환 과 장	청소행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과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 청소대행업체 및 직영미화원 관리 ○ 청소장비 개선 및 보강 ○ 쓰레기 봉투 및 종량제 추진 ○ 대형(다량)폐기물 수집운반비 부과·징수 ○ 국토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추진 ○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 ○ 도서지역 및 농촌쓰레기 처리 및 관리 ○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과태료부과 ○ 청소관련 각종 홍보업무 ○ 기타 과내 다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재활용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 ○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부과·징수 ○ 1회용품 지도점검 및 포상금 지급 ○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등 관련업무 ○ 폐기물처리미신고(2,000m²미만)관리
	청소지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업 지도단속 ○ 폐기물 배출업체 지도단속 ○ 폐기물 처리시설(소각 등) 지도단속 ○ 폐기물 재활용업체 신고 및 지도단속 ○ 폐기물 처리업허가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

3(월)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신고(2,000m²이상) 및 관리 ○ 기타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 폐기물관리법 관련 타부서 협의 ○ 지정폐기물 처리 및 지원협의회 관련업무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건설과장	도로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도로정비 및 보수 유지관리 ○ 건설교통부 소관 국·공유재산(도로·구거) 관리처분 및 등기 ○ 건설교통부 소관 국·공유재산(도로·구거) 사용료 및 대부료 과징 ○ 도로·구거부지 허가 및 점용료 과징 ○ 도로·구거부지 용도 폐지 승인 ○ 도로공사 용지매수 지장물 보상 ○ 도로 무단점용 단속 업무 ○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 조정 ○ 도로정비 수로원 관리 ○ 노점상 지도단속 및 관리 ○ 가로 환경정비 ○ 과적차량 단속업무 ○ 접도구역 관리 ○ 철도건널목관리 ○ 공공 도로변 절개지 위험해소를 위한 총괄계획 수립 ○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도로계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지구의 도로개설 및 확장 ○ 도시계획외의 도로개설 확장 공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 ○ 생활환경 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교통사고 낮은곳 개선사업 ○ 도심부 혼잡지역 개선사업 ○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 시의 군도개설 및 확·포장공사 시행 감독 ○ 기타 도로에 관련한 사항
	도로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도로의 개설 및 포장 보수 ○ 도로 및 교량 공사의 시행 및 감독 ○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시행 및 감독 ○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건축과장	공동주택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 및 입주자모집 승인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구성 및 조합설립인가 ○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3(월)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 및 신고 ○ 부도 임대주택 관리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 ○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 ○ 공동주택 관리소장 배치신고 및 관리 ○ 공동주택관리업자 관리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 및 관리 ○ 공동주택행위 허가 및 신고 관련업무 ○ 국민주택 조합 설립인가 및 신고 처리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 ○ 주택법 대상 건축물 건축심의회 사전검토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재 난 관리과장	민 방 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과분야 예산 총괄, 계획 수립 ○ 민방위 계획의 수립 ○ 민방위협의회 운영 및 각급기관 협조 ○ 민방위 상황실 운영 ○ 전시 근로 동원에 관한 사항 ○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수립 조정 및 확인 ○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인력 물자 시설 동원 ○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통계자료 수집 보완 ○ 민방위 주요 시설의 보호관리 및 장비의 유지 관리 ○ 피해 시설물의 긴급 복구 ○ 주민 신고망 관리 ○ 민방공 계획 및 훈련 실시 ○ 등화·음향관제, 비상방송 제도 운영 ○ 민방위 대원 및 주민의 교육 훈련 ○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서 지정 및 복무관리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 군부대 업무협의 관련 ○ 국가비상대비 각종 교육·훈련 ○ 본청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재난안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 통제단간 협조 지원 체계 구축 ○ 국가기반보호관련 업무 및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 기획·시기별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안전 점검에 관한사항 ○ 내수면 유선·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 총괄관리 및 안전점검 지도 ○ 생활안전 취약시설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3(월) 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보고체계 구축 ○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재난징후정보수집관리 및 재해위험수목 정비 사업추진 ○ 안전관리 계획
	복구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복구사업 총괄 관리 ○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 재해시설물 보수 및 복구, 대책 수립, 정산 ○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 ○ 하천 점·사용허가 ○ 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 ○ 하천공사 시공 및 감독 ○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 법정 하천 시설물 관리 및 유지관리 ○ 폐천부지 관련업무 ○ 하천 편입토지 관련업무 ○ 재해사전대비 및 피해보고 ○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 ○ 자연재난 응급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 ○ 해수범람 대비 및 수방자재 관리 ○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공 및 감독 ○ 국가하천 유지관리 업무 ○ 소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토지 등 보상업무 ○ 4대강 친수공간 유지관리
	방 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 대책 수립 ○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 풍수해 보험제도 ○ 지진 및 지진해일 종합대책 ○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 ○ 자연재해 대비 긴급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E-30 대피계획 ○ 방재(재해)예방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방재시설물 관리 ○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 피해상황 전산입력 ○ 방재계획수립 및 교육홍보 ○ 방재의 날 행사 추진 ○ 자연재난 예·경보 발령 ○ 국가안전망 관리 ○ 문서처리, 기상특보사항 처리 ○ 강우량기 관리 ○ 수위관측소 관리

3(월)

[보건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보건사업 과 장	보건행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과 및 보건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문서 및 공인 관리 ○ 보건소 예산운영 및 일상경비 등 제경비 집행 관리 ○ 직원 당직근무 명령 및 보건소 내외 복무 단속 ○ 보건지소 관리 ○ 공중 보건 의사 복무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비품 및 소모품 관리 ○ 보건소 차량 관리 ○ 의료장비(기자재 포함)와 방역장비의 구입과 관리 ○ 약품 구입과 배정에 관한 사항 ○ 보건소 및 지소·진료소 시설물 관리(신축 개·보수)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 보건진료소관리 ○ 보건소 전산 운영·관리 ○ 기타 보건소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의 약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에 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 ○ 약사법에 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 ○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 ○ 의무관련 지도에 관한 업무 ○ 약무관련 지도에 관한 업무 ○ 유사 의약업소 지도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법률에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항 ○ 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 의료기기법에 의한 신고 및 지도관리 ○ 헌혈 권장사업 ○ 건강진단 등 신고처리
	감염병 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관리대책 및 소관업무 운영 계획 ○ 법정 감염병 환자 관리 및 역학조사 ○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 방역 소독 및 약품 관리 ○ 음용수 소독 관리 ○ 수인성감염병에 관한 사항 ○ 기생충 관리 업무 ○ 성병, 한센병, 에이즈, 결핵, B형 수직감염등 예방·관리 ○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관리 ○ 소독업 신고 및 법정 의무소독업소 관리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관리

3(월)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진료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테러 관리 ○ 환자 진료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등 제증명 발급 및 수수료 징수 ○ 진료비 징수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등 청구 ○ 의료지원 업무 ○ 임상병리 검사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 ○ 방사선 검사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 ○ 물리치료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 ○ 법정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 음용수 수질검사 업무 ○ 한방진료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심장병, 안면기형, 실명예방 관련사항 ○ 아토피 예방 사업 ○ 모바일 클리닉 운영 ○ 무의도서순회진료
	통합보건지소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보건지소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국민건강 증진, 방역,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 일반·치과·한방 진료에 관한 사항 ○ 방문 보건사업 전반 ○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 보건교육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지소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 보건교육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증진, 방역,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 보건통계의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 일반·치과·한방 진료에 관한 사항 ○ 기타 보건사업관계 및 시장이 위임하는 사항 ○ 방문 보건사업 전반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건강관리 과 장	건강도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사항 ○ 건강도시 계획 수립 및 추진 ○ 건강도시 프로젝트 개발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관련 사항 ○ 통합평가등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 건강도시 대내·외 협력 업무 ○ 보건소 홍보자료 개발 및 홍보관련 사항 ○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관리 ○ 국민영양조사 ○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 과 서무 및 기타 업무등
	건강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사업

3(월)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관리사업 ○ 금연사업 및 흡연예방 사업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 ○ 구강보건실 운영 및 구강보건사업 전개 ○ 건강증진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운동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사업 교육·홍보 ○ 노인체조 보급사업 ○ 한방보건사업계획 수립·시행사항
	방문보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보건사업 전반 ○ 간질환자 관리 ○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 ○ 경로당 순회 한방진료
	모자보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 모자보건사업 지도 및 평가 운영 ○ 미숙아·선천성대사 이상아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예방접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불임부부 지원사업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 ○ 산후조리업 신고에 관한 사항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국가 건강검진 및 도민 건강검진 사업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
	정신건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관리사업 ○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 사회복지시설 운영 ○ 치매예방관리사업 ○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사업 ○ 절주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기술보급 과 장	소득작목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축산분야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 ○ 시설원예 재배 기술지도 ○ 시설작목 에너지절감 및 경영비절감 실증 기술지도 ○ 과수, 화훼 재배기술 지도 ○ 약용작물,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 원예작물 친환경농업 지도 ○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기술지도 ○ 기타 소득작목에 관한 사항

3(월)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연구개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기술 실증 시험 ○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시험연구 ○ 농업인기술개발사업 ○ 실증시험포 운영 및 시험연구 ○ 환경친화적 유용미생물 배양 제조, 보급 ○ 친환경 복합 생균제 배양 제조, 보급 ○ 조직배양실 운영 ○ 부산물 이용 축산사료화 기술 보급 ○ 기타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예술의전당 관리과장	시설운영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 사업소내 복무단속 및 보안관리 ○ 시설내 청원경찰 복무관리 ○ 과내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예산, 회계, 계약, 경리, 용도와 재산 관리 ○ 지출, 급여, 세입세출외 현금, 세외수입, 물품관리, 공공요금, 공공성경비, 일용인부 관리 ○ 주차장 운영,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의 전기, 소방, 에너지에 관한 사항 ○ 냉방, 난방, 급수, 기계 시설관리 ○ 건축, 토목, 조경 등 관리 ○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복무지도 총괄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시립도서관 관리과장	관 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신규 조성 및 건립(작은도서관 포함) ○ 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 ○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업무 ○ 보안관리 및 당직관리 ○ 시설 대관 및 사용료 징수 관리 ○ 열람실 관리 및 시스템 운영 ○ 전기시설물 관리 ○ 냉·난방, 소방, 도시가스 관리 ○ 물품 및 기록물관리 ○ 구내식당 관리 ○ 청사 내외 경비(주차관리 등) ○ 소관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 문서 수발 및 직인관리 ○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자료운영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일반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월)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간행물실 및 보존서고 운영에 관한 사항 ○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서관리 시스템 등 운영 및 유지관리 ○ 도서관 개관연장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운영 관리 관한 사항 ○ 도서관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자 참고 봉사(이용자교육 등)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에 관한 사항 ○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
	분관운영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학교도서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 지원 관련 사항 ○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임피채만식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월명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미성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구암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미룡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홍남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나포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조촌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나운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늘푸른도서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유아일반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용자 참고 봉사(이용자교육 등)에 관한 사항 ○ 도서관 개관연장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에 관한 사항 ○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 ○ 도서관의 각종 문화 행사(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독서회 등) 추진 ○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 일반 행정 및 물품 관리 ○ 청사 내외 경비(주차관리 등)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차량등록 사업소장	차량세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세무민원 창구 운영 ○ 차량(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등록관련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사무 ○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자진신고 납부처리 ○ 차량관련 비과세 및 감면

3(읍면동 소관)

읍면동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읍면장	주민생활 업무분야	사무, 보안, 인사, 교육, 예산, 회계, 선거, 통계, 공보, 관광,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 지원·관리, 세외수입, 기부금품의 통제, 복지관련 지역자원발굴·관리·복지 위원 관리, 사례관리 대상발굴, 자활 및 노인일자리 사업장 관리, 기타 다른 업무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옥도면(관공선 관리)
	민 원 업무분야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 체증명발급, 범죄자·파산자 대장정리, 민방위 조직편성 및 운영
	산 업 업무분야	농업, 농사의 개량지식과 기술의 보급, 잠업, 양정, 수산, 농지개량, 수리산림, 수렵, 광업, 상업, 공업, 특히, 전기, 연료, 기상관측, 지역사회 개발과 기타 산업에 관한 사항

3(월)

[별표 3]

사업소의 소장·과장·관장의 직급표(제17조 관련)

사업소명	소장	과장·소장·관장	
		직위	직급
수도사업소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수도과장 하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시설관리사업소	지방서기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철새생태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지방녹지사무원
차량등록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복지지원과장·여성아동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u>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u></p>	<p>제9조(주민복지국) ----- ----- ----- ----- ----- <u>문화예술과장</u>----- ----- <u>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u>----- ----- ----- ----- ----- ----- ----- ----- ----- -----</p>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공 보 담당관	홍보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 시정소식지(열린시정) 발행 ○ 국·도·시정 주요시책 홍보 ○ 전광판 이용 및 사진전시, 광고 등을 활용한 시정 홍보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료 작성 및 제공 ○ 영상물 및 홍보물 제작 홍보 ○ 유선방송을 활용한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정 홍보에 관한 업무 전반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감 사 담당관	심사평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정기 심사분석 ○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 확인 평가 ○ 시정 평가단 운영 ○ 이월사업에 대한 심사 ○ 주요행사의 추진상황 확인 및 평가 ○ 직소민원 처리 ○ 기타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확인에 관한 업무 전반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공 보 담당관	홍보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 시정소식지(열린시정) 발행 ○ 국·도·시정 주요시책 홍보 ○ 전광판 이용 및 사진전시, 광고 등을 활용한 시정 홍보 ○ <삭제> ○ 영상물 및 홍보물 제작 홍보 ○ 유선방송을 활용한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정 홍보에 관한 업무 전반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심사평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정기 심사분석 ○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 확인 평가 ○ 시정 평가단 운영 ○ 이월사업에 대한 심사 ○ 주요행사의 추진상황 확인 및 평가 ○ 직소민원 처리 ○ 기타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확인에 관한 업무 전반 <p style="text-align: right;">○ 목표관리제 업무추진</p>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정보통신 담당관	정보기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관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군산시 정보화 사업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 군산시 정보화 조례 및 위원회 운영 관리 ○ 신규 정보화 사업 정보화위원회 사전 심의 ○ 유비쿼터스 업무 수행 및 정보화 평가분석 ○ 군산시 정보화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사업 ○ 군산시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관리 ○ 금강생태관광종합정보시스템 장비 유지 관리 ○ 군산시 DNS 시스템 운영 관리 ○ 산학연관 공동연계 정보화 사업 추진 ○ 사회단체 보조 사업 추진 ○ 정보화 교육 계획 수립 시행 및 교육장 관리 ○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시행 ○ 행정 업무용 범용 소프트웨어 보급 ○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 및 활용 ○ 타 부서 정보화 사업 지원 및 협의 조정 ○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리 ○ 과 소관 일반보안·정보통신보안 업무 ○ 과 소관 개인정보보호 업무 ○ 예산·회계·감사·급여·수당·물품관리 등 일반사무 ○ 청원 정보 활용 능력 평가 시행 ○ 정보통신 연찬회 ○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정보개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 인사, 재정, 세정, 건축, 재난 시스템 운영관리 ○ 전자문서시스템 사업추진 및 운영 ○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운영 ○ 타부서 운영 정보시스템 서버 운영관리 ○ 행정전자서명 등록 및 인증관리 ○ 정보화사업 협의조정시스템 운영관리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정보통신 담당관	정보기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관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군산시 정보화 사업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 군산시 정보화 조례 및 위원회 운영 관리 ○ 신규 정보화 사업 정보화위원회 사전 심의 ○ 유비쿼터스 업무 수행 및 정보화 평가분석 ○ 군산시 정보화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사업 ○ 군산시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관리 ○ 금강생태관광종합정보시스템 장비 유지 관리 ○ 군산시 DNS 시스템 운영 관리 ○ 산학연관 공동연계 정보화 사업 추진 ○ 사회단체 보조 사업 추진 ○ 정보화 교육 계획 수립 시행 및 교육장 관리 ○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시행 ○ 행정 업무용 범용 소프트웨어 보급 ○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 및 활용 ○ 타 부서 정보화 사업 지원 및 협의 조정 ○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리 ○ <삭제> ○ <삭제> ○ 예산·회계·감사·급여·수당·물품관리 등 일반사무 ○ 청원 정보 활용 능력 평가 시행 ○ 정보통신 연찬회 ○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정보개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 인사, 재정, 세정, 건축, 재난 시스템 운영관리 ○ 전자문서시스템 사업추진 및 운영 ○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운영 ○ 타부서 운영 정보시스템 서버 운영관리 ○ 행정전자서명 등록 및 인증관리 ○ 정보화사업 협의조정시스템 운영관리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정보통신 담당관	<신설>	<신설>
정보통신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망 행정통신시설 운영 관리 ○ 각종 전산통신망(LAN, WAN, 화상) 시설 운영 관리 ○ 정보통신(통신목적 전자계산조직, FAX, 전화) 시설 도입보급 ○ 정보 통신관리 예산 운영 ○ 본청 및 산하 기관 정보통신시설 계획수립 시행 ○ 각종 통신예산 통합 광통신화 추진 및 이동통신망 관리 ○ 각종 통신회선 및 일반전화 사용료 등 공공요금 관리 운영 ○ 통신망 및 그에 따른 S/W등 운영 보급 교육 ○ 통신 보안관리 ○ 민방공 경보 통신 지원 ○ 기타 통신에 관한 지원 및 보급 ○ 정보통신설비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실 및 전산실 관리 운영 ○ 자가통신망 신증설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 ip 텔레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 e-지키미 시스템 운영 관리 	

<신설>

<신설>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정보통신 담당관	정보보안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총괄 ○ 군산시 개인정보 보호업무 총괄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관리 ○ 행정정보유출방지(USB보안)시스템운영 ○ 서버보안 및 DB보안시스템운영 ○ 행정업무용 범용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통신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전화망 통신시설 운영 관리 ○ 각종 전산통신망(LAN, WAN, 화상) 시설 운영 관리 ○ 정보통신(통신목적 전자계산조직, FAX, 전화) 시설 도입보급 ○ 정보 통신관리 예산 운영 ○ 본청 및 산하 기관 정보통신시설 계획수립 시행 ○ 각종 통신예산 통합 광통신화 추진 및 이동통신망 관리 ○ 각종 통신회선 및 일반전화 사용료 등 공공요금 관리 운영 ○ 통신망 및 그에 따른 S/W등 운영 보급 교육 ○ 통신 보안관리 ○ 민방공 경보 통신 지원 ○ 기타 통신에 관한 지원 및 보급 ○ 정보통신설비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실 및 전산실 관리 운영 ○ 자가통신망 신증설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 ip 텔레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 e-지키미 시스템 운영 관리 ○ 의회방송동영상 송출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 민원안내전화교환실 운영관리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총무과장	시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행정 시책의 추진 ○ 읍·면·동 행정 지도감독 및 복무 단속 ○ 시 행정 구역에 관한 사항 ○ 읍·면·동장의 청원서 처리 ○ 주요 시정행사 ○ 읍·면·동 관계회의의 조정 통제 ○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 ○ 행정동향 및 여론행정 관리 ○ 시민의 장 및 모범시민상 표창 ○ 선거 및 국민투표 ○ 각종 위원회 조정 총괄 ○ 평통 및 바르게살기운동 업무 지원 협조 ○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민간단체 관리 ○ 새마을금고 지도 및 육성 ○ 북한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 ○ 과거사정리 업무추진 ○ 시 읍면동간 사무의 조정 ○ 기타 기능전환과 관련된 사무 전반 ○ 반상회 운영 ○ 통 리 반 설치 운영 ○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업무 ○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업무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기획예산과장	기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방침과 시정 목표의 책정 ○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중장기 계획의 수립 조정 ○ 주요업무계획 및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 대통령총리장관지사시장 지시사항 처리 ○ 공약사항(대통령·지사·시장) 관리 ○ 시정 조정위원회 운영 ○ 행정규제개혁 업무 ○ 군산시 상징물 관리 ○ 목표관리제 업무추진 ○ 시민제안제도 운영 ○ 시정계획 및 시정연설 작성 ○ 시책개발 업무추진 ○ 국가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추진 총괄 ○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저탄소녹색성장 총괄업무 ○ 서울사무소 운영 총괄업무 ○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총무과장	시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행정 시책의 추진 ○ 읍·면·동 행정 지도감독 및 복무 단속 ○ 시 행정 구역에 관한 사항 ○ 읍·면·동장의 청원서 처리 ○ 주요 시정행사 ○ 읍·면·동 관계회의의 조정 통제 ○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 ○ 행정동향 및 여론행정 관리 ○ 시민의 장 및 모범시민상 표창 ○ 선거 및 국민투표 ○ 각종 위원회 조정 총괄 ○ 평통 및 바르게살기운동 업무 지원 협조 ○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민간단체 관리 ○ 새마을금고 지도 및 육성 ○ 북한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 ○ 과거사정리 업무추진 ○ 시 읍면동간 사무의 조정 ○ 기타 기능전환과 관련된 사무 전반 ○ 반상회 운영 ○ 통 리 반 설치 운영 ○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업무 ○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업무 ○ 비상사태하의 주민통제, 소산 및 수송계획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기획예산과장	기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방침과 시정 목표의 책정 ○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중장기 계획의 수립 조정 ○ 주요업무계획 및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 대통령총리장관지사시장 지시사항 처리 ○ 공약사항(대통령·지사·시장) 관리 ○ 시정 조정위원회 운영 ○ 행정규제개혁 업무 ○ 군산시 상징물 관리 ○ <삭제> ○ 시민제안제도 운영 ○ 시정계획 및 시정연설 작성 ○ 시책개발 업무추진 ○ 국가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추진 총괄 ○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삭제> ○ 서울사무소 운영 총괄업무 ○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월)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p>		<p>【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p>	
관외소장	업무 분야	관외소장	업무 분야
회계과장	재산관리 업무분야	회계과장	재산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유재산(잡종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 ○ 국(재정경제부소관), 공유재산(잡종재산)의 관리 처분 및 등기 ○ 시유재산(잡종재산)의 사용 허가 ○ 은닉 공유재산(잡종재산)의 조사 및 환수 ○ 국(재정경제부소관), 공유재산(잡종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과징 ○ 재산 수입에 관한 사항(잡종재산) ○ 관공선 관리(잡종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유재산(일반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 ○ 국(기획재정부 소관), 공유재산(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및 등기 ○ 시유재산(일반재산)의 사용 허가 ○ 은닉 공유재산(일반재산)의 조사 및 환수 ○ 국(기획재정부 소관), 공유재산(일반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과징 ○ 재산 수입에 관한 사항(일반재산) ○ <삭제>
관외소장	업무 분야	관외소장	업무 분야
민원봉사과장	산단민원 업무분야	민원봉사과장	산단민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인감증명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120생활민원 이송 ○ 유기민원(복합민원) 이송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인감증명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120생활민원 이송 ○ 유기민원(복합민원) 이송 ○ 법인인감 발급기 운영
관외소장	업무 분야	관외소장	업무 분야
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 업무분야	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체험학습시설 건립 ○ 원어민교사 배치 ○ 교육발전진흥재단 운영 ○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 전북외고 지원 ○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 ○ 학교급식 지원 ○ 생활과학교실 운영 ○ 소외계층 영재발굴 ○ 교육복지 우선투자 ○ 지역인적자원개발 ○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 지역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 초.중.고 학습지원 ○ 교육관련 보조사업 지원 ○ 전북인재육성재단 운영에 관한 지원 ○ 지식기반사회 구현 및 지역교육 균형발전 지원 ○ 교육 기반시설 확충 및 교육입지 선정, 학교교육환경 개선지원 ○ 100주년기념 및 기타 장학업무추진 및 유능한 인재육성, 우수학생 지원 ○ 교육관련협의회 운영·지원 등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제반업무 지원 ○ 기타 사회교육에 관련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체험학습시설 건립 ○ 원어민교사 배치 ○ 교육발전진흥재단 운영 ○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 전북외고 지원 ○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 ○ 학교급식 지원(친환경농산물부식제의) ○ 생활과학교실 운영 ○ 소외계층 영재발굴 ○ 교육복지 우선투자 ○ 지역인적자원개발 ○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 지역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 초.중.고 학습지원 ○ 교육관련 보조사업 지원 ○ 전북인재육성재단 운영에 관한 지원 ○ 지식기반사회 구현 및 지역교육 균형발전 지원 ○ 교육 기반시설 확충 및 교육입지 선정, 학교교육환경 개선지원 ○ 100주년기념 및 기타 장학업무추진 및 유능한 인재육성, 우수학생 지원 ○ 교육관련협의회 운영·지원 등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제반업무 지원 ○ 기타 사회교육에 관련된 사항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지역경제과장	에너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 수급대책 및 조정 ○ 석유류에 대한 업무 전반 ○ 에너지 절약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 ○ 연탄 품질관리 지도 ○ 연탄 수송업자 및 판매소 지도 관리 ○ 고지대 및 도서지역 영세민 연료 업무 ○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 가스업체 안전점검 사후관리 ○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 허가 및 변경 허가 ○ 액화 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업 허가 ○ 도시가스 시설 공사계획 승인 ○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 ○ 도시가스 시설 자금용자 관련 업무 ○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 액화 석유가스 사용 신고 ○ LPG 사용 시설 체적판매제 시행 추진 ○ 가스안전관리 계도 홍보 ○ 기타 가스 안전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 명령 ○ 전기공사업체 면허신청 등에 관한 업무 ○ 도서 전화사업 계획수립 및 도서 발전소 운영 관리 ○ 기타 전기관계 업무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투자지원과장	기업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지원 및 유지관리 ○ 사업소 예산·회계 기획 및 집행 ○ 산업단지관련 민원 처리 ○ 수출동향분석 및 지표관리 작성 ○ 산업단지 홍보 및 안내 ○ 산업단지 기업유치 지원 협조 ○ 기타 공업진흥에 관한 사항 및 연제조 허가 ○ 중소기업 육성시책 종합기획 조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업무 ○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업무 ○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 업무 ○ 상공단체 육성지원 및 지도 감독 ○ 수출동향 분석 및 지표관리 작성 ○ 중소벤처기업 지원업무 ○ 군장산업입주기업협의회 업무지원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지역경제과장	에너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 수급대책 및 조정 ○ 석유류에 대한 업무 전반 ○ 에너지 절약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 ○ 연탄 품질관리 지도 ○ 연탄 수송업자 및 판매소 지도 관리 ○ 고지대 및 도서지역 영세민 연료 업무 ○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 가스업체 안전점검 사후관리 ○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 허가 및 변경 허가 ○ 액화 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업 허가 ○ 도시가스 시설 공사계획 승인 ○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 ○ 도시가스 시설 자금용자 관련 업무 ○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 액화 석유가스 사용 신고 ○ LPG 사용 시설 체적판매제 시행 추진 ○ 가스안전관리 계도 홍보 ○ 기타 가스 안전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 명령 ○ 전기공사업체 면허신청 등에 관한 업무 ○ 도서 전화사업 계획수립 및 도서 발전소 운영 관리 ○ 기타 전기관계 업무 <p style="text-align: right;">○ 광업권 협의 및 관리</p>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투자지원과장	기업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지원 및 유지관리 <p style="text-align: right;"><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관련 민원 처리 ○ 수출동향분석 및 지표관리 작성 ○ 산업단지 홍보 및 안내 ○ 산업단지 기업유치 지원 협조 ○ 기타 공업진흥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육성시책 종합기획 조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업무 ○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업무 ○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 업무 ○ 상공단체 육성지원 및 지도 감독 ○ 수출동향 분석 및 지표관리 작성 ○ 중소벤처기업 지원업무 <p style="text-align: right;"><삭제></p>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농 정 과 장	원예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 및 저장시설 지도와 기술교육 ○ 잠업시책 및 성장성 특용작물 종합 계획 수립 ○ 잠업류에 대한 업무 전반 ○ 특용작물 주산단지 조성 및 재배지도 ○ 원예작물 및 과수 증산계획 수립 추진 ○ 종묘상 관리 ○ 채소 및 양념류 생산계획 수립 추진 ○ 과수원에 주산단지 조성 및 생산지도 ○ 과수원에 종묘업 허가 및 불량 종묘 단속 ○ 화훼산업 육성 및 종묘상 관리 ○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및 농산물 안정성 조사 ○ 농촌 일손 돕기 ○ 원예작물 유통 구조개선 (물류표준화, 저온저장) ○ 농산물 출하 조정 및 규격 출하 지도 ○ 협동출하반 조직 육성관리 ○ 농산물 집하장 시설관리 및 저장시설 지도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해양수산 과 장	수산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수산시책 및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추진 ○ 수산사업 통합 추진 및 평가 ○ 수산사업에 관한 금융 통계 조사 ○ 어업허가 및 신고 ○ 수산단체 업무지도 및 어민후계자 육성관리 ○ 어가 자녀학자금 지원 및 부채 대책 추진 ○ 어민 취업확대 대책 계획수립 추진 ○ 해양수산분야 충무실시계획 수립. 시행 ○ 어업허가관련 과태료 부과 처분 ○ 여객선에 관한 업무 전반 ○ 낚시어선업 신고 및 관리 ○ 한·중·일 어업협정 관련업무 ○ <신설> ○ <신설> ○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농 정 과 장	원예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 잠업시책 및 성장성 특용작물 종합 계획 수립 ○ 잠업류에 대한 업무 전반 ○ 특용작물 주산단지 조성 및 재배지도 ○ 원예작물 및 과수 증산계획 수립 추진 ○ 종묘상 관리 ○ 채소 및 양념류 생산계획 수립 추진 ○ 과수원에 주산단지 조성 및 생산지도 ○ 과수원에 종묘업 허가 및 불량 종묘 단속 ○ 화훼산업 육성 및 종묘상 관리 <삭제> ○ 농촌 일손 돕기 ○ 원예작물 유통 구조개선 (물류표준화, 저온저장) <삭제> <삭제> <삭제>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해양수산 과 장	수산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수산시책 및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추진 ○ 수산사업 통합 추진 및 평가 ○ 수산사업에 관한 금융 통계 조사 <삭제> ○ 수산단체 업무지도 및 어민후계자 육성관리 ○ 어가 자녀학자금 지원 및 부채 대책 추진 ○ 어민 취업확대 대책 계획수립 추진 ○ 해양수산분야 충무실시계획 수립. 시행 ○ 어업허가관련 과태료 부과 처분 ○ 여객선에 관한 업무 전반 ○ 낚시어선업 신고 및 관리 ○ 한·중·일 어업협정 관련업무 ○ 어업신고수리 ○ 어촌체험마을 운영 및 관리 ○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해양수산 과 장	연안환경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등록 및 어선건조(개조) 허가 ○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및 어로시설 사업 ○ 어획물 운반업 허가 ○ 태(폭)풍 피해어선 복구 사업 ○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 해양오염 방지 종합대책 수립 ○ 해양시설 지도 점검 ○ 해양오염 방제장비 및 기기 관리 ○ 오·폐수 해양유입 감시 및 감독 ○ 오염원 무단방류 및 투기행위 단속 ○ 해양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 ○ 해양오염 피해 보상업무 추진 ○ 어선손실보상 및 분쟁 조정 ○ 어선원부 관리 및 발급 ○ 항포구 폐선처리 ○ 어선관리시스템 운영- 조정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 <u><신설></u></p>
	양식산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해 및 내수면 양식어장 개발 ○ 수산자원 조성 사업 ○ 보호(육성, 자원관리)수면 지정 관리 ○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 천해, 내수면 어업권 사후 관리 ○ 내수면 어업계 및 낚시터 운영 ○ 천해 및 내수면 어업면허·허가·신고 ○ 수산증식 사업 추진 ○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 김양식 진흥지도 및 관리 ○ <u>양식장 관리선 지정 및 승인</u> ○ 어장정화사업 및 어장 청소 ○ 어업권 원부 및 어장도 발급 ○ 자율관리어업 육성 ○ 바다목장화사업
	어촌어항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지역 개발 종합계획 기획 조정 ○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 ○ 도서지역 한해 급수 대책(식수) ○ 도서지역 주민 숙원사업 추진 ○ 제2종 및 소규모 어항 유지 관리 ○ 어항 시설 사업 허가·신고수리 ○ 제2종 어항시설사용(점용) 허가·신고 ○ 어항내 폐유저장시설 및 관리 ○ 제2종 및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추진 ○ 어항관련 손실보상 추진, 과태료 부과징수 ○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징수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해양수산 과 장	연안환경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등록 및 어선건조(개조) 허가 ○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및 어로시설 사업 ○ 어획물 운반업 허가 ○ 태(폭)풍 피해어선 복구 사업 ○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 해양오염 방지 종합대책 수립 ○ 해양시설 지도 점검 ○ 해양오염 방제장비 및 기기 관리 ○ 오·폐수 해양유입 감시 및 감독 ○ 오염원 무단방류 및 투기행위 단속 ○ 해양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 ○ 해양오염 피해 보상업무 추진 ○ 어선손실보상 및 분쟁 조정 ○ 어선원부 관리 및 발급 ○ 항포구 폐선처리 ○ 어선관리시스템 운영- 조정 <p style="text-align: center;"><u>○ 어업허가처분</u> <u>○ 양식장 관리선 지정 및 승인</u></p>
	양식산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해 및 내수면 양식어장 개발 ○ 수산자원 조성 사업 ○ 보호(육성, 자원관리)수면 지정 관리 ○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 천해, 내수면 어업권 사후 관리 ○ 내수면 어업계 및 낚시터 운영 ○ 천해 및 내수면 어업면허·허가·신고 ○ 수산증식 사업 추진 ○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 김양식 진흥지도 및 관리 ○ <u><삭제></u> ○ 어장정화사업 및 어장 청소 ○ 어업권 원부 및 어장도 발급 ○ 자율관리어업 육성 ○ 바다목장화사업
	어촌어항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지역 개발 종합계획 기획 조정 ○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 ○ 도서지역 한해 급수 대책(식수) ○ 도서지역 주민 숙원사업 추진 ○ 제2종 및 소규모 어항 유지 관리 ○ 어항 시설 사업 허가·신고수리 ○ 제2종 어항시설사용(점용) 허가·신고 ○ 어항내 폐유저장시설 및 관리 ○ 제2종 및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추진 ○ 어항관련 손실보상 추진, 과태료 부과징수 ○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징수 <p style="text-align: center;"><u>○ 어촌체험 마을조성</u></p>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산림녹지 과 장	녹지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조림 기본계획 수립 ○ 임업단체 지도 감독 ○ 임업 자금 융자 ○ 산림 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통계 ○ 애립 계몽 홍보 ○ 임업기술 개량 보급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 ○ 비밀문서 관리 및 충무계획 수립 ○ 조림사업 및 풀베기 ○ 공유임야 관리 ○ 입목등기 ○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보호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보호 부정 임산물 단속 ○ 산림 병충해 방제 및 대책본부 운영 ○ 산불 예방 및 진화 ○ 임산물 반출 통제 ○ 산림관계법 위반자 법적처리 및 사법 업무 ○ 산지 정화 ○ 보안림 지정·사업허가 및 관리 ○ 육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지도 ○ 임산부산물 증산 ○ 산지이용 구분조사 및 관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관리 ○ 산지전용 허가(신고·협의) 및 사후관리 ○ 산림감시 공익요원 관리 ○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사후관리 ○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관리 ○ 입목벌채 허가(신고) 및 의무조립 등 사후관리 ○ 환경강 생태숲 조성 및 사후관리 ○ 임산물 굴·채취허가 및 종자채취 지도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도심녹화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 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식재관리 ○ 가로변 공한지 화단조성 및 관리 ○ 조경수·관상수 화단조성 및 관리 ○ 꽃(초화류) 생산 및 식재 ○ 수벽조성 및 차례 조정 ○ 꽃길조성 ○ 녹지기금 관리 및 운용 ○ 녹지조경 설계 및 실행 ○ 모호수 관리 ○ 녹지조경 설계 및 실행 ○ 보호수 관리 ○ 도시숲(1마을 1소공원)조성계획수립 및 추진 ○ 시민 헌수 목·금 식재 및 관리 ○ 완충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 ○ 시영 양묘장 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산림녹지 과 장	녹지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조림 기본계획 수립 ○ 임업단체 지도 감독 ○ 임업 자금 융자 ○ 산림 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통계 ○ 애립 계몽 홍보 ○ 임업기술 개량 보급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 ○ 비밀문서 관리 및 충무계획 수립 ○ 조림사업 및 풀베기 ○ 공유임야 관리 ○ 입목등기 ○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 <u>입목벌채 허가(신고) 및 의무조립 등 사후관리</u></p>
	보호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보호 부정 임산물 단속 ○ 산림 병충해 방제 및 대책본부 운영 ○ 산불 예방 및 진화 ○ 임산물 반출 통제 ○ 산림관계법 위반자 법적처리 및 사법 업무 ○ 산지 정화 ○ 보안림 지정·사업허가 및 관리 ○ 육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지도 ○ 임산부산물 증산 ○ 산지이용 구분조사 및 관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관리 ○ 산지전용 허가(신고·협의) 및 사후관리 ○ 산림감시 공익요원 관리 ○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사후관리 ○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도심녹화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 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식재관리 ○ 가로변 공한지 화단조성 및 관리 ○ 조경수·관상수 화단조성 및 관리 ○ 꽃(초화류) 생산 및 식재 ○ 수벽조성 및 차례 조정 ○ 꽃길조성 ○ 녹지기금 관리 및 운용 ○ 녹지조경 설계 및 실행 ○ <삭제> ○ 녹지조경 설계 및 실행 ○ 보호수 관리 ○ 도시숲(1마을 1소공원)조성계획수립 및 추진 ○ 시민 헌수 목·금 식재 및 관리 ○ 완충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 ○ 시영 양묘장 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 <u>아파트·공장·기관등 조정임지 승인</u></p>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산림녹지 과 장	산 림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석허가 및 관련민원 관리 ○ 토사채취 허가·신고·협의 ○ 채석단지 지정 및관리 ○ 채석(토사채취)허가지 복구승인 및 지도 ○ 임도사업(신설보수구조개량)추진 및 관리 ○ 사방사업 및 산사태 위험지 관리 ○ 아파트·공장·기관동 조경입지 승인 ○ 개간 및 초지조성 협의 ○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업무처리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관련업무 처리 ○ 도시지역내 채석(토사채취)협의 ○ 광업권협의 및 관리 ○ 숲길 조성 ○ 등산로 정비 ○ 광공업 생산 통계조사 ○ 광공업 등록 및 관리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산림녹지 과 장	산 림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석허가 및 관련민원 관리 ○ 토사채취 허가·신고·협의 ○ 채석단지 지정 및관리 ○ 채석(토사채취)허가지 복구승인 및 지도 ○ 임도사업(신설보수구조개량)추진 및 관리 ○ 사방사업 및 산사태 위험지 관리 ○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업무처리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관련업무 처리 ○ 도시지역내 채석(토사채취)협의 ○ 광산개발시 산지일시사용 및 토석채취허가 ○ 숲길 조성 ○ 등산로 정비 ○ 광공업 생산 통계조사 ○ 광공업 등록 및 관리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농수산물 유통과장	농 산 물 유통업무 분 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 철새도래지쌀 홍보 및 관측업무 ○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및 사후관리 ○ 농특산물 지적재산권 및 공동상표 관리 ○ 농산물 유통기금 관리 ○ 농특산물 지리적표시제 업무 ○ 농산물 출하지도 및 관측지원 ○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및 유통 지도단속 ○ 농산물 안전성 조사 ○ 농특산물 유통 및 브랜드 사업 ○ 농특산물 영업소 신고, 허가관리 ○ 부정 농특산물 유통단속 ○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 및 저장시설 ○ 농산물 집하장 시설관리 및 저장시설 ○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추진 ○ 영어조합법인 설립등록 ○ 수산물 위판장 설치 및 관리
	수산물 유통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 계획수립 추진 ○ 수산물 특산품, 관광상품 개발, 육성관리 ○ 수산물종합센터 시설 및 운영관리 총괄 ○ 수산물종합센터 사용료 부과 및 징수 ○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확충 ○ 수산물 가공업 신고·등록 및 행정처분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수산물 안정성 조사 및 지정해역 관리 ○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추진 ○ 영어조합법인 설립등록 ○ 수산물 위판장 설치 및 관리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농수산물 유통과장	농 산 물 유통업무 분 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 철새도래지쌀 홍보 및 관측업무 ○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및 사후관리 ○ 농특산물 지적재산권 및 공동상표 관리 ○ 농산물 유통기금 관리 ○ 농특산물 지리적표시제 업무 ○ 농산물 출하지도 및 관측지원 ○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및 유통 지도단속 ○ 농산물 안전성 조사 ○ 농특산물 유통 및 브랜드 사업 ○ 농특산물 영업소 신고, 허가관리 ○ 부정 농특산물 유통단속 ○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 및 저장시설 ○ 농산물 집하장 시설관리 및 저장시설 ○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추진 ○ 영어조합법인 설립등록 ○ 수산물 위판장 설치 및 관리
	수산물 유통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 계획수립 추진 ○ 수산물 특산품, 관광상품 개발, 육성관리 ○ 수산물종합센터 시설 및 운영관리 총괄 ○ 수산물종합센터 사용료 부과 및 징수 ○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확충 ○ 수산물 가공업 신고·등록 및 행정처분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수산물 안정성 조사 및 지정해역 관리 ○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추진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복지지원 과 장	기초생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및 부정수급자관리 ○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 ○ 저소득층장학금지원사업 ○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관리 ○ 의료급여 특별회계 업무 ○ 의료보호 대불금 지원 및 관리업무 ○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 ○ 나운영구입대아파트 신청 및 민원처리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 의료급여 상해의인 조사관리 ○ 장애인 보장구지원 관리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 기타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자활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 추진 ○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 관리 ○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추진 ○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 ○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관리 ○ 위탁자활근로사업 추진 ○ 자활공동체 지원 ○ 자활소득공제사업 지원 ○ 수급자 운전면허취득 지원 ○ 자활기금 융자 및 상환 관리 ○ 생업자금 융자 추천 ○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관리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복지지원 과 장	기초생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일반사무, 예산, 회계, 경리, 재산관리 등 ○ 기초수급자 보장결정 및 통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생계, 주거, 해산장제, 교육)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정수 및 관리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 기초수급자 심의 ○ 의사 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 부당이득금(구상금)부과 및 체납관리 ○ 의료급여 진료비 정산 및 환수 ○ 의료급여 중복이중청구 관리 ○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 의료급여 사후관리(의료급여보상금, 환급금, 항암면역초과자 및 사망 후 관리, 중복투약자 관리)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및 부정수급자관리 ○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 ○ 저소득층장학금지원사업 ○ 의료급여대상자 자격 관리 ○ 의료급여 특별회계 업무 ○ 의료보호 대불금 지원 및 관리업무 ○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 ○ 나운영구입대아파트 신청 및 민원처리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관리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보장구지원 관리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 기타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자활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 추진 ○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 관리 ○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추진 ○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 ○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관리 ○ 위탁자활근로사업 추진 ○ 자활공동체 지원 ○ 자활소득공제사업 지원 ○ 수급자 운전면허취득 지원 ○ 자활기금 융자 및 상환 관리 ○ 생업자금 융자 추천 ○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관리 <삭제> ○ 자활기금 융자 및 상환 관리 ○ 생업자금 융자 추천 ○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관리 ○ 내일키움통장 사업 대상자 관리 ○ 차상위 자활보장결정 및 통지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무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복지지원 과 장	재활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 ○ 장애인등록 및 관리 ○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관 리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관 리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 및운영관 리 ○ 장애인 복지시설 입·퇴소 관리 ○ 장애인 복지관련 법인 설립 ○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 진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 장애연금 지원사업 추진 ○ 장애인 의료비 및 등록진단비 지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사업 ○ 기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 업 ○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 ○ 장애인단체 사무실 개보수 추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추진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경로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복지 업무기획 및 업무전반 ○ 기초노령연금 지원 ○ 노인일자리아업 운영 추진 ○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운영 추진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및 결연사 업 ○ 경로식당 운영 및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 추진 ○ 노인건강진단 사업 ○ 노인회운영 관리지원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 노인대학 신고 및 운영지원 ○ 노인복지기금관리 및 운영 ○ 어버이날 행사 및 경로효친 업무 추 진 ○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추진 ○ 경로복지 관련 법인설립 추진 ○ 가출노인관리 운영 ○ 경로당 운영 지원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추 진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살바타운조성 사업추 진 ○ 노인취업알선 지원 ○ 경로우대시책 추진 ○ <신설> ○ <신설> ○ <신설>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복지지원 과 장	재활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 ○ 장애인등록 및 관리 ○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관 리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관 리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 및운영관 리 ○ 장애인 복지시설 입·퇴소 관리 ○ 장애인 복지관련 법인 설립 ○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 진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 장애연금 지원사업 추진 ○ 장애인 의료비 및 등록진단비 지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사업 ○ <삭제> ○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 ○ 장애인단체 사무실 개보수 추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추진 ○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비 지원 ○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지원 ○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 장애인 고속도로할인카드 교부 및 관 리 ○ 장애인주차표지 교부 및 관리 ○ 장애인 복지카드 교부 및 관리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서비스 지 원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점검 및 관리 ○ 장애연금, 장애수당 보장결정 및 통 지
	경로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복지 업무기획 및 업무전반 ○ 기초노령연금 지원 ○ 노인일자리아업 운영 추진 ○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운영 추진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및 결연사 업 ○ 경로식당 운영 및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 추진 ○ 노인건강진단 사업 ○ 노인회운영 관리지원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 노인대학 신고 및 운영지원 ○ 노인복지기금관리 및 운영 ○ 어버이날 행사 및 경로효친 업무 추 진 ○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추진 ○ 경로복지 관련 법인설립 추진 ○ 가출노인관리 운영 ○ 경로당 운영 지원 ○ <삭제> ○ 독거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 ○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살바타운조성 사업추 진 ○ 노인취업알선 지원 ○ 경로우대시책 추진 ○ 기초노령연금대상자 보장결정 및 통 지 ○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 독거노인우급아저 돌봄비 사업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복지지원 과 장	복지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시설업무 기획 및 업무 총괄 ○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 ○ 노인재가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 ○ 노인복지시설 입·퇴소 운영관리 ○ 경로당 설치신고 ○ 소규모다기능시설 신축 운영지원 ○ 노인조건부시설 관리업무 ○ 경로당 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사업 추진 ○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 노인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 노인복지시설관련 사회복지법인 설립추진 ○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 매·화장 및 묘지에 관한 업무 ○ 공·사설 공원묘지에 관한 사무 ○ 새마을회관, 모정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 <신설></p>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복지지원 과 장	복지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시설업무 기획 및 업무 총괄 ○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 ○ 노인재가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 ○ 노인복지시설 입·퇴소 운영관리 ○ 경로당 설치신고 ○ 소규모다기능시설 신축 운영지원 ○ 노인조건부시설 관리업무 ○ 경로당 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사업 추진 ○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 노인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 노인복지시설관련 사회복지법인 설립추진 ○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 매·화장 및 묘지에 관한 업무 ○ 공·사설 공원묘지에 관한 사무 ○ 새마을회관, 모정관리 ○ <u>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u> ○ <u>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관리</u>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여성아동 복지과장	여성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시설물 유지 관리 ○ 일반 사무, 예산, 회계, 경리, 재산관리 등 ○ 여성 복지 업무 기획 조정 ○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 및 선도 사업 ○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관리 및 지원 보호 ○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취업 및 상담 ○ 모자부자가정 건강진단 사업 및 생활, 기술교육 ○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 ○ 여성권리 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 ○ 여성 정책 개발 종합 기획 ○ 여성 정책 시행개선 및 평가 분석 ○ 여성 사회 활동 대상 발굴 ○ 건전 가정 육성 및 여성관련 각종 행사 ○ 여성단체 지도 육성 ○ 여성 성차별 의식개선정책에 관한 사항 ○ 여성발전기금 관리 ○ 군산시 성희롱 관련 지도 감독 ○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관리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여성아동 복지과장	여성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시설물 유지 관리 ○ 일반 사무, 예산, 회계, 경리, 재산관리 등 ○ 여성 복지 업무 기획 조정 ○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 및 선도 사업 ○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관리 및 지원 보호 ○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취업 및 상담 ○ 모자부자가정 건강진단 사업 및 생활, 기술교육 ○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 ○ 여성권리 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 ○ 여성 정책 개발 종합 기획 ○ 여성 정책 시행개선 및 평가 분석 ○ 여성 사회 활동 대상 발굴 ○ 건전 가정 육성 및 여성관련 각종 행사 ○ 여성단체 지도 육성 ○ 여성 성차별 의식개선정책에 관한 사항 ○ 여성발전기금 관리 ○ 군산시 성희롱 관련 지도 감독 ○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관리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여성아동 복지과장	보육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정책 수립 ○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관리 ○ 보육시설 수급계획 수립 ○ 보육시설 인가 및 변경인가 ○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 ○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 위탁 취소 ○ 보육시설 평가인증 ○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회의 소 집 ○ 보육시설 예산·결산 승인 ○ 보육시설 정기(수시) 지도점검 ○ 보육시설 시정 및 변경 명령 ○ 보육시설의 행정처분(운영정지·폐 쇄) ○ 보육시설의 장 업무정지 ○ 보육교사 자격정지·자격취소 ○ 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 청문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보육시설 행정쟁송 ○ 보육시설 현황 분기보고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 보육료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 <u><신설></u> <u><신설></u></p>
	아동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관련업무 기획 및 운영전반 ○ 아동학대 예방사업 ○ 결식우리아동 급식(방학중, 학기중 공휴 일) ○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지원 및 지도감 독 ○ 실종아동 보호 ○ 요보호아동 복지시설 입소 ○ 입양가정 지원 (일반, 장애아)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관리 및 지원 ○ 요보호아동 결연 ○ 퇴소아동 자립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CDA) 지원 ○ 아동생활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 독 ○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설치 운 영지원 및 지도 감독 ○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아동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여성아동 복지과장	보육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정책 수립 ○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관리 ○ 보육시설 수급계획 수립 ○ 보육시설 인가 및 변경인가 ○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 ○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 위탁 취소 ○ 보육시설 평가인증 ○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회의 소 집 ○ 보육시설 예산·결산 승인 ○ 보육시설 정기(수시) 지도점검 ○ 보육시설 시정 및 변경 명령 ○ 보육시설의 행정처분(운영정지·폐 쇄) ○ 보육시설의 장 업무정지 ○ 보육교사 자격정지·자격취소 ○ 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 청문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보육시설 행정쟁송 ○ 보육시설 현황 분기보고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 보육료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u>○ 양육수당 자격대상 변동관리</u> <u>○ 보육료 자격대상 변동관리</u> <u>○ 유아학비 자격대상 변동관리</u></p>
	아동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관련업무 기획 및 운영전반 ○ 아동학대 예방사업 ○ 결식우리아동 급식(방학중, 학기중 공휴 일) ○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지원 및 지도감 독 ○ 실종아동 보호 ○ 요보호아동 복지시설 입소 ○ 입양가정 지원 (일반, 장애아)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관리 및 지원 ○ 요보호아동 결연 ○ 퇴소아동 자립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CDA) 지원 ○ 아동생활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 독 ○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설치 운 영지원 및 지도 감독 ○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아동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u>○ 아동복지 교사관리</u> <u>(채용, 계약, 급여, 아동등록등 관리)</u></p>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여성아동 복지과장	드림 스타트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스타트 운영 총괄 ○ 드림스타트센터 청사 관리 ○ 통합사례관리 ○ 전문인력 채용 및 관리 ○ 센터지원체계 구성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 ○ 인지/언어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 정서/행동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 건강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 시소와 그네(보육지원통합서비스) 운영지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다문화 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관련 축제 및 행사 지원 ○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개발 ○ 결혼이주여성 방문교육사업 ○ 국내거주 외국인 지원 및 관리 ○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현황 통계 구축 조사 ○ 그밖에 다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 ○ 출산 업무 총괄 및 기획 조정 ○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 출산장려 중·장기 계획수립 운영 ○ 출산장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출산장려 홍보, 대외협력 및 민간활동 지원 ○ 출산장려 T/F팀 구성 및 운영 ○ 출산장려 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 출산 대책관련 시책 개발추진 및 홍보 ○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구성 운영 및 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타과에 속하지 않는 출산 정책에 대한 사항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여성아동 복지과장	드림 스타트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스타트 운영 총괄 ○ 드림스타트센터 청사 관리 ○ 통합사례관리 ○ 전문인력 채용 및 관리 ○ 센터지원체계 구성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 ○ 인지/언어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 정서/행동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 건강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 시소와 그네(보육지원통합서비스) 운영지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 아동복지 교사관리 (배정·노무, 사업 및 DB관리)</p>
	다문화 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관련 축제 및 행사 지원 ○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개발 ○ 결혼이주여성 방문교육사업 ○ 국내거주 외국인 지원 및 관리 ○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현황 통계 구축 조사 ○ 그밖에 다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 ○ 출산 업무 총괄 및 기획 조정 ○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 출산장려 중·장기 계획수립 운영 ○ 출산장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출산장려 홍보, 대외협력 및 민간활동 지원 ○ 출산장려 T/F팀 구성 및 운영 ○ 출산장려 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 출산 대책관련 시책 개발추진 및 홍보 ○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구성 운영 및 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 국내·국제 결혼 중개업소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타과에 속하지 않는 출산 정책에 대한 사항

3(월)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p>		<p>【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p>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관과소장
<신설>	<신설>	<신설>	문화예술 과 장
			문화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 행정 종합 기획 조정 ○ 지방문화의 진흥 ○ 문화재 분야 기획업무 ○ 지방문화단체의 지원 및 문화 행사 지원 ○ 지방문화원 지원 및 지도감독 ○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 ○ 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 문화재 정비보수 및 보수공사 ○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유지 관리 ○ 향교 일요학교 운영 및 지원 ○ 향토 춘추계 석전대제 및 유도회 ○ 향토 유적관리 및 발굴조사 ○ 시사편찬 ○ 군산시 역사자료 ○ 친연기념물 관련업무 ○ 문화복지 증진 시설물 ○ 문화복지 증진 시설물 건립추진 ○ 문화산업 지원 및 육성(신설) ○ 문학관자료의 수집 전시 및 관람업무 ○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 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 ○ 채만식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 기타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채만식문학상 업무 추진 ○ 전통사찰 관리 ○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신설>	예술진흥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예술의 진흥 ○ 지방예술 진흥업무 기획 ○ 지방 예술단체의 지원 ○ 각종 예술행사 지원 ○ 시립예술단 운영 전반 ○ 예술업무 전반 ○ 예술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 ○ 진포예술제 추진 ○ 미술장식품 업무 ○ 예술관람 시설물 건립 추진 ○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사업 ○ 문화예술의 거리(시민예술촌)조성사업 ○ 지역특성화예술 교육지원사업 ○ 각종 예술제 및 사회단체 지원 ○ 미즈카페, 장미갤러리, 장미공연장 운영
	<신설>	<신설>	삶의질 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향상 종합 계획수립 및 총괄운영 ○ 삶의 질 향상 기획·평가 및 시책 발굴 추진 ○ 삶의 질 정책 TF팀 구성 운영 ○ 조례 제정 및 거버넌스 구축 ○ 주민밀착형 소규모 문화시설 확충 ○ 문화복지 주요시책 발굴 ○ 슬로시티 관련 기획·조정·평가 ○ 슬로시티 중장기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 슬로산업 관련 자원화 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슬로시티 연맹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운영지표 개발 ○ 슬로시티 체험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 슬로시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전문가 의견 수립 ○ 주민참여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슬로시티 지정 지역브랜드화 작업 및 인증시험사업 ○ 문화 영상업무 ○ 출판사 및 인쇄소 신고 지도감독 ○ 공연 및 공연장 지도감독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문화예술과 장	근대문화 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산업유산활용 예술창작벨트화 사업 ○ 근대문화중심도시 사업추진 관리 ○ 근대역사 건축물 정비지구사업 ○ 근대문화중심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 ○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 추진 ○ 1930 근대군산 시간여행 국가공모사업 추진 ○ 근대건축물 복원 및 시설활용 계획 수립 ○ 근대건축물 임대 및 시설관리 ○ 근대건축물 관련 홍보 및 지원 ○ 복원 근대건축물 시설관리 및 지원 ○ 장애인체육관 건립 ○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박물관 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 추진 ○ 전시물 구입에 관한 사항 ○ 박물관 전시 기획에 관한 사항 ○ 구)조선은행 운영 ○ 구)일본 제18은행 운영 ○ 기타 박물관 운영에 속하는 사항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체육진흥과 장	체육진흥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수립 발굴 추진 ○ 전국(국제)대회유치 및 체육행사 지원 ○ 군산시민 체육회 지원 및 지도감독 ○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 공공체육시설의 지도감독 ○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공원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 장애인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에 관한사항 ○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기타체육시설등에 관한 사항
	운영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경기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야구장 관리 및 운영 ○ 체육행사 및 경기관리, 경기용품 관리 ○ 입장권 관리 ○ 입장권 검인 관리 ○ 입장료, 사용료등 제반 수입 업무 ○ 체육시설물의 사용 허가 ○ 벚꽃맞이 행사 지원 ○ 월명체육관, 관리 및 운영 ○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내외 주변 청소 ○ 공도장 관리업무 ○ 공원내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일정규모 : 정식인정 대회경기 가능한 표준시설을 갖춘 경기장) ○ 금강수충생말공원 축구장 관리 및 운영
	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 공공 체육시설 비품 및 재산 관리 ○ 체육시설 설비 ○ 각 체육시설물의 유지 관리 보수 ○ 전기 기계설비 분야 보수 ○ 행사 및 경기진행 관리 협조 ○ 부지내 녹화 및 조경관리
	국민체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주요사업입안 및 일반서무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환경위생과 과장	환경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 ○ 환경보존사업 종합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 및 타법 검토(협의)업무 전반 ○ 환경보전 홍보교육 및 행사관련 업무 ○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 자연보호 제반 업무 ○ 천연가스 보급 사업 ○ 생태공원(학습장) 조성업무 추진 ○ 습지보전사업 추진(GEF공동) ○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및 환경행정협의회 지원 ○ 직도사격장 환경영향 조사 ○ 야생 조수보호와 수렵 면허발급 및 단속 ○ 생태탐방로 및 둘레길 조성사업 ○ 푸른군산21 추진협의회 운영 <신설> ○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환경위생과 과장	환경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 행정 종합기획 ○ 환경보존사업 종합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 및 타법 검토(협의)업무 전반 ○ 환경보전 홍보교육 및 행사관련 업무 ○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 자연보호 제반 업무 ○ 천연가스 보급 사업 ○ 생태공원(학습장) 조성업무 추진 ○ 습지보전사업 추진(GEF공동) ○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및 환경행정협의회 지원 ○ 직도사격장 환경영향 조사 ○ 야생 조수보호와 수렵 면허발급 및 단속 ○ 생태탐방로 및 둘레길 조성사업 ○ 푸른군산21 추진협의회 운영 ○ 저탄소녹색성장 총괄업무 ○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자원순환과 과장	청소행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과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 청소대행업체 및 직영미화원 관리 ○ 청소장비 개선 및 보강 ○ 쓰레기 봉투 및 종량제 추진 ○ 대형(다량)폐기물 수집운반비 부과징수 ○ 국토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추진 ○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 ○ 도서지역 및 농촌쓰레기 처리 및 관리 <신설> <신설> ○ 기타 관내 다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재활용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 ○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부과·징수 ○ 1회용품 지도점검 및 포상금 지급 <신설> <신설>
	청소지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과태료부과 ○ 폐기물처리업 지도단속 ○ 폐기물 배출업체 지도단속 ○ 폐기물 처리시설(소각 등) 지도단속 ○ 폐기물 재활용업체 신고 및 지도단속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자원순환과 과장	청소행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과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 청소대행업체 및 직영미화원 관리 ○ 청소장비 개선 및 보강 ○ 쓰레기 봉투 및 종량제 추진 ○ 대형(다량)폐기물 수집운반비 부과징수 ○ 국토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추진 ○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 ○ 도서지역 및 농촌쓰레기 처리 및 관리 ○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과태료부과 ○ 청소관련 각종 홍보업무 ○ 기타 관내 다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재활용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 ○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부과·징수 ○ 1회용품 지도점검 및 포상금 지급 ○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등 관련업무 ○ 폐기물처리미신고(2,000㎡미만)관리
	청소지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 폐기물처리업 지도단속 ○ 폐기물 배출업체 지도단속 ○ 폐기물 처리시설(소각 등) 지도단속 ○ 폐기물 재활용업체 신고 및 지도단속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건설 과장	도로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도로정비 및 보수 유지관리 ○ 건설교통부 소관 국공유재산(도로·구거) 관리처분 및 등기 ○ 건설교통부 소관 국·공유재산(도로·구거) 사용료 및 대부료 과징 ○ 도로·구거부지 허가 및 점용료 과징 ○ 도로·구거부지 용도 폐지 승인 ○ 도로공사 용지매수 지장물 보상 ○ 도로 무단점용 단속 업무 ○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 조정 ○ 도로정비 수로원 관리 ○ 노점상 지도단속 및 관리 ○ 가로 환경정비 ○ 과적차량 단속업무 ○ 접도구역 관리 ○ 철도건널목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도로계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지구의 도로개설 및 확장 ○ 도시계획외의 도로개설 확장 공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 ○ 생활환경 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도로에 관련한 사항
도로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도로의 개설 및 포장 보수 ○ 시의 군도개설 및 확포장공사 시행 감독 ○ 도로 및 교량 공사의 시행 및 감독 ○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시행 및 감독 ○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및 교량 공사의 시행 및 감독 ○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시행 및 감독 ○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건설 과장	도로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도로정비 및 보수 유지관리 ○ 건설교통부 소관 국공유재산(도로·구거) 관리처분 및 등기 ○ 건설교통부 소관 국·공유재산(도로·구거) 사용료 및 대부료 과징 ○ 도로·구거부지 허가 및 점용료 과징 ○ 도로·구거부지 용도 폐지 승인 ○ 도로공사 용지매수 지장물 보상 ○ 도로 무단점용 단속 업무 ○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 조정 ○ 도로정비 수로원 관리 ○ 노점상 지도단속 및 관리 ○ 가로 환경정비 ○ 과적차량 단속업무 ○ 접도구역 관리 ○ 철도건널목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 공공 도로변 절개지 위험해소를 위한 총괄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도로계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지구의 도로개설 및 확장 ○ 도시계획외의 도로개설 확장 공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 ○ 생활환경 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 <p style="text-align: center;">○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p> <p style="text-align: center;">○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교통사고 낮은 곳 개선사업</p> <p style="text-align: center;">○ 도심부 혼잡지역 개선사업</p> <p style="text-align: center;">○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p> <p style="text-align: center;">○ 시의 군도개설 및 확포장공사 시행 감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도로에 관련한 사항
도로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도로의 개설 및 포장 보수 ○ 도로 및 교량 공사의 시행 및 감독 ○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시행 및 감독 ○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및 교량 공사의 시행 및 감독 ○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시행 및 감독 ○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건축 과장	공동주택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 및 입주자모집 승인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구성 및 조합설립인가 ○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 및 신고 ○ 부도 임대주택 관리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 ○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 ○ 공동주택 관리소장 배치신고 및 관리 ○ 공동주택관리업자 관리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 및 관리 ○ 공동주택행위 허가 및 신고 관련업무 ○ 국민주택 조합 설립인가 및 신고 처리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건축 과장	공동주택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 및 입주자모집 승인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구성 및 조합설립인가 ○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 및 신고 ○ 부도 임대주택 관리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 ○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 ○ 공동주택 관리소장 배치신고 및 관리 ○ 공동주택관리업자 관리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 및 관리 ○ 공동주택행위 허가 및 신고 관련업무 ○ 국민주택 조합 설립인가 및 신고 처리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 <p style="text-align: center;">○ 주택법 대상 건축물 건축심의회 사전검토</p>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재난 관리과장	민방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파분야 예산 총괄, 계획 수립 ○ 민방위 계획의 수립 ○ 민방위협의회 운영 및 각급기관 협조 ○ 민방위 상황실 운영 ○ 전시 근로 동원에 관한 사항 ○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수립 조정 및 확인 ○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인력 물자 시설 동원 ○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통계자료 수집 보완 ○ 비상사태하의 주민통제, 소산 및 수송 계획 ○ 민방위 주요 시설의 보호관리 및 장비의 유지 관리 ○ 피해 시설물의 긴급 복구 ○ 주민 신고망 관리 ○ 민방공 계획 및 훈련 실시 ○ 등화·음향관계, 비상방송 제도 운영 ○ 민방위 대원 및 주민의 교육 훈련 ○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서 지정 및 복무관리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 군부대 업무협의 관련 ○ 국가비상대비 각종 교육·훈련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재난 관리과장	민방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파분야 예산 총괄, 계획 수립 ○ 민방위 계획의 수립 ○ 민방위협의회 운영 및 각급기관 협조 ○ 민방위 상황실 운영 ○ 전시 근로 동원에 관한 사항 ○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수립 조정 및 확인 ○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인력 물자 시설 동원 ○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통계자료 수집 보완 ○ <삭제> ○ 민방위 주요 시설의 보호관리 및 장비의 유지 관리 ○ 피해 시설물의 긴급 복구 ○ 주민 신고망 관리 ○ 민방공 계획 및 훈련 실시 ○ 등화·음향관계, 비상방송 제도 운영 ○ 민방위 대원 및 주민의 교육 훈련 ○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서 지정 및 복무관리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 군부대 업무협의 관련 ○ 국가비상대비 각종 교육·훈련 ○ 보충·지자체비군 및 지자체미방위대 우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재난관리과장	재난안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 재난예방 계획수립 ○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 통제단간 협조 지원 체계 구축 ○ 국가기반보호관련 업무 및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 기획·시기별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안전점검에 관한사항 ○ 내수면 유선·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 총괄관리 및 안전점검 지도 ○ 생활안전 취약시설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복구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복구사업 총괄 관리 ○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 재해시설물 보수 및 복구, 대책 수립, 정산 ○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 ○ 하천 점·사용허가 ○ 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 ○ 하천공사 시공 및 감독 ○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 법정 하천 시설물 관리 및 유지관리 ○ 폐천부지 관련업무 ○ 하천 편입토지 관련업무 ○ 재해사전대비 및 피해조사보고 및 이재민 구호 지원 ○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 ○ 자연재난 응급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 ○ 해수범람 대비 및 수방자재 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재난관리과장	재난안전 업무분야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 통제단간 협조 지원 체계 구축 ○ 국가기반보호관련 업무 및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 기획·시기별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안전점검에 관한사항 ○ 내수면 유선·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 총괄관리 및 안전점검 지도 ○ 생활안전 취약시설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u>재난상황종합관리 및 보고체계 구축</u> ○ <u>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u> ○ <u>재난징후정보수집관리 및 재해위험 수목 정비 사업추진</u> ○ <u>안전관리 계획</u>
	복구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복구사업 총괄 관리 ○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 재해시설물 보수 및 복구, 대책 수립, 정산 ○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 ○ 하천 점·사용허가 ○ 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 ○ 하천공사 시공 및 감독 ○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 법정 하천 시설물 관리 및 유지관리 ○ 폐천부지 관련업무 ○ 하천 편입토지 관련업무 ○ <u>재해사전대비 및 피해보고</u> ○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 ○ 자연재난 응급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 ○ 해수범람 대비 및 수방자재 관리 ○ <u>지방하천 정비사업 시공 및 감독</u> ○ <u>국가하천 유지관리 업무</u> ○ <u>소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토지 등 보상업무</u> ○ <u>4대강 친수공간 유지관리</u>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재난관리과장	방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 대책 수립 ○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 풍수해 보험제도 ○ 지진 및 지진해일 종합대책 ○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 ○ 자연재해 대비 긴급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E-30 대피계획 ○ 방재(재해)예방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방재시설물 관리 ○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 도로변 절개지 위험해소를 위한 총괄계획 수립 ○ 안전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상황 전산입력 ○ 방재계획수립 및 교육홍보 ○ 방재의 날 행사 추진 ○ 자연재난 예·경보 발령 ○ 국가안전망 관리 ○ 문서처리, 기상특보사항 처리 ○ 강우량기 관리 ○ 수위관측소 관리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재난관리과장	방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 대책 수립 ○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 풍수해 보험제도 ○ 지진 및 지진해일 종합대책 ○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 ○ 자연재해 대비 긴급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E-30 대피계획 ○ 방재(재해)예방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방재시설물 관리 ○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li style="text-align: right;"><삭제> <li style="text-align: right;"><삭제> ○ 피해상황 전산입력 ○ 방재계획수립 및 교육홍보 ○ 방재의 날 행사 추진 ○ 자연재난 예·경보 발령 ○ 국가안전망 관리 ○ 문서처리, 기상특보사항 처리 ○ 강우량기 관리 ○ 수위관측소 관리

[보건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보건사업과장	보건행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과 및 보건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문서 및 공인 관리 ○ 보건소 예산운영 및 일상경비 등 제경비 집행 관리 ○ 직원 당직근무 명령 및 보건소 내외 복무 단속 ○ 보건지소 관리 ○ 공중 보건조사 복무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비품 및 소모품 관리 ○ 보건소 차량 관리 ○ 의료장비(기자재 포함)와 방역장비의 구입과 관리 ○ 약품 구입과 배정에 관한 사항 ○ 보건소 및 지소·진료소 시설물 관리 (신축 개·보수)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 건강진단등 신고 처리 ○ 보건소 전산 운영·관리 ○ 무의도서 순회 진료 ○ 기타 보건소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건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보건사업과장	보건행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과 및 보건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문서 및 공인 관리 ○ 보건소 예산운영 및 일상경비 등 제경비 집행 관리 ○ 직원 당직근무 명령 및 보건소 내외 복무 단속 ○ 보건지소 관리 ○ 공중 보건조사 복무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비품 및 소모품 관리 ○ 보건소 차량 관리 ○ 의료장비(기자재 포함)와 방역장비의 구입과 관리 ○ 약품 구입과 배정에 관한 사항 ○ 보건소 및 지소·진료소 시설물 관리 (신축 개·보수)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 보건진료소관리 ○ 보건소 전산 운영·관리 ○ 기타 보건소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보건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보건사업 과 장	의약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에 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 ○ 약사법에 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 ○ 무허가 및 부정 의약품자 단속 ○ 의무관련 지도에 관한 업무 ○ 약물관련 지도에 관한 업무 ○ 유사의원업소 지도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법률에 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항 ○ 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 의료기기법에 의한 신고 및 지도관리 ○ 헌혈 권장사업
	전염병 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 관리대책 및 소관업무 운영 계획 ○ 법정 전염병 환자 관리 및 역학조사 ○ 전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 방역 소독 및 약품 관리 ○ 음용수 소독 관리 ○ 수인성전염병에 관한 사항 ○ 기생충 관리 업무 ○ 성병, 한센병, 에이즈, 결핵, B형 수직 감염등 예방·관리 ○ 신종 및 해외유입 전염병 예방·관리 ○ 소독업 신고 및 법정의무소독업소 관리 ○ 전염병 감시체계 운영·관리 ○ 생물테러 관리
	건강도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도시 계획 수립 및 추진 ○ 건강도시 프로젝트 개발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관련 사항 ○ 통합평가등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 건강도시 대내·외 협력 업무 ○ 보건소 홍보자료 개발 및 홍보관련 사항 ○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관리 ○ 보건사업 교육관련 사항 ○ 계 서무 및 기타 업무등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보건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보건사업 과 장	의약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에 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 ○ 약사법에 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 ○ 무허가 및 부정 의약품자 단속 ○ 의무관련 지도에 관한 업무 ○ 약물관련 지도에 관한 업무 ○ 유사의원업소 지도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법률에 의한 허가·등록·신고등 관리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항 ○ 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 의료기기법에 의한 신고 및 지도관리 ○ 헌혈 권장사업 ○ 건강진단 등 신고처리
	감염병 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관리대책 및 소관업무 운영 계획 ○ 법정 감염병 환자 관리 및 역학조사 ○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 방역 소독 및 약품 관리 ○ 음용수 소독 관리 ○ 수인성감염병에 관한 사항 ○ 기생충 관리 업무 ○ 성병, 한센병, 에이즈, 결핵, B형 수직 감염등 예방·관리 ○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관리 ○ 소독업 신고 및 법정의무소독업소 관리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관리 ○ 생물테러 관리
	진료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진료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등 제증명 발급 및 수수료 징수 ○ 진료비 징수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등 청구 ○ 의료지원 업무 ○ 임상병리 검사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 ○ 방사선 검사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 ○ 물리치료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 ○ 법정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 음용수 수질검사 업무 ○ 한방진료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심장병, 안면기형, 실명예방 관련사항 ○ 아토피 예방 사업 ○ 모바일 클리닉 운영 ○ 무의도서순회진료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보건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보건사업 과 장	보건지소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 보건교육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증진, 방역, 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 ○ 보건통계의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 일반·치과·한방 진료에 관한 사항 ○ 기타 보건사업관계 및 시장이 위임하는 사항 ○ 방문 보건사업 전반
	통합보건 지 소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보건지소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국민건강 증진, 방역, 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 ○ 일반·치과·한방 진료에 관한 사항 ○ 방문 보건사업 전반 ○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 보건교육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건강관리 과 장	건강증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사무 및 건강증진사업 업무 전 반 ○ 비만관리사업 ○ 금연사업 및 흡연예방 사업 ○ 절주사업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 업 ○ 구강보건실 운영 및 구강보건사업 전 개 ○ 건강증진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운동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사 항 ○ 건강증진사업 교육·홍보 ○ 보건진료소 관리 ○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 노인체조 보급사업 ○ 한방보건사업계획 수립·시행사항
	방문보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보건사업 전반 ○ 정신보건사업 전반 ○ 간질환자 관리 ○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 ○ 경로당 순회 한방진료 ○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사업 ○ 치매 관리사업 ○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보건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보건사업 과 장	통합보건 지 소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보건지소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국민건강 증진, 방역,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 일반·치과·한방 진료에 관한 사항 ○ 방문 보건사업 전반 ○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 보건교육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지소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 보건교육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증진, 방역, 감염병 예방 관리 사 업 ○ 보건통계의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 일반·치과·한방 진료에 관한 사항 ○ 기타 보건사업관계 및 시장이 위임하는 사 항 ○ 방문 보건사업 전반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건강관리 과 장	건강도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교육홍보 등 에 관한사항 ○ 건강도시 계획 수립 및 추진 ○ 건강도시 프로젝트 개발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관련 사항 ○ 통합평가등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 건강도시 대내외 협력 업무 ○ 보건소 홍보자료 개발 및 홍보관련 사 항 ○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관리 ○ 국민영양조사 ○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 과 사무 및 기타 업무등
	건강생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사업 ○ 비만관리사업 ○ 금연사업 및 흡연예방 사업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 업 ○ 구강보건실 운영 및 구강보건사업 전 개 ○ 건강증진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운동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사 항 ○ 건강증진사업 교육·홍보 ○ 노인체조 보급사업 ○ 한방보건사업계획 수립·시행사항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보건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건강관리 과 장	진 료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진료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등 제증명 발급 및 수수료 징수 ○ 진료비 징수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등 청구 ○ 의료지원 업무 ○ 임상병리 검사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 ○ 방사선 검사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 ○ 물리치료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 ○ 법정 전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 음용수 수질검사 업무 ○ 한방진료 및 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심장병, 안면기형, 실명예방 관련사항 ○ 아토피 예방 사업 ○ 모바일 클리닉 운영
	모자보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 ○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 모자보건사업 지도 및 평가 운영 ○ 미숙아선천성대사 이상아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예방접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불임부부 지원사업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 ○ 산후조리업 신고에 관한 사항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국가 건강검진 및 도민 건강검진 사업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
	대야 보건진료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야분소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진료비 수납 관리 ○ 대야분소 비품 및 의료장비 관리 ○ 일반·치과·한방 진료 및 처방전 발급 ○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대야분소 전반에 관한 사항 ○ 방문보건, 전염병, 모자보건,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사항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보건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건강관리 과 장	방문보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보건사업 전반 ○ 간질환자 관리 ○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 ○ 경로당 순회 한방진료
	모자보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 ○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 모자보건사업 지도 및 평가 운영 ○ 미숙아선천성대사 이상아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예방접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불임부부 지원사업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 ○ 산후조리업 신고에 관한 사항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국가 건강검진 및 도민 건강검진 사업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
	정신건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관리사업 ○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 사회복지시설 운영 ○ 치매예방관리사업 ○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사업 ○ 절주사업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기술보급과 과장	소득작목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원예작물 실증시험포장 운영</u> ○ <u>원예분야</u>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 ○ 시설원예 재배 기술지도 ○ 시설작목 에너지절감 및 경영비절감 실증 기술지도 ○ 과수, 화훼 재배기술 지도 ○ 약용작물,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 <u>소득작목 농가실증 시험재배 추진</u> ○ <u>원예작물 친환경농업 실증시험 및 지도</u> ○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기술지도
	연구개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기술 실증 시범 ○ <u>농업인기술개발사업</u> ○ <u>소득작목 지역적용 실증시험</u> ○ <u>조직배양실 운영 및 우량묘 생산보급</u> ○ <u>기타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사항</u> ○ <u>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및 복합생균제 배양 제조보급</u> ○ <u>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u> ○ <u>축산시범사업 및 친환경 축산시설 운영</u> ○ <u>농산부산물 등 부존자원 사료화 제조·이용 지도</u> ○ <u>환경친화적 유용미생물 배양 제조보급</u> ○ <u>친환경녹색농업 수질연구 업무 추진</u>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예술의전당 관리과장	시설운영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신설> <신설> ○ 과내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예산, 회계, 계약, 경리, 용도와 재산관리 ○ 지출, 급여, 세입세출외 현금, 세외수입, 물품관리, 공공요금, 공공성경비, 일용인부 관리 ○ 주차장 운영,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의 전기, 소방, 에너지에 관한 사항 ○ 냉방, 난방, 급수, 기계 시설관리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기술보급과 과장	소득작목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 원예<u>축산</u>분야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 ○ 시설원예 재배 기술지도 ○ 시설작목 에너지절감 및 경영비절감 실증 기술지도 ○ 과수, 화훼 재배기술 지도 ○ 약용작물,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삭제> ○ <u>원예작물 친환경농업 지도</u> ○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기술지도 ○ <u>기타 소득작목에 관한 사항</u>
	연구개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새기술 실증 시험</u> ○ <u>농업인 현장에로기술 시험연구</u> ○ <u>농업인기술개발사업</u> ○ <u>실증시험포 운영 및 시험연구</u> ○ <u>환경친화적 유용미생물 배양 제조, 보급</u> ○ <u>친환경 복합 생균제 배양 제조, 보급</u> ○ <u>조직배양실 운영</u> ○ <u>부산물 이용 축산사료화 기술 보급</u> ○ <u>기타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사항</u>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예술의전당 관리과장	시설운영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u> ○ <u>사업소내 복무단속 및 보안관리</u> ○ <u>시설 내 청원경찰 복무관리</u> ○ 과내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예산, 회계, 계약, 경리, 용도와 재산관리 ○ 지출, 급여, 세입세출외 현금, 세외수입, 물품관리, 공공요금, 공공성경비, 일용인부 관리 ○ 주차장 운영,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의 전기, 소방, 에너지에 관한 사항 ○ 냉방, 난방, 급수, 기계 시설관리 ○ 건축, 토목, 조경 등 관리 ○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복무지도 총괄

3(월)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설관리사업소 소관]</p>		<p>【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설관리사업소 소관]</p>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관과소장
체육시설 관리과장	운 영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사업소내 복무단속 및 보안관리 ○ 문서수발 및 직인 관리 ○ 예산 및 회계, 경리, 용도와 재산관리 ○ 시설내 청원경찰 복무관리 ○ 주경기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야구장 관리 및 운영 ○ 체육행사 및 경기관리, 경기용품 관리 ○ 입장권 관리 ○ 입장권 검인 관리 ○ 입장료, 사용료등 제반 수입 업무 ○ 체육시설물의 사용 허가 ○ 벚꽃맞이 행사 지원 ○ 월명체육관, 관리 및 운영 ○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내외 주변 청소 ○ 궁도장 관리업무 ○ 공원내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일정규모 : 정식인정 대회경기 가능한 표준시설을 갖춘 경기장) ○ 기타 소내 타과 및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제>
	시 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 공공 체육시설 비품 및 재산 관리 ○ 체육시설 설비 ○ 각 체육시설물의 유지 관리 보수 ○ 전기 기계설비 분야 보수 ○ 행사 및 경기진행 관리 협조 ○ 부지내 녹화 및 조경관리 	<삭제>
	국민체육 센터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주요사업입안 및 일반사무 ○ 이용객 보건 및 안전관리 ○ 수영장 운영 및 관리 	<삭제>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시 립 도서관 관리과장	관 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회계 업무 ○ 일반 행정 및 물품 관리 ○ 고압전기 안전관리 및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 냉난방등 기계 소방안전 관리 ○ 건축물(7개소) 유지보수 및 관리 ○ 직원 상벌 및 복무등 과내 인사관리 ○ 보안관리 및 당직관리 ○ 식당, 매점, 휴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기록물 및 공인 관리 ○ 자유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청사 내외곽 경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대회의실, 세미나실, 교양문화실 등 시설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 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건립 종합계획 수립 ○ 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자료운영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자료실 및 유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문학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주제전문자료실 및 신문보존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기간행물 및 노인장애우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운영 관리 관한 사항 ○ 도서관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정보화 및 이용자 정보 격차 해소 교육 ○ 디지털자료실 및 컴퓨터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용자 참고 봉사(독서상담 등)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에 관한 사항 ○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
	분관운영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학교도서관 협력에 관한 사항 ○ 문고 등록 및 운영 지원 관련 사항 ○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임피채만식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월명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미성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구암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미성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흥남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시 립 도서관 관리과장	관 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신규 조성 및 건립(작은도서관 포함) ○ 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 ○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업무 ○ 보안관리 및 당직관리 ○ 시설 대관 및 사용료 징수 관리 ○ 열람실 관리 및 시스템 운영 ○ 전기시설물 관리 ○ 냉·난방, 소방, 도시가스 관리 ○ 물품 및 기록물관리 ○ 구내식당 관리 ○ 청사 내외 경비(주차관리 등) ○ 소관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 문서 수발 및 직인관리 ○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자료운영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일반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기간행물 및 보존서고 운영에 관한 사항 ○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서관리 시스템 등 운영 및 유지관리 ○ 도서관 개관연장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운영 관리 관한 사항 ○ 도서관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자 참고 봉사(이용자교육 등)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에 관한 사항 ○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
	분관운영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학교도서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 지원 관련 사항 ○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임피채만식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월명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미성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구암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미룡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흥남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li style="text-align: center;"><삭제> ○ 나포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조촌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나운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늘푸른 사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유아·일반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차량등록 사업소장	<신설>	<신설>

[읍면동 소관]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읍면장	주민생활 업무분야	사무, 보안, 인사, 교육, 예산, 회계, 선거, 통계, 공보, 관광,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 지원·관리, 세외수입, 기부금품의 통제, 복지관련 지역자원발굴·관리·복지 위원 관리, 사례관리 대상발굴, 자활 및 노인일자리 사업장 관리, 기타 다른 업무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민 원 업무분야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발급, 범죄자·파산자 대장정리, 민방위 조직편성 및 운영
	산 업 업무분야	농업, 농사의 개량지식과 기술의 보급, 잠업, 양정, 수산, 농지개량, 수리산림, 수렵, 광업, 상업, 공업, 특히, 전기, 연료, 기상관측, 지역사회 개발과 기타 산업에 관한 사항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차량등록 사업소장	차량세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차량 세무민원 창구 운영 o 차량(자동차,건설기계,이륜자동차) 등록관련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사 무 o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자진신고 납부처 리 o 차량관련 비과세 및 감면

[읍면동 소관]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읍면장	주민생활 업무분야	사무, 보안, 인사, 교육, 예산, 회계, 선거, 통계, 공보, 관광,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 지원·관리, 세외수입, 기부금품의 통제, 복지관련 지역자원발굴·관리·복지 위원 관리, 사례관리 대상발굴, 자활 및 노인일자리 사업장 관리, 기타 다른 업무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육도면(관광선 관리)
	민 원 업무분야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발급, 범죄자·파산자 대장정리, 민방위 조직편성 및 운영
	산 업 업무분야	농업, 농사의 개량지식과 기술의 보급, 잠업, 양정, 수산, 농지개량, 수리산림, 수렵, 광업, 상업, 공업, 특히, 전기, 연료, 기상관측, 지역사회 개발과 기타 산업에 관한 사항

3(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사업소의 소장·과장·관장의 직급표
(제17조 관련)

사업소명	소 장	과 장 · 소 장 · 관 장	
		직 위	직 급
수도 사업소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 서기관	수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시설 관리 사업소	지방서기관	예술의 전당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체육시설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시립도서관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철새 생태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지방녹지사무원

【별표 3】

사업소의 소장·과장·관장의 직급표
(제17조 관련)

사업소명	소 장	과 장 · 소 장 · 관 장	
		직 위	직 급
수도 사업소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 서기관	수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시설 관리 사업소	지방서기관	예술의전당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시립도서관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철새 생태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지방녹지사무원

참 고 자 료

□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 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 (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3-1072호

공 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3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증원된 정원(13명) 반영
- 2014년 사회복지 확충(정부시책)에 따른 정원(4명) 반영

2. 주요내용

- '13년 총액인건비 산정 및 '14년 사회복지확충시책에 따른 정원 증원

▶ 정원의 총수 변경 : 1,358명 ⇒ 1,375명 (+17명)

[17명 : 6급(3), 8급(1), 9급(12), 지도직(1)]

⇒ 집행기관 정원변경 : 1,333명 → 1,350명 (+17명)

(의회사무국 정원 : 25명)

- 일반직 정원 변경 : 1,124명 → 1,143명 (+19명:16순증분+3일반직전환)
- 지도직 정원 변경 : 32명 → 33명 (+1명)
- 기능직 정원 변경 : 182명 → 179명 (-3명)

※ 일반직 전환시험에 따른 정원조정

기능직(3명 감 : 7급 1명, 8급 2명), 행정직(3명 증: 7급 1명, 8급 2명)

3.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정원조정 : 1,358명 ⇒ 1,375명 (17명 증가)
 -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정원증원 소요경비 : 62,297천원 × 13명 = 809,861천원
 - 정원증원 소요경비 : 30,000천원 × 4명(사회복지) = 120,000천원(국비)
- ※ 인건비 기준 : 행정안전부 2013년 공무원 1인당 총액인건비 기준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6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 063-450-4233, FAX:450-638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 063-454-225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월)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358명”을 “1,375명”으로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333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 1,350명”으로 한다.

[별표3]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1,375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143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1,061	-				
별정직 계	15	-				
6급 상당 이하 계	15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33	-				
지도관	3			3		
지도사	30			30		
기능직계	179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u>1,358명</u>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333명</u></p> <p>2. (생략)</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청</th> <th>의회 사무국</th> <th>직속 기관</th> <th>사업 소</th> <th>읍면 동</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u>1,358</u></td> <td colspan="5">-</td> </tr> <tr> <td>정무직계</td> <td>1</td> <td colspan="5">-</td> </tr> <tr> <td>시 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1,124</u></td> <td colspan="5">-</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8</td> <td>4</td> <td>1</td> <td>1</td> <td>2</td> <td></td> </tr> <tr> <td>5급</td> <td>73</td> <td>33</td> <td>3</td> <td>3</td> <td>7</td> <td>27</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u>1,042</u></td> <td colspan="5">-</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5</td> <td colspan="5">-</td> </tr> <tr> <td>6급 상당 이하 계</td> <td>15</td> <td colspan="5">-</td> </tr> <tr> <td>연구직 계</td> <td>4</td> <td colspan="5">-</td> </tr> <tr> <td>연구사</td> <td>4</td> <td></td> <td></td> <td>3</td> <td>1</td> <td></td> </tr> <tr> <td>지도직 계</td> <td><u>32</u></td> <td colspan="5">-</td> </tr> <tr> <td>지도관</td> <td>3</td> <td></td> <td></td> <td>3</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u>29</u></td> <td></td> <td></td> <td><u>29</u></td> <td></td> <td></td> </tr> <tr> <td>기능직계</td> <td><u>182</u></td> <td colspan="5">-</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동	총계	<u>1,358</u>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u>1,124</u>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u>1,042</u>	-					별정직 계	15	-					6급 상당 이하 계	15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u>32</u>	-					지도관	3			3			지도사	<u>29</u>			<u>29</u>			기능직계	<u>182</u>	-					<p>제2조(정원의 총수) ----- <u>1,375명</u> -----</p> <p>1. ----- <u>1,350명</u></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청</th> <th>의회 사무국</th> <th>직속 기관</th> <th>사업 소</th> <th>읍면 동</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u>1,375</u></td> <td colspan="5">-</td> </tr> <tr> <td>정무직계</td> <td>1</td> <td colspan="5">-</td> </tr> <tr> <td>시 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1,143</u></td> <td colspan="5">-</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8</td> <td>4</td> <td>1</td> <td>1</td> <td>2</td> <td></td> </tr> <tr> <td>5급</td> <td>73</td> <td>33</td> <td>3</td> <td>3</td> <td>7</td> <td>27</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u>1,061</u></td> <td colspan="5">-</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5</td> <td colspan="5">-</td> </tr> <tr> <td>6급 상당 이하 계</td> <td>15</td> <td colspan="5">-</td> </tr> <tr> <td>연구직 계</td> <td>4</td> <td colspan="5">-</td> </tr> <tr> <td>연구사</td> <td>4</td> <td></td> <td></td> <td>3</td> <td>1</td> <td></td> </tr> <tr> <td>지도직 계</td> <td><u>33</u></td> <td colspan="5">-</td> </tr> <tr> <td>지도관</td> <td>3</td> <td></td> <td></td> <td>3</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u>30</u></td> <td></td> <td></td> <td><u>30</u></td> <td></td> <td></td> </tr> <tr> <td>기능직계</td> <td><u>179</u></td> <td colspan="5">-</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동	총계	<u>1,375</u>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u>1,143</u>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u>1,061</u>	-					별정직 계	15	-					6급 상당 이하 계	15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u>33</u>	-					지도관	3			3			지도사	<u>30</u>			<u>30</u>			기능직계	<u>179</u>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동																																																																																																																																																																																																																																									
총계	<u>1,358</u>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u>1,124</u>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u>1,042</u>	-																																																																																																																																																																																																																																													
별정직 계	15	-																																																																																																																																																																																																																																													
6급 상당 이하 계	15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u>32</u>	-																																																																																																																																																																																																																																													
지도관	3			3																																																																																																																																																																																																																																											
지도사	<u>29</u>			<u>29</u>																																																																																																																																																																																																																																											
기능직계	<u>182</u>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동																																																																																																																																																																																																																																									
총계	<u>1,375</u>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u>1,143</u>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u>1,061</u>	-																																																																																																																																																																																																																																													
별정직 계	15	-																																																																																																																																																																																																																																													
6급 상당 이하 계	15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u>33</u>	-																																																																																																																																																																																																																																													
지도관	3			3																																																																																																																																																																																																																																											
지도사	<u>30</u>			<u>30</u>																																																																																																																																																																																																																																											
기능직계	<u>179</u>	-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증원된 정원(13명) 반영
- 2014년 사회복지 확충(정부시책)에 따른 정원(4명) 반영
- 군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 3]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정원의 총수 변경 : 1,358명 ⇒ 1,375명 (+17명)

나. 비용추계 결과

-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929,861천원 정도
 - 소요경비(총액인건비반영분) : 62,297천원 × 13명 = 809,861천원
 - 소요경비(사회복지반영분) : 30,000천원 × 4명(사회복지) = 120,000천원(국비)

다. 채용조달방안

- 자체수입 및 보건복지부주관, 국고보조사업(보조금)

3.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이장식
연락처	(063) 454 - 225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120,000	120,000	120,000			360,000	
국고보조	120,000	120,000	120,000			360,000	
세 출	809,861	809,861	809,861	929,861	929,861	4,289,305	
인 건 비	809,861	809,861	809,861	929,861	929,861	4,289,305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809,861	809,861	809,861	929,861	929,861	4,289,305
	지방세	809,861	809,861	809,861	929,861	929,861	4,289,305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120,000	120,000	120,000			360,000
	보조금	120,000	120,000	120,000			36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군산시 공고 제2013-1073호

공 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3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증원된 정원(13명) 반영
- 2014년 사회복지 확충(정부시책)에 따른 정원(4명) 반영

2. 주요내용

- '13년 총액인건비 산정 및 '14년 사회복지확충시책에 따른 정원 증원

▶ 정원의 총수 변경 : 1,358명 ⇒ 1,375명 (+17명)

[17명 : 6급(3), 8급(1), 9급(12), 지도직(1)]

- 일반직 정원 변경 : 1,124명 → 1,143명(+19)

[총액인건비 산정분(+16) + 기능직 일반직전환(+3)]

- 지도직 정원 변경 : 32명 → 33명 (+1명)
- 기능직 정원 변경 : 182명 → 179명 (-3명)

- 정원반영 내역(+17명)

▶ 6급(3명) : 행정·세무/전산·통신/사서·행정 - 지도직 : 1명

▶ 8급(1명) : 행정, 9급(12명) : 사회4, 행정4,환경1, 농업1, 시설1,사서1

○ 직렬조정

- ▶ 사회복지 직렬 확대 : (옥구읍외 13개 읍면동)

행정(단수) ⇒ 행정·사회복지(복수)

- ▶ 총무과 노조계장(6급) : 지방행정주사

⇒ 지방행정주사 ·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 ▶ 해양수산물·옥도면(기능6급) : 선박항해

⇒ 선박항해 · 선박기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6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 063-450-4233, FAX:450-638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 063-454-225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월)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합	본	의	보	농	사				
		계	청	회	건	업	업	읍	면	동	
		무	국	사	소	기	소				
		직	국	무	소	술	소				
		계	국	국	소	센터	소				
총		계	1375	769	25	94	42	137	13	118	177
정 무 직 계			1	1							
일 반 직 계			1143	647	19	89	1	96	12	104	175
3급	소 계		1	1							
	행 정		1	1							
4급	소 계		8	4	1	1		2			
	행 정		3	1	1			1			
	기 술		1			1					
	행 정 · 기 술		4	3				1			
5급	소 계		73	34	3	3		6	1	10	16
	행 정		16	15				1			
	해 양 수 산		1	1							
	의 무		1			1					
	시 설		2	2							
	행 정 · 사 회		3	3							
	행 정 · 사 서		1					1			
	행 정 · 공 업		1					1			
	행 정 · 농 업		1	1							
	행 정 · 환 경		1	1							
	행 정 · 시 설		8	7				1			
	행 정 · 통 신		1	1							
	행 정 · 별 정		3		3						
	보 건 · 의 무		1			1					
	행 정 · 사 회 · 보 건		2								2
	행 정 · 사 회 · 의 기		1								1
	행 정 · 사 회 · 시 설		4								4
행 정 · 사 서 · 시 설		2								2	

3(월)

직급별	기관별	합	본	의	보	농	사			
	직렬별	계	청	회	건	업	업	읍	면	동
				사	소	기	소			
				무	소	술				
				국		센				
						터				
5급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해수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간호	2							2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녹지·환경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해수·시설	1								1
	행정·보건·의기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의기·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통신	1								1
	공업·보건·환경	1	1							
	행정·사회·공업·농업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녹지·간호	1								1
	행정·농업·해수·시설	2						1	1	
행정·농업·보건·환경	1								1	
6급	소 계	262	160	6	16		24	3	30	23
	행 정	74	53	3			5			13
	세 무	2	2							
	진 산	1	1							
	사 회 복 지	1	1							
사 서	1					1				

3(월)

직급별	기관별		합	본	의	보	농	사				
	직렬별	계	청	회	건	업	업	읍	면	동		
		국	소	사	무	국	소	센터	소			
6급	공	업	2						2			
	농	업	2	2								
	녹	지	2	2								
	해	양 수 산	2	2								
	보	건	1	1								
	보	건 진 료	6				6					
	시	설	18	16					2			
	행	정 · 세 무	10	9					1			
	행	정 · 전 산	1	1								
	행	정 · 사 회	32	15						1	9	7
	행	정 · 사 서	3						3			
	행	정 · 공 업	5	3					1			1
	행	정 · 농 업	18	3						1	12	2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해 수	2	2								
	행	정 · 보 건	3				1				2	
	행	정 · 환 경	2	2								
	행	정 · 시 설	21	19					2			
	행	정 · 별 정	4	2	2							
	전	산 · 시 설	1	1								
	전	산 · 통 신	2	2								
	공	업 · 환 경	4	2					2			
	공	업 · 시 설	3	2					1			
	농	업 · 수 의	2	2								
농	업 · 시 설	1	1									
녹	지 · 시 설	2	2									
해	수 · 환 경	1	1									
보	건 · 식 위	1	1									

3(월)

직급별	기관별	합	본	의	보	농	사			
	직렬별	계	청	회	건	업	업	읍	면	동
				사	소	기	소			
				무		술				
				국		센				
						터				
6급	보 건 · 간 호	1			1					
	보 건 · 환 경	1	1							
	행 정 · 세 무 · 사 회	1	1							
	행 정 · 전 산 · 통 신	1	1							
	행 정 · 공 업 · 시 설	1					1			
	행 정 · 농 업 · 해 수	1	1							
	행 정 · 농 업 · 시 설	3						1	2	
	행 정 · 녹 지 · 시 설	1	1							
	행 정 · 해 수 · 시 설	1							1	
	행 정 · 보 건 · 간 호	1			1					
	행 정 · 보 건 · 환 경	1	1							
	행 정 · 환 경 · 시 설	1	1							
	공 업 · 보 건 · 환 경	2	1					1		
	공 업 · 환 경 · 시 설	2						2		
	보 건 · 의 기 · 간 호	7			7					
	행 정 · 세 무 · 농 업 · 녹 지	2							2	
	행 정 · 사 회 · 해 수 · 시 설	1							1	
	행 정 · 사 회 · 보 건 · 간 호	1	1							
	행 정 · 농 업 · 해 수 · 시 설	1							1	
	행 정 · 농 업 · 시 설 · 별 정	1		1						
7급	소 계	350	212	5	25	1	29	4	29	45
	행 정	135	89	4	1		11	1	5	24
	세 무	2	2							
	전 산	1	1							
	사 회 복 지	18						1	8	9
	사 서	5					5			
	공 업	9	4				5			

3(월)

직급별	기관별	합	본	의	보	농	사			
	직렬별	계	청	회	건	업	업	읍	면	동
				사	소	기	소			
				무		술				
				국		센				
						터				
	농업	7	7							
	녹지	4	4							
	수의	1	1							
	해양수산	6	6							
	보건	8	2		5		1			
	식품위생	1	1							
	간호	6	1		5					
	보건진료	5			5					
	환경	6	5				1			
	시설	41	36	1			4			
	방송통신	2	2							
	행정·세무	23	18							5
	행정·전산	3	3							
	행정·사회	22	15							7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3	1			1		1	10	
	행정·해수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2	5					1	6	
	행정·별정	2	2							
	공업·환경	3	2				1			
	보건·식위	1	1							
	공업·보건·환경	1					1			
	보건·의기·간호	9			9					
8급	소계	277	152	4	37		23	2	17	42
	행정	93	62	3			6	1		21
	세무	4	3				1			

3(월)

직급별	기관별	합	본	의	보	농	사			
	직렬별	계	청	회	건	업	업	읍	면	동
				사	소	기	소			
				무		술				
				국		센				
						터				
	전 산	3	2	1						
	사 회 복 지	9	1						2	6
	사 서	3					3			
	공 업	10	6				4			
	농 업	1	1							
	녹 지	3	3							
	해 양 수 산	6	6							
	보 건	17	5		12					
	의 료 기 술	9			9					
	간 호	2			2					
	보 건 진 료	7			7					
	환 경	3	3							
	시 설	34	27				6		1	
	방 송 통 신	2	2							
	행 정 · 세 무	9	9							
	행 정 · 전 산	1	1							
	행 정 · 사 회	27	12						2	13
	행 정 · 사 서	1	1							
	행 정 · 공 업	1					1			
	행 정 · 농 업	10						1	7	2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간 호	3			3					
	행 정 · 시 설	11	6						5	
	세 무 · 전 산	1	1							
	전 산 · 통 신	1	1							
	공 업 · 환 경	2					2			
	의 기 · 간 호	3			3					

3(월)

직급별	기관별		합	본	의	보	농	사			
	직렬별		계	청	회	건	업	업	읍	면	동
					사	소	기	소			
					무	터	술				
					국		센				
							터				
9급	소	계	172	84		7		12	2	18	49
	행	정	52	16				2	1	9	24
	세	무	10	10							
	전	산	2	2							
	사	회	57	23					1	8	25
	사	서	6					6			
	공	업	5	3				2			
	농	업	3	2						1	
	녹	지	2	2							
	보	건	8	2		6					
	의	료	1			1					
	환	경	3	3							
	시	설	22	20					2		
방	송	1	1								
	통										
	신										
지 도 직 계			33				33				
지	소	계	3				3				
	농	촌	3				3				
지	소	계	30				30				
	농	촌	30				30				
연 구 직 계			4				3	1			
연	소	계	4				3	1			
	환	경	1				1				
	농	업	2				2				
	학	예	1					1			

3(월)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합	본	의	보	농	사			
		계	청	회	건	업	업	읍	면	동
기능직계		179	109	6	5	3	39	1	14	2
6급	소 계	7	6						1	
	전 기	1	1							
	기 계	1	1							
	운 전	1	1							
	선 박 향 해	1	1							
	사 무	1	1							
	조 무	1	1							
	선박향해·선박기관	1							1	
7급	소 계	28	17		1		8		2	
	통 신	1	1							
	전 기	1					1			
	기 계	6	2				4			
	운 전	7	6		1					
	선 박 향 해	3	2						1	
	선 박 기 관	2	1						1	
	사 무	4	3				1			
조 무	4	2				2				
8급	소 계	38	25		2	1	9		1	
	건 축	1	1							
	통 신	2	2							
	전 화 상 담	1	1							
	전 기	3	1				2			
	기 계	8	5				3			
	열 관 리	3			1		2			
	운 전	12	9		1	1	1			
선 박 향 해	3	2						1		

3(월)

직급별	기관별	합	본	의	보	농	사			
	직렬별	계	청	회	건	업	업	읍	면	동
				사	소	기	소			
				무		술				
				국		센				
						터				
	선 박 기 관	2	2							
	위 생	1	1							
	조 무	2	1				1			
9급	소 계	106	61	6	2	2	22	1	10	2
	통 신	2	1	1						
	전 화 상 담	2	2							
	진 기	7	4				3			
	기 계	11	6	1			4			
	열 관 리	6	4				2			
	운 전	9	4	2	1		2			
	화 공	1					1			
	선 박 향 해	1							1	
	농 립	1				1				
	사 육	2					2			
	위 생	4	3				1			
	사 무	41	35	2	1		3			
	조 무	7	2			1	4			
사 무 · 조 무	12						1	9	2	
별 정 직 계		15	12			2	1			
6급	소 계	3	3							
	홍 보 연 구 관	1	1							
	비 서	1	1							
	문 화 재 연 구 원	1	1							
7급	소 계	12	9			2	1			
	보 건 위 생 감 시 원	2	2							
	청 소 년 수 련 지 도 사	3	3							
	박 물 관 운 영 요 원	1	1							

3(월)

직급별	기관별	합	본	의	보	농	사			
	직렬별	계	청	회	건	업	업	읍	면	동
				사	소	기	소			
				무		술				
				국		센				
						터				
7급	농기계교육교관	2				2				
	공기업회계원	1					1			
	수영강사	2	2							
	체육진흥연구원	1	1							

3(월)

현										개정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급별	직렬별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직급별	직렬별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소계	정
총		계		1358	742		41	155			170	총		계		1375	769		42	137		177	
일		반직계		1124	631	18		101			168	일		반직계		1143	647	19		96		175	
5급	소	계		33				7				5급	소	계		34				6			
	행	정		14				2					행	정		15				1			
6급	소	계	259	156				25				6급	소	계	262	160				24			
	행	정	75				6				행		정	74				5					
	사	서									사		서	1					1				
	행정·세무		9								행정·세무			10						1			
	행정·사회		31								행정·사회			32							1		
	행정·공업			2				2			행정·공업				3					1			
	행정·환경		3						1		행정·환경			2									
	전산·통신		1	1							전산·통신			2	2								
	공업·시설			1				2			공업·시설				2					1			
	행정·세무·사										행정·세무·사			1	1								
7급	소	계	349	208				32				7급	소	계	350	212				29			
	행	정	136	88							행		정	135	89							24	
	공	업		2				7			공		업		4				5				
	간	호						1			간		호		1								
8급	행정·사회		20								행정·사회		22									7	
	소	계	274	149	3			24			소	계	277	152	4				23				
	행	정	104	59	2			7		2	33	행	정	93	62	3			6			21	
	세	무		4								세	무		3				1				
	시	설		26				7				시	설		27				6				
9급	행정·사회		13								1	행정·사회		27								2	13
	소	계	160	80				11			42	소	계	172	84				12				49
	행	정	48	15							21	행	정	52	16								24
	사	회	복	지	53						21	사	회	복	지	57							25
9급	사	서	5					5				사	서	6					6				
	농	업	2	1								농	업	3	2								
	보	건		1				1				보	건		2								
	환	경	2	2								환	경	3	3								
	시	설	21					1				시	설	22						2			
	지	도	직	계	1			1				지	도	직	계	33				33			
진	소	계	1				1					진	소	계	30				30				
	농	촌	지	도	1			1					농	촌	지	도	30				30		
기		능		직	계	-3	9	-1			-11	기		능		직	계	179	109	6		39	
6급	선	박	향	해	-1						-1	6급	선	박	향	해	1						
	선	박	향	해	·	선	박	향	해	·	선		박	향	해	·	선	박	향	해	·	선	박
7급	소	계	-1	-1								7급	소	계	28	17							
	사	무	-1	-1									사	무	4	3							
8급	소	계	-2	1	-1			-2				8급	소	계	38	25				9			
	기	계		1				-1					기	계		5				3			
9급	사	무	-2		-1			-1				9급	사	무									
	소	계		9				-9					소	계		61				22			
	전	기		1				-1					전	기		4				3			
	기	계		1				-1					기	계		6				4			
	열	관	리		2				-2				열	관	리		4				2		
위	생			2				-2			위	생		3				1					
사	무			3				-3			사	무		35				3					
별		정		직	계			2			-2	별		정		직	계			12			1
7급	소	계		2				-2				7급	소	계		9				1			
	수	영	강	사				-2					수	영	강	사				2			

군산시 고시 2013 - 67호

군산 명산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581-5번지 일원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 『온천법』 제 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 5. .



군 산 시 장

1. 고시내용

1	명 칭	군산 명산온천 온천공보호구역
2	위 치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581-5번지
3	면 적	33,648㎡
4	범 위	지형도면 참고
5	해제사유	온천원 고갈로 온천수 기준 부적합 및 사업자 부도로 개발가치 떨어져 환경, 미관저해

2. 지형도면 :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3.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0-4445)에 비치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3-68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교육청)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3년 5월 24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조촌동 75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교육청)
 - 나. 명 칭 : 군산특수교육 및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구 분	시설명	결정(m ²)	실시계획(m ²)	건축계획		비 고
				기존(m ²)	금회(m ²)	
공공청사	시교육청	10,124	10,124	건축면적: 1,054.4 연면적: 2,553.67	건축면적: 1,509.89 연면적: 3,876.47	증 축 연면적1,322.8 m ² 1동 / 3층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757번지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전라북도교육청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3. 5 ~ 201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해당없음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3-69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군산종합운동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 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3년 5월 24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사정동 1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운동장:군산종합운동장)
 - 나. 명 칭 : 월명게이트볼장 지붕(막구조물)제작.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구 분	시설명	결정(m ²)	실시계획(m ²)	건축계획		비 고
				기존(m ²)	금회(m ²)	
운동장	군산종합운동장	188,700	147,720	건축면적: 19,071 연면적: 32,108	건축면적: 19,481 연면적: 32,518	증 축 연면적 410m ² 1동 / 1층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번지)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3. 5 ~ 201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해당없음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계획실용 생략

3(월)

군산시 고시 제2013-70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군산C.C)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군산C.C)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3년 5월 24일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옥서면 옥봉리·선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 2) 명 칭 : 군산 C.C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1) 면 적 : 4,240,089㎡ (변경없음)
 - 2) 규 모 : 81홀(회원제 18홀, 대중제 63홀)
 - 3) 세부내용

구분	구분	총면적(m ²)	1~6단계(m ²) (완료)	7단계(m ²) (완료)	8단계(m ²)	비고
총계		4,240,089	3,571,637	24,540	643,912	
체육 시설	골프연습장	29,909	-	-	29,909	
	페어웨이 외	1,033,592	1,033,592	-	-	
건축 시설	지원용지	18,606	-	-	18,606	
	수위실	179	-	179	-	
	가스저장창고	150	-	150	-	
	클럽하우스 외	67,034	67,034	-	-	
공공 시설	골프장 주차장	60,913	46,597	-	14,316	
	오수처리장	1,742	700	1,042	-	
	관리도로	37,220	4,527	-	32,693	
	내부도로 외	134,504	134,504	-	-	
녹지 시설	복원녹지	1,044,163	847,118	2,946	203,457	
	원형보존녹지(구거)	1,582,140	1,207,628	20,223	344,931	
	원형보존녹지(임야)	229,937	229,937	-	-	
	외					

4.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741번지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레저산업(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단계별 준공계획 변경

구분	1단계~5단계	6 단계	7 단계	8 단계	비고
당초	대중제 27홀 ('04.06.~'09.12.)	숙박시설 ('09.10.~'11.1 2.)	부대시설 ('09.10.~'13.3.3 1)	-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부대시설 ('09.10.~'13.4.3 0.)	부대시설 ('09.10.~'13.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등 : 게재 실음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3-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3년 5월 31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산북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 칭 : 지방공단~4토지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 적(m ²)	
중로 1-74	24	2,130	24	2,130	59,290	
		2,130		2,130	59,290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5. 28. ~ 2014. 7.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변경)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실음 생략

3(월) 관계도서 : 계제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등기부등본)		소유권외의 권리자	
	등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1 (당초)	산북	산215	도	169	169	(미 등 록)			
1 (변경)	소릉	산215	도	168	168	국	국		
2	산북	산180	임	164	164	(미 등 록)			
3	"	3475-1	도	3,082	1,649	(미 등 록)		농수산부	
4	"	1520-1	대	119	119	군산시	군산시장		
5	"	1520-2	대	397	397	군산시	군산시장		
6	"	1520-4	대	79	79	군산시	군산시장		
7	"	1520-3	대	205	205	군산시	군산시장		
8	"	3482	구	569	104	농수산부	국		
9	"	1526	답	1,223	382	군산시	군산시장		
10	"	1527-1	대	539	539	군산시	군산시장		
11	"	1527-3	대	688	192	군산시	군산시장		
12	"	1527-2	구	549	152	군산시	군산시장		
13	"	1528-3	잡	1,580	438	군산시	군산시장		
14	"	1528-1	답	1,455	457	군산시	군산시장		
15	"	1530	답	2,572	938	군산시	군산시장		
16	"	1531-1	대	221	25	군산시	군산시장		
17	"	1531	대	496	496	군산시	군산시장		
18	"	1532-5	대	674	674	군산시	군산시장		
19	"	1532-1	대	433	433	군산시	군산시장		
20	"	1532-2	대	93	93	군산시	군산시장		
21	"	1533-1	대	1,179	1,179	군산시	군산시장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등기부등본)		소유권외의 권리자	
	등	지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22	산북	1534-3	대	258	258	군산시	군산시장		
23	"	1534-1	대	384	384	군산시	군산시장		
24	"	1534-2	대	99	99	군산시	군산시장		
25	"	1534-4	대	364	67	군산시	군산시장		
26	"	1536	전	433	296	재무부	국		
27	"	1537	전	1,131	540	군산시	군산시장		
28	"	1538	전	1,967	840	군산시	군산시장		
29	"	1549	답	4,152	803	군산시	군산시장		
30	"	1550	공	3,120	818	군산시	군산시장		
31	"	3470	구	112,283	3,453	농수산부	국		
32	"	1551-2	답	3,825	822	군산시	군산시장		
33	"	1551-3	도	205	47	군산시	군산시장		
34	"	1552-1	도	251	50	군산시	군산시장		
35	"	1552-2	답	4,774	820	군산시	군산시장		
36	"	1553	답	5,025	883	군산시	군산시장		
37	"	1554	답	5,025	872	군산시	군산시장		
38	"	1555	답	5,025	855	군산시	군산시장		
39	"	1556	답	5,025	874	군산시	군산시장		
40	"	1557	답	5,025	854	군산시	군산시장		
41	"	1558	답	5,025	867	군산시	군산시장		
42	"	1559	답	5,025	863	군산시	군산시장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등기부등본)		소유권외의 권리자	
	동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43	산북	1560-1	답	5,024	877	군산시	군산시장		
44	"	1561	답	5,025	860	군산시	군산시장		
45	"	1562	답	5,025	841	군산시	군산시장		
46	"	1563	답	5,025	866	군산시	군산시장		
47	"	1564	답	5,025	850	군산시	군산시장		
48	"	1565	답	5,025	840	군산시	군산시장		
49	"	1566	답	5,025	853	군산시	군산시장		
50	"	1567	답	5,025	859	군산시	군산시장		
51	"	1568	답	5,025	844	군산시	군산시장		
52	"	1569	답	1,283	221	군산시	군산시장		
53	"	3468-3	도	41,351	213	농수산부	국		
54	"	3469-1	구	548,914	411	농림수산부	국		
55	"	1570-1	답	5,009	751	군산시	군산시장		
56	"	1571	답	5,047	829	군산시	군산시장		
57	"	1572-2	답	1,507	801	군산시	군산시장		
58	"	1575	답	5,015	821	군산시	군산시장		
59	"	1576	답	5,025	810	군산시	군산시장		
60	"	1577-1	답	2,278	707	군산시	군산시장		
61	"	3495	도	2,427	2,427	농수산부	국		
62	"	1577-2	구	886	159	군산시	군산시장		
63	"	1578-2	답	4,645	766	군산시	군산시장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등기부등본)		소유권외의 권리자	
	동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64	산북	1579-1	답	2,598	391	군산시	군산시장		
65	"	1579-2	답	2,426	424	군산시	군산시장		
66	"	1580	답	5,025	818	군산시	군산시장		
67	"	1581-1	답	2,526	397	군산시	군산시장		
68	"	1581-2	답	2,449	401	군산시	군산시장		
69	"	1582	답	5,025	808	군산시	군산시장		
70	"	1583-1	답	4,850	782	군산시	군산시장		
71	"	1583-2	구	902	55	군산시	군산시장		
72	"	1021	답	2,945	468	군산시	군산시장		
73	"	1021-11	답	2,407	382	군산시	군산시장		
74	"	1021-12	답	2,407	389	군산시	군산시장		
75	"	1010-2	구	7,018	2,042	군산시	군산시장		
76	"	1021-13	답	2,407	399	군산시	군산시장		
77	"	1019-3	답	2,407	389	군산시	군산시장		
78	"	1018-2	답	2,407	365	군산시	군산시장		
79	"	984-1	답	2,407	360	군산시	군산시장		
80	"	984-22	답	2,410	382	군산시	군산시장		
81	"	984-23	답	2,410	391	군산시	군산시장		
82	"	991-2	구	6,630	3,571	군산시	군산시장		
83	"	984-24	답	1,983	343	군산시	군산시장		
84	"	1015	답	423	51	군산시	군산시장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등기부등본)		소유권외의 권리자	
	동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85	산북	1015-3	답	1,858	121	군산시	군산시장		
86	"	1013-3	답	281	281	군산시	군산시장		
87	"	985-13	답	2,410	397	군산시	군산시장		
88	"	985-14	답	2,410	420	군산시	군산시장		
89	"	1011-1	구	255	255	군산시	군산시장		
90	"	985-21	답	2,410	416	군산시	군산시장		
91	"	986-11	답	2,410	422	군산시	군산시장		
92	"	990-5	답	2,410	426	군산시	군산시장		
93	"	991-8	답	2,876	631	군산시	군산시장		
94	"	320-3	전	2,577	851	군산시	군산시장		
95	"	997-6	도	106	45	농수산부	국		
96	"	997-5	구	33	33	농수산부	국		
97	"	319-2	구	1,407	288	이리시 평화동 56	전북농지 개량조합		
98	"	319-22	구	3,251	241	군산시	국		

3(월)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연번	물건의위치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소 유 자		비고
	소재지	지 번			수량	(㎡)	주 소	성 명	
1	산북동	180	상 가	스레트	1동	128.0	군산시	군산시장	
			주 택	양철	1동	43.0			
			간 판		1EA				
			셋 터		1EA				
2 (당초)	산북동	산215	상 가	스레트	1동	128.0	산북동 1094-1	홍석환	소망페인트
			창 고	스레트	1동	2.0			
			간 판		3EA				
			셋 터		1EA				
2 (변경)	소룡동	산215	점포및주택	조적 스투트	1동	123.88	산북동 1094-1	홍석환	소망페인트
			보일러실	조적 스투트	1동	1.76			
			간 판	간판,셋터포함	6EA				
			창 고	컨테이너	1EA				
			수 목	무화과 등	4주				
3	산북동	3475-1	주 택	스레트	1동	92.4	군산시	군산시장	
4	산북동	1520-1	주 택	슬라브	1동	52.5	군산시	군산시장	
			주 택	양철	1동	60.5			
5	산북동	1520-2	주 택	슬라브	1동	64.0	군산시	군산시장	
			주 택	양철	1동	83.0			
			창 고	스레트	1동	53.5			
			담	블록	1동	27.4			
			수 목		13주				
			묘 목		4주				
6	산북동	1520-3	주 택	스레트	1동	147.5	군산시	군산시장	
			창 고	스레트	1동	5.5			
7	산북동	1526	주 택	스레트	1동	258.0	군산시	군산시장	
			주 택	스레트	1동	54.0			
			건조기	스레트	1동	3.8			
			수 목		3주				
			묘 목		5주				
8	산북동	1527-1	주 택	스레트	1동	87.5	군산시	군산시장	
			주 택	기와	1동	33.5			
			주 택	양철	1동	3.5			
			담	블록	1EA	38.3			
			수 목		2주				
			묘 목		1주				

3(월)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연번	물건의위치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소 유 자		비고
	소재지	지 번			수량	(㎡)	주 소	성 명	
9	산북동	1527-3	주 택	기와	1동	61.0	군산시	군산시장	
			담	블록	1EA	10.5			
10	산북동	1528-3	창 고	조립식	1동	24.0	군산시	군산시장	
			마 당	무근		390.0			
			담	블록	1EA	52.6			
			수 목		1주				
			묘 목		3주				
11	산북동	1531	주 택	1층 스투트	1동	211.6	군산시	군산시장	
			주 택	2층 스투트	1동	18.5			
			창 고	스레트	1동	30.0			
			수 목		12주				
			묘 목		16주				
12	산북동	1532-5	주 택	슬라브	1동	88.0	군산시	군산시장	
			주 택	양철	1동	81.0			
			창 고	스레트	1동	20.0			
			컨테이너		2동	40.0			
			견 사	스레트	1동	54.0			
			담	블록	1EA	66.3			
			수 목		9주				
묘 목		4주							
13	산북동	1533-1	주 택	1층 슬라브	1동	172.0	군산시	군산시장	
			주 택	2층 슬라브	1동	7.5			
			창 고	스레트	1동	70.0			
			담	블록	1EA	90.5			
			수 목		9주				
			묘 목		3주				
14	산북동	1534-3	주 택	슬라브	1동	115.0	군산시	군산시장	
			주 택	스레트	1동	142.0			
			주 택	스레트	1동	100.0			
			창 고	스레트	1동	74.0			
			담	블록	1EA	71.3m			
			섯 터		1EA				
			수 목		4주				
15	산북동	1550	창 고	슬라브	1동	15.0	군산시	군산시장	
			마 당	무근		520.0			
			담	무근	1EA	22.4			
			대 문	철	1EA	11.2			
			수 목		13주				
			묘 목		27주				

3(월)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연번	물 건 의 위 치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 격	수 량		소유자	
	소 재 지	지번			수량	(㎡)	성명	주소
16	군산시 산북동	3470	간판		1EA		군산시장	군산시
17	군산시 산북동	3470	간판		1EA		군산시장	군산시
18	군산시 산북동	3470	간판		1EA		군산시장	군산시
19	군산시 산북동	3470	간판	외항교회	1EA		군산시장	군산시
20	군산시 산북동	1569-4	간판	광고판	1EA		군산시장	군산시
21	군산시 산북동	1569-4	가로수	은행나무(H=5,R=20)	2주		군산시장	군산시
22	군산시 산북동	3468-3	가로수	벚꽃나무(H=3,R=10)	3주		군산시장	군산시
23	군산시 산북동	3468-3	간판	광고판	1EA		군산시장	군산시
24	군산시 산북동	3468-3	간판	광고판	1EA		군산시장	군산시
25	군산시 산북동	1010-2	창고(컨테이너)	컨테이너	1EA	10.0	군산시장	군산시
26	군산시 산북동	320-3	수 목	(H=3.5,R=10.0)	200주	783.0	군산시장	군산시
27	군산시 산북동	319-2	간판	벤엘기도원	1EA		군산시장	군산시

3(월)

군산시 고시 제2013 - 72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 및 관련지번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 및 변경된 관련지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6. 3.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20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변경 : 1건

지번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램					

○ 관련지번 변경 : 17건

도로명주소	변경된 지번주소	종전 지번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 사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3-960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군산C.C)사업 공사완료(7단계) 공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군산C.C)사업 7단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3년 5월 24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옥서면 옥봉리·선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 나. 명 칭 : 군산C.C 조성공사(7단계)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 4,240,089㎡
 - 나. 규 모 : 81호(회원제 18호, 대중제 63호)
 - 다. 7단계 사업내용

구 분	합 계	수 위 실	가스저장창고	오수처리장	녹지시설	관 리 동
부지면적	24,540㎡	179㎡	150㎡	1,042㎡	23,169㎡	기조성
건축면적	1,847.28㎡	16.13㎡	47.64㎡	1,042㎡	-	741.51㎡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의 주 소 :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741번지
 - 나. 사업시행자의 성 명 : 군산레저산업(주)
5. 사업착수 및 준공일 : 2009. 10 ~ 2013. 4. 31
6.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3(월)

군산시 공고 제2013-1074호

창성·송창·개복동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실시계획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5 월 31 일

군 산 시 장

- 1. 사 업 명 : 군산시 지적재조사사업(창성, 송창, 개복동)
- 2. 사업위치 : 군산시 창성, 송창, 개복동 일원
-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4. 사업시행자 : 군산시(토지정보과)
- 5.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6. 사업예산 : 1억2천만원
- 7.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 가. 관계서류 : 사업지구 지번별조서
- 나. 열람장소 : 군산시 토지정보과 지적계

8.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454-3962~3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방 문 : 군산시 토지정보과 민원실
- 나. 전 화 : 454-3962~3964
- 다. 팩 스 : 454-3947
- 라. 우 편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